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11. 14.

저작권

국제회계기준(IFRS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1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회계기준(IFRSs)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s)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IAS)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의 본문,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1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4th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목 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번호
목적	1
적용	한2.1
적용범위	2~5
용어의 정의	6
손상되었을 수 있는 자산의 식별	7~17
회수가능액의 측정	18~57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측정	24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28~29
사용가치	30~57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근거	33~38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구성	39~53A
외화 미래현금흐름	54
할인율	55~57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58~64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65~108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66~73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74~103
영업권	80~99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배분	80~87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88~90
손상검사의 시기	96~99
공동자산	100~103

목 차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104~108 손상차손환입 109~125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 117~121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 122~123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124~125 공시 126~137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 134~137 경과 규정과 시행일 139~140N 기준서 등의 대체 141

부록

A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한 사용가치 측정

C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89)

[결론도출근거]

IAS 36의 결론도출근거 (BC1-BCZ233)

IAS 36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은 문단 1에서 141까지와 부록 A, C 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의 권위는 같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하여 회수될 금액을 초과하면, 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표시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하 며, 이 기준서에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또 이 기 준서에서는 언제 손상차손을 환입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공시사 항도 규정한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2 이 기준서는 모든 자산의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자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재고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참조)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에 대해 적용, 생물자산/재고자산/수익/매각예정비유동자산(중요) 제외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 (3) 이연법인세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참조)
- (4)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 급여' 참조)
-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 (6)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 자부동산' 참조)
- (7)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며 기업회계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농림어업 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
- (8) 이연신계약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계약상 권리에서 생기는 무형자산
- (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 이 기준서는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 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또 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이 자산에 적용되는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서에서 이러한 자산의 측정 및 인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이 기준서는 다음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에 적용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한 종속기업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에서 정의한 관계기업

기타 9호의 금융자산에는 적용이 안되지만, 종속 관계 공동에는 손상 적용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 정의한 공동기업 그 밖의 금융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참조한다.

5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과 같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금액(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감가상각누계액과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자산에는 적용한다. 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유일한 차이는 자산의 처분에 직접기인하는 증보원가이다.

회수가능액 = Max(순 공정가치, 사용가치)인 데, 순공정가치는 공정 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 차감한 값.

한편 비교하는 장부가는 재평가금액인데 이는 공정가치 - 감누 - 손상. 여기서 처분부대원가가 미미하면 공정가치와 다를 바 없으니 당연히 공정가치 - 감누 - 손상인 재평가금액보다는 크다. 따라서 회수가능액 추정 없이 손상이 없음

- (1)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해도 될 정도인 경우에 재평가자산의 회수가능액은 당연히 재평가금액에 가깝거나 이보다 많다. 이 경우에 재평가 규정을 적용한 후라면 재평가자산이 손상되었을 것 같지 않으므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3)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에 재평가된 자산 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당연히 그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적다. 자산의 사용가치가 재평가금액보다 적다면 재평가된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재평가 규정을 적용한 다음에 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 기준 서를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또는 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또는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1)

감가상각대상금액(또는 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재무제표 상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공동자산: 검토 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그 밖의 현금창출단위의 미래현금흐름에 모두 이바지하는 자산. 다만 영업권은 제외한다.

내용연수: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사용가치: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손상차손: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 과하는 금액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또는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빤 후에 인식되는 자산 금액

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을 제외

처분부대원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에 직접 기인하는 증분원가, 다만 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은 제외한다.

¹⁾ 무형자산의 경우에 <mark>상각은 감가상각을 대신</mark>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감가상각과 상각은 같은 뜻의 용어이다.

현금창출단위: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자산집 단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 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 Max(순,사)

손상되었을 수 있는 자산의 식별

- 7 문단 8~17에서는 언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 기준서의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 문단 18~57에서는 회수가능액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도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개별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 (2) 문단 58~108에서는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은 문단 58~64에서 다루고, 영업권과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은 문단 65~108에서 다룬다.
 - (3) 문단 109~116에서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요구사항에서도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개별 자산에 대해서는 문단 117~121에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문단 122와 123에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문단 124와 125에서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 (4) 문단 126~133에서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과 손 상차손환입에 대한 공시사항을 규정한다. 문단 134~137에서는 손상검사를 목적으로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이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라 한다)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 8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문단 12~14에서는 손상차손이 생겼을 수 있는 몇 가지 정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상차손이 존재한다는 정후가 없으면 문단 10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 9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 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 10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손상 <mark>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mark> 회수가능액 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 자산은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를 매년 같은 시기에 수행한다면 연차 회계기간(이하 '회계연도'라 한다) 중 어느 때에라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무형자산은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러한 무형자산을 처음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전에 손상검사를 한다.
 -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문단 80~99에 따라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한다.
- 11 무형자산에서 그 장부금액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해당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전이 후보다 더욱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손상 검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12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워천

- (1)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 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 (2)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 유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3) 시장이자율(그 밖의 시장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 (4)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

내부정보워처

- (5) 자산이 진부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 (6)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2).
- (7)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 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²⁾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또는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 집단에 포함된다면), 그러한 자산은 이 기준서의 <mark>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에 따라</mark> 회계 처리한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은(을) 배당금

- (8)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투자자는 그 투자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 (개)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 (H)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해당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한다.
- 13 문단 12에는 자산손상 징후가 모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은 다른 자산손상 징후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해야 한다. 영업권의 경우에는 문단 80~99에 따라 손상검사를 한다.
- 14 내부보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산손상 징후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자산의 매입에 드는 현금이나 자산의 운영·관리에 쓰는 후속 적인 현금이 당초 예상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많다.
 - (2) 자산에서 유입되는 실제 순현금흐름이나 실제 영업손익이 당초 예상 수준에 비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 (3) 자산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이나 예상 영업 손익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 (4) 당기 실적치와 미래 예상치를 합산한 결과, 자산에 대한 순현 금유출이나 영업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15 문단 10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기준서에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 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영업권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10의 적용과는

별도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분할 때에 중요성 개념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전에 실시한 계산 결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유의적으로 더 많고, 해당 차액을 소멸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추정할 필요가 없는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분석 결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문단 12에 예시된 하나의(또는 그 이상의) 징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

- 16 문단 15의 예시로서, 시장이자율이 기간 중에 상승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정식으로 추정할 필요가 없다.
 - (1)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에 사용하는 할인율이 시장이 자율의 상승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단 기 시장이자율의 상승은 남은 내용연수가 긴 자산에 사용하는 할인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 (2)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에 사용하는 할인율이 시장이 자율의 상승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회수가능액에 대한 과거의 민감도 분석에서 다음 (개)나 (내)의 결과를 보여 주는 경우
 - (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할 것 같지 않다. 미래 현금흐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 시장이자 율의 상승에 따른 영향을 보상하기 위해 기업이 수익을 조정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H) 회수가능액의 감소가 중요한 손상차손을 가져올 것 같지 않다.
- 17 비록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이는 해당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 감가상각(상각)방

법, 잔존가치를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회수가능액의 측정

-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 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 문단 19~57에서는 회수가능액의 측정 요구사 항을 제시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 19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모두를 산정할 필요는 없다. 두 금액 중 하나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 20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동일한 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시장 상 황에서 측정하는 날에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는 정상 거래를 하는 경우의 가격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근거가 없어서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 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사용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쓸 수 있다.
- 21 자산의 사용가치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중요하게 초과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자산의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가 흔히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처분 전까지 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이 무시

해도 될 정도라서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사용가치는 대부분이 순처분대가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 22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산정한다.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문단 65~103 참조)별로 회수가능액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1)이나 (2)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
 - (2) 자산의 사용가치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거의 같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 를 뺀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 23 경우에 따라서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나 사용가 치를 산정할 때 이 기준서에서 예시한 상세한 계산의 상당히 가 까운 값은 추정치, 평균값, 개산에 따른 간편법으로 구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측정

- 24 문단 10에서는 손상 정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내용연수가 비한 정인 무형자산을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 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다음 기준을 모 두 충족하면 과거 회계기간에 산정된 그러한 자산의 회수가능가 액의 최근에 실시한 상세한 계산 결과를 당기의 손상검사에 사용 할 수 있다.
 -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창출되는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형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일부로서 해당 무형자산의 손상을 검사하는 경우에 해당 현금

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가 최근 회수가능액을 계산 한 이후로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다.

- (2) 최근에 계산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였다.
- (3) 최근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과 변화된 상황을 분석해 볼 때, 현재의 회수가능액 산정치가 장부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희박하다(remote).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 2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8 처분부대원가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할 때 차감하여 반영한다. 다만 이미 부채로 인식된 처분부대원가는 제외한다. 처분부대원가의 예로는 법률원가, 인지세와 이와 비슷한 거래세, 자산 제거원가,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데에 드는 직접 증분원가 등이 있다. 그러나 자산 처분에 따르는사업의 축소나 조직변경과 관련된 해고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정의함)와 그 밖의 원가는 자산 처분에 대한 직접 증분원가가 아니다.
- 29 때로는 자산 처분거래에서 구매자에게 부채를 넘겨받게 하고 그 자산과 부채 모두에 대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을 하나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단 78에서는 이러한 경우 의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한다.

사용가치

- 30 자산의 사용가치 계산에는 다음 요소를 반영한다.
 - (1)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 (2)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
 - (3) 현행 시장 무위험 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 (4) 자산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보상하는 가격
 - (5)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 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그 밖의 요 소들
- 31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는 다음의 단계를 모두 거친다.
 - (1) 자산의 계속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입과 미래현금유출을 추정함
 - (2) (1)의 미래현금흐름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함
- 32 문단 30(2)·(4)·(5)는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을 조정하여 반영할수 있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을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 중 어느 것을 조정하여 반영하더라도 그 결과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 즉 발생 가능한모든 결과의 가중평균값을 반영한다. 부록 A에서는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현재가치기법의 사용에 대해 추가 지침을 제시한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근거

- 33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1) 현금흐름은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다양한 경제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 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한다. 이때에는 내부증거보다 외 부증거에 더 비중을 둔다.

- (2)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숭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하여 추정한 미래현금유입이나 미 래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더 긴 기간이 정당화되는 사유가 없으면 최장 5년으로 한다.
- (3) 최근 재무예산/예측 대상 기간 경과 후의 성장률은 고정되거나 계속 하락한다고 가정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승하는 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성장률 은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을 하는 국가 (들),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더 높은 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다.
- 34 경영진은 과거에 추정한 현금흐름과 실제 생긴 현금흐름이 차이 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여 현행 현금흐름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한다. 실제 현금흐름이 창출되었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속 사건이나 상황의 영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면, 경영진은 현행 현금흐름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과거의실제 결과와 일관성이 있도록 한다.
- 35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미래현금흐름의 상세하고 명백하며 신뢰성 있는 재무예산/예측은 얻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경영진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최장 5년에 대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다. 그러나 경영진이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신뢰할수 있다고 확신하고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5년보다 긴 기간의미래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수 있는 능력을 보일수 있다면5년보다 긴 기간에 대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할수 있다.

36 자산의 내용연수 말까지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재무예산/예측 의 범위를 벗어나는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후속 연도의 성장률을 적용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성장률 상승이 제품 또는 산업의 수명주기 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부합하지 않 는다면 후속 연도에 적용하는 성장률은 일정하거나 하락한다. 경 우에 따라서는 성장률이 영(0)이 되거나 음(-)의 값이 적절할 수도 있다.

37 상황이 유리한 때에는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기업의 성장이 문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산업, 기업이 영업을 하는 국가(들) 나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에 대하여 기업이 오랜 기간(예: 20년) 과 거 평균성장률을 초과하여 성장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38 재무예산/예측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할 때, 그 정보가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반영하고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 하는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구성

- 39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 (1) 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생기는 현금유입에 대한 추정
 - (2) 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생기는 현금유입을 창출하기 위하여 반 드시 생기고(자산의 사용 준비를 위한 현금유출 포함) 자산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해당 자산에 배분할 수 있는 현금유출에 대한 추정
 - (3) 내용연수 말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받을(또는 지급할) 순현 금흐름

- 40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의 추정치는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원인 인 가격 상승에 대한 일관된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할인율에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원인인 가격 상승의 영향을 포함할경우에 미래현금흐름은 명목금액으로 추정한다. 할인율에 이러한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은 실질금액으로 추정한다. 다만 미래현금흐름을 실질금액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도 인플레이션과 관계없는 특유의 가격 등락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고려한다.
- 41 현금유출 추정에는 자산 사용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 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미래의 간접원가와 일상적 관 리 유지비용을 포함한다.
- 42 자산을 사용할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 생기는 모든 현금유출이 자산의 장부금액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 추가 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출을 미래현금유출 추정치에 포 함한다. 예를 들면 건설 중인 건물이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개발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한다.
- 43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다음 사 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검토 대상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 입을 창출하는 자산에서의 현금유입(예: 수취채권과 같은 금융 자산)
 - (2) 이미 부채로 인식된 의무와 관련된 현금유출(예: 매입채무, 퇴직급여채무, 충당부채)
- 44 미래현금흐름은 자산의 현재 상태를 기초로 추정한다. 미래현금흐

름 추정치는 다음의 사유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 (2)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
- 45 자산의 현재 상태를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때문에 사용가치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 (1)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때문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현금유출이나 관련된 원가절감(예: 임금 감소) 또는 효익
 - (2) 자산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향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래현 금유출이나 그러한 유출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되는 미래현금유입
- 46 구조조정이란 경영진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사업의 범위나 사업수행방식을 중요하게 바꾸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한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지침을 포함한다.
- 47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하면 일부 자산이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자산의 사용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원가절감이나 그 밖의 효익을 반영하여 미래현금유입과 미래 현금유출을 추정한다(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함).
 - (2)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출의 추정액은 기업회계기 준서 제1037호에 따라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한다.

적용사례의 사례 5에서는 미래의 구조조정이 사용가치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한다.

- 7업이 자산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향상하는 현금유출을 하기 전까지는 그 현금유출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미래현금유입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적용사례의 사례 6 참조).
- 49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는 자산의 현재 상태에서 예상되는 경제 적 효익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현금유출을 포함한 다. 현금창출단위가 추정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자산으로 구성되 어 있고, 해당 자산 모두가 현금창출단위의 계속적인 영업에 반드 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 을 추정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자산을 대체하는 것은 현금창출단위의 일상적인 관리 유지의 일부로 본다. 이와 비슷하 게 개별 자산이 내용연수가 다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도 자산이 창출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 연수가 짧은 항목을 대체하는 것을 일상적인 관리 유지의 일부로 본다.
- 50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
 - (2) 법인세환급액이나 법인세납부액
- 51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는 할인율 산정 방법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의 영향이 이중으로 반영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함으로써 고려되기 때문에 이 미래현금흐름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와 비슷하게 할인율이세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도 세전 기준으로 추정한다.

- 52 내용연수 말에 자산을 처분하여 받을(또는 지급할) 순현금흐름의 추정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을 매각하여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다.
- 53 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자산을 처분하여 받을(또는 지급할) 순현금흐름 추정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 액과 비슷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1) 내용연수가 종료되었고 해당 자산이 사용될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운용되었던 비슷한 자산의 추정일 현재 형성된 가격을 사용한다.
 - (2) 위 (1)의 가격에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원인인 미래 가격 상 승과 특유의 미래 가격 등락을 모두 조정한다. 그러나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생기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와 할인율의 추정치에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외하였다면 처분에서 생기는 순현금흐름 추정치에서도 그 영향을 제외한다.
- 33A 공정가치는 사용가치와 다르다.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을 반영한다. 반대로 사용가치는 일반적인 기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해당 기업에만 특정되는 요소의 영향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 다음 요소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 (1) 자산을 그룹화하여 생기는 추가 가치(예: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투자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이루어 생기는 추가 가치)
 - (2) 측정되는 자산과 다른 자산 사이에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 (3) 자산의 현재 소유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적 권리나 법적 제약
 - (4) 자산의 현재 소유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세금 혜택이나 세 금 부담

외화 미래현금흐름

54 미래현금흐름은 창출될 통화로 추정하고 그 통화에 적절한 할인 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사용가치 계산일의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환산한다.

할인율

- 55 할인율은 다음 항목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세전 할인율로 한다.
 - (1) 화폐의 시간가치
 - (2)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조정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한 위험
-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은, 그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위험이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과 같다. 이 할인율은 비슷한 자산의 현행 시장거래에서 형성되는 내재이자율이나 용역잠재력 또는 위험의 측면에서 검토 대상 자산과 비슷한 하나의 자산(또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조정으로 반영한 위험은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가정의 영향은 이중 계산될 것이다.
- 57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시장에서 직접 구할 수 없다면 대용치를 사용하여 할인율을 추정한다. 부록 A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제시한다.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 58 다음의 문단 59~64에서는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문단 65~108에서는 현 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 을 다룬다.
-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 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 60 손상차손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다른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 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그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감소 액으로 처리한다.
- 61 재평가되지 않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 나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에서 생긴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하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감액한다.
- 62 손상차손으로 추정된 금액이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많을 때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부채를 인식한다.
- 63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위하여, 자산의 감가상각액이나 상각액을 미래 기간에 조정한다.
- 64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수 정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을 비교하여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산정한다(적용사례의 사례 3 참조).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65 다음의 문단 66~108과 부록 C에서는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를 식별하고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산정하며 현금 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 66 자산손상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희수가능액을 추정한다. 개별 자산의 희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희수가능액을 산정한다.
- 67 다음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다.
 - (1) 자산의 사용가치를 그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에 가깝게 추정할 수 없다(예: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2) 자산이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가치, 즉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산정할 수 있다.

예

광업기업은 채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설철로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설철로는 폐물 가치로만 매각할 수 있고, 사설철로는 광산의 다른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

유입을 창출하지는 아니한다.

이 사설철로의 회수가능액은 추정할 수 없다. 사설철로의 사용 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그 사용가치가 폐물 가치와 다를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사설철로를 포함하는 현금 창출단위, 즉 광산 전체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68 문단 6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자산의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집단(해당 자산 포함)이다. 자산의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저 수준의 자산집단을 식별하다.

예

버스운수기업은 시청과의 계약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계약에서는 기업이 다섯 개 노선에 대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각 노선에 투입된 자산과 각 노선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은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하나의 노선에서는 유의적인 손실을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다섯 개 노선 중 어느 하나를 폐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이며 식별할 수 있는 현금유입의 최저 수준은 다섯 개 노선이 함께 창출하는 현금유입이다. 따라서 각노선의 현금창출단위는 버스운수기업 전체가 된다.

69 현금유입이란 기업의 외부 당사자에게서 받는 현금 및 현금성자 산의 유입을 말한다.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기업의 영업을 관찰하는(monitor) 방법(예: 제품라인, 사업,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관찰하는 경우)이나 경영진이 기업의 자산 및 영업의 유지 또는 처분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 적용사례의사례 1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에 관한 예를 제시한다.

- 70 자산 또는 자산집단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거래하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물의 일부나 전부를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더라도 그 자산이나 자산집단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한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가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내부 이전 가격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을 추정할 때 독립된 당사자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될 미래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다.
 - (1) 그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
 - (2) 내부 이전가격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미래현금유출
- 71 자산이나 자산집단이 생산하는 산출물의 전부나 일부를 기업의다른 현금창출단위에서 사용하더라도(예: 제조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제품) 기업이 해당 산출물을 활성시장에서 판매할 수었다면 그 자산이나 자산집단은 별도의 현금창출단위를 형성한다.이는 그 자산이나 자산집단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산출물을 생산하는 현금창출단위나 내부 이전가격의 영향을 받는다른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관련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정보를 사용할 때, 해당 정보에 포함된 내부 이전가격이 독립된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될 생산물의 미래 가격에 대한 경영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정보를 조정한다.

- 72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창출단위는 같은 자산이나 같은 유형의 자산에는 회계기간마다 일관되게 식별한다.
- 73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가 전기와 달라졌다고 판단되거나 현 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의 유형이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 현금창출단위에서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이 생겼다 면 문단 130에서는 해당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하 도록 요구한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 74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그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이다. 현금창 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목적상 문단 19~57에서 언급하 는 '자산'은 '현금창출단위'를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 75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한다.
- 76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고,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 하는 데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 산의 장부금액을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 (2)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는 이미 인식된 부채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서 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한다.

이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과 이미 인식된

부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산정하기 때문이다(문단 28과 43 참조).

77 회수 가능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자산집단을 구성할 때에 현금창출단위에는 관련 현금유입을 직접 창출하거나 그 현금유입 창출에 사용하는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금창출단위가 실제로 손상되었더라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이바지하더라도 현금창출단위에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의 예로는 영업권이나 본사 자산과 같은 공동자산이 있다. 문단 80~103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을 검토할 때 이 자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이미 인식된 일부 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하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관련 부채를 넘겨받게 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에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 대원가를 뺀 금액(또는 최종 처분에서 생길 추정 현금흐름)는 현 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를 함께 처분할 때 매각가격 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 수가능액을 의미 있게 비교하기 위하여 부채의 장부금액은 현금 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뺀다.

예

78

기업은 채광사업이 마무리된 후 법에 따라 광산 현장을 복구하여야 하는 국가에서 광산을 운영한다. 그 복구원가에는 채광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거하는 표토의 복구원가도 포함된다. 처음에 표토를 제거할 때에, 표토를 복구할 때 드는 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이 충당부채금액은 광산 취득원가의 일부로

인식하고 광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복구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500원이고, 이는 복구원가의 현재가치와 동일하다.

기업은 광산에 대해 손상검사를 한다. 광산의 현금창출단위는 광산 전체이다. 기업은 광산을 약 800원에 사겠다는 여러 제의를 받았다. 이 가격에는 구매자가 표토복구의무를 부담할 것이라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광산의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해도될 정도이다. 복구원가를 제외할 경우에 광산의 사용가치는 대략 1,200원이며, 광산의 장부금액은 1,000원이다.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800원이다. 이 금액에는 이미 충당부채로 인식된 복구원가가 반영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복구원가를 고려한 후에 현금창출단위의사용가치를 산정하고 700원(1,200원에서 500원을 차감)으로 추정한다. 해당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500원인데, 이는 광산의장부금액(1,000원)에서 복구충당부채의 장부금액(500원)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79 실무적인 이유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예: 수취채권이나 그 밖의 금융자산)과 이미 인식된 부채(예: 매입채무, 퇴직급여채무, 그 밖의 충당부채)를 고 려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현금창출단위의 장 부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만큼 증가하고 그 부채의 장부금액 만큼 감소한다.

영업권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

80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취득한 날부터 사업결합의 시너지 효과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다. 이는 그 현금창출 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 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영업권이 배분되는 각 현금 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 수준이어야 한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문단 5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통합 전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81 사업결합에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는 그 밖의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영업권은 다른 자산이나 다른 자산집단과는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며, 종종 여러 현금창출단위의 현금흐름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때로는 영업권을 자의적이지 않은 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는 없고 현금창출단위집단에만 배분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최저 수준은, 영업권과 관련되어 있지만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배분할 수 없는 여러 개의 현금창출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개의 현금창출단위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을 구성한다. 문단 83~99와 부록 C에서 언급하는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는 영업권

82 문단 80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기업의 영업관리방식이 반영되고 영업권과 자연스럽게 관련지어지는 수준에서 영업권의 손상검사 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기 위해 추가 보고체계를 개발할 필요는 없다.

83 손상검사를 할 목적으로 영업권을 배분하는 현금창출단위는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을 측정 하기 위하여 영업권을 배분하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서 외화환산손익을 측정할 목적으로 영업권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배분하도록 요구하 는 경우에 영업권을 내부관리 목적으로 그 수준에서 관찰하지 않 는다면 같은 수준에서 영업권의 손상을 검사할 필요는 없다.

84 사업결합을 한 회계연도 말 이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최초 배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 다음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말 이전에 그 영업권의 최초 배분을 완전히 끝마쳐야 한다.

8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사업결합을 한 회계기간 말까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잠정적으로만결정되는 경우에 취득자는, (1) 우선 잠정적인 가치를 사용하여 사업결합을 회계처리한다. (2) 이후 취득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않는 측정기간 이내에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확정될때 그 확정 결과를 당초의 잠정적인 가치에 조정하여 인식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는 사업결합을 한 회계연도 말 이전에 사업결합에서 인식되는 영업권의 최초 배분이 완료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문단 133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86 영업권을 배분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1) 처분손익을 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2) 기업이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영업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예

기업은 영업권을 배분한 현금창출단위의 일부였던 영업을 100 원에 매각한다. 배분한 영업권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는 한 해당 현금창출단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자산집단과 관련될 수 없거나 식별할 수 없다. 현금창출단위의 존속하는 부분의 회 수가능액은 300원이다.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권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는 한 해당 현금창출단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자산집단과 관련되 거나 식별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하는 영업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 권 중 25%는 매각하는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87 영업권을 배분한 하나 이상의 현금창출단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보고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모든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을 다시 배분한다. 이 재배분은 기업이 재 구성된 단위와 관련된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하는 다른 방법을 제 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 하는 때에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한 상대적 가치 접근법을 사용한 다.

예

현금창출단위 A에는 이미 영업권이 배분되어 있다. A에 배분된 영업권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는 한 해당 현금창출단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자산집단과 관련될 수 없거나 식별할 수없다. 현금창출단위 A는 분할되어 세 개의 다른 현금창출단위B, C, D와 각각 통합될 것이다.

현금창출단위 A에 배분된 영업권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

는 한 현금창출단위 A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자산집단과 관련될 수 없거나 식별할 수는 없으므로, 현금창출단위 A에 배분된 영 업권은 B, C, D에 통합되기 전 현금창출단위 A를 구성하는 세개 분할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현금창출단위 B, C, D에 다시 배분한다.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88 문단 81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영업권이 관련되어 있지만 영업 권을 배분하지는 않은 현금창출단위는,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 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 경우에 손상차손은 문단 104에 따라 인 식한다.

89 문단 88에서 기술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포함되고 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로서만 할 수 있다면, 문단 10에서는 그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일 년에 한번은 하도록 요구한다.

90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일 년에 한 번 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 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창출단위와 배분된 영업권은 손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단 104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91~9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손상검사의 시기

98

96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를 매년 같은 시기에 수행한다면 회계연도 중 어느 때에라도 할수 있다. 서로 다른 현금창출단위는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권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일어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해당 현금창출단위를 손상검사 한다.

97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을 해당 현금창출 단위와 같은 시점에 손상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포함하 는 해당 현금창출단위보다 그 자산을 먼저 손상검사 한다. 이와 비슷하게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집단을 구성하는 현금창 출단위를 현금창출단위집단과 같은 시점에 손상검사를 하는 경우 에도,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집단보다 개별 현금창출단 위의 손상검사를 먼저 한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하는 시점에 영업권을 포함하는 단위 내의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에 손상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자산의 손상검사를 하여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이와 비슷하게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집단 내의 현금창출단위에 손상 징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하여 그 단위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99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해 과거 회계기 간에 실시한 최근의 상세한 계산 결과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 하면 당기에 그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 다.

- (1) 최근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이후로,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다.
- (2) 최근 계산 결과에 따른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과 하였다.
- (3) 최근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이후로 일어난 사건과 달라진 상황 의 분석에 기초하면, 현재의 회수가능액 산정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칠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동자산

- 3동자산에는 본사, 부문의 건물, 전산설비, 연구소와 같이 기업 또는 부문의 공용자산이 포함된다. 자산이 이 기준서의 특정 현금 창출단위에 대한 공동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기업의 조직구 조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자산의 독특한 특성은 다른 자산이나 자 산집단과는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며 그 장부금액 을 검토 대상인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에 모두 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 3동자산은 개별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 진이 해당 공동자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개별 공 동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동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이 현금창출단위 또 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과 비교한다. 손상차손이 생긴 경 우에는 이를 문단 104에 따라 인식한다.
- 102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할 때에는 검토 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된 모든 공동자산을 식별한다.
 - (1) 공동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를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 그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분한 공동자 산의 장부금액이 포함된 해당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그 회수가능액과 비교한다. 손상차손이 생긴 경우에는 문단 104 에 따라 인식한다.
- (2)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그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개) 공동자산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이 생긴 경우에는 문단 104에 따라 인식하다.
 - (4) 검토 대상 현금창출단위를 포함하면서 공동자산의 장부금 액의 일부를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 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을 식별한다.
 - (H) 위 (H)에서 식별된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그 회수 가능액과 비교한다. 이때 비교 대상 장부금액에는 해당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을 포함한 다. 손상차손이 생긴 경우에는 문단 104에 따라 인식한다.
- 103 적용사례의 사례 8에서는 공동자산에 이 요구사항을 적용한 예를 제시한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 104 현금창출단위(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 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 (1) 우선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 금액을 감액한다.
 - (2) 그 다음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

산에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 장부금액의 감소분은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60에 따라 인식한다.

- 105 문단 104에 따라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가장 많은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 (1)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측정할 수 있는 경우)
 - (2) 사용가치(산정할 수 있는 경우)
 - (3) 영(0)

이러한 제약 때문에 특정 자산에 배분하지 않은 손상차손은 현금 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 내의 다른 자산에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106 현금창출단위 내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실무적으로 추정할수 없는 경우에 이 기준서에서는 현금창출단위 내 영업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에 손상차손을 자의적으로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현금창출단위 내의 모든 자산이 함께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107 현금창출단위 내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문단 67 참조).
 - (1)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문단 104와 105에서 기술하는 절차에 따라 배분한 결과 치 중에서 큰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다.
 - (2) 관련 현금창출단위가 손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는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વો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손상되었고 손상되기 전 만큼은 아니지 만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기계장치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 가를 뺀 금액은 장부금액보다 적다. 이 기계장치는 독립적인 현 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한다. 해당 기계장치를 포함하면서 다른 자산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자산집단은 기계장치가 속한 생산라인이다. 해당 생산라인의 회수가능액은 생산라인 전체적으로는 손상되지 않 았음을 보여준다.

가정 1. 경영진이 승인한 재무예산/예측에 따르면 경영진은 해당 기계장치를 교체할 계획이 없다.

기계장치 자체만의 회수가능액은 다음의 이유에서 추정할 수 없다.

- (1) 기계장치의 사용가치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 액과 다를 수 있다.
- (2) 기계장치의 사용가치는 그 기계장치가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생산라인)에 대해서만 산정될 수 있다.

생산라인에서 손상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기계장치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기간이나 감가상각방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다. 해당 기계장치의 예상되는 남은 내용연수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기간을 단축해야 하거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가속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정 2. 경영진이 승인한 재무예산/예측에 따르면 경영진은 가까운 장래에 기계장치를 교체하고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다. 처분시점까지 해당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하여 생길 것으로 예상

되는 현금흐름은 무시해도 될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계장치의 사용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은 산정할 수 있고 이 기계장치가 속하는 현금창출 단위(생산라인) 수준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기계장치의 공정 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해당 기계장치에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108 문단 104와 105를 적용한 후에 남은 손상차손이 있다면 다른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채로 인식한 다.

손상차손환입

- 109 문단 110~116에서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개별 자산에 대해서는 문단 117~121에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문단 122와 123에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문단 124와 125에서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 110 보고일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 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 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 111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

- (1) 자산의 시장가치가 회계기간 중에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는 과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 (2)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해당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생겼거나 가까운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3)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하락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증가할 수 있다.

내부정보워천

- (4)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 범위와 사용 방법에서 회계기간 중에 생겼거나 가까운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성능을 개선·향상하거나 자산이 속하는 영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원가가 기간 중에 생기는 경우가 포함된다.
- (5)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보다 더 좋거나 더 좋을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 112 문단 111의 손상차손의 잠재적 감소 징후는 문단 12의 잠재적 손 상차손 징후와 대칭을 이룬다.
- 113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다면 그 자산에 손상차 손환입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 감가상각 (상각)방법이나 잔존가치를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114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가 달라진 경우에만 환입한다.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문단 117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중액한다. 이때 해당 증가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이다.
- 20 소상차손환입은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해당 자산의 사용이나 매각에서 추정되는 용역잠재력의 증가를 반영한다. 문단 130에서 는 용역잠재력을 높이는 추정치의 변경을 식별하도록 요구하며 그 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회수가능액 측정기준의 변경(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금액에 기초하는지, 사용가치에 기초하는지)
 - (2)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추정 미 대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할인율의 변동
 - (3) 회수가능액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경우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구 성요소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
- 116 미래현금유입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이유만 으로도 자산의 사용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경우는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 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많아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의 증가(때때로 할인액의 '상각'이라고 부른 다)만으로는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

117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액된 장부금액은 과

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718 중액된 자산(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이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재평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평가의 회계처리에는 해당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한다.
- 119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그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증가액으로 처리한다.
- 120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만큼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증액한다. 그러나 해당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을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그 손상차손 확입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121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에는 감가상각액이나 상각액을 미래 기간에 조정한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

122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 (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 장부금액의 증가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119에 따라 인식한다.

- 123 문단 122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중액할 수 없 다.
 - (1) 회수가능액(산정할 수 있는 경우)
 - (2) 과거 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산정되어 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이러한 제약으로 특정 자산에 배분하지 않은 손상차손환입액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 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 124 영업권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아니한다.
- 12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서는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 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 하고 난 다음 후속 기간에 증가된 회수가능액은 사업결합으로 취 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액이 아니라 아마도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 증가액일 것이다.

공시

- 126 자산의 분류별로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 (1)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과 해당 손상 차손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 (2)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환입 금액과 해당 손상차손환입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 (3) 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 금액
 - (4) 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

환입 금액

- 127 자산의 분류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 단을 말한다.
- 128 문단 126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자산 분류별로 공시하는 다른 정보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에 따라 유형자산의 기초 장부금액에 변동 내용을 가감하여 기말 장부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 12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부문정보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각 보고부문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 (1)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
 - (2)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환 입 금액
- 회계기간 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 자산(영업 권 포함)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불러온 사건과 상황
 - (2)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이나 손상차손환입 금액
 - (3) 개별 자산에 대한 다음 사항
 - (개) 자산의 특성
 - (H)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부문정보를 보고하는 경 우에 해당 자산이 속하는 보고부문
 - (4)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다음 사항
 - (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설명(예: 현금창출단위가 제품라인, 공장, 사업, 지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서 정의하는 보고부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
 - (나) 자산 분류별로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과 손상차손환입 금

- 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부문정보를 보고하는 경우에 보고부문별로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과 손상차손환 입 금액
- (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과거에 추정한 이후 현금창 출단위를 식별하기 위한 자산의 구성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 전과 후의 자산 구성방법과 변경한 이유
- (5) 자산(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그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인지 또는 자산의 사용가치인지
- (6)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인 경우에 다음의 정보
 - (개) 자산(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 측정치가 그 전체로서 분류 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 수준('처분부대원가'를 관측할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음)
 - (4)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 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측정에 사용한 가치평가기법(들)에 대한 기술. 가치평 가기법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 사실과 그 이유(들)를 공 시한다.
 - (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금액을 산정할 때 근거한 각 주요 가정. 주요 가정들이란 자산(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들을 말한다.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경우에 당기 및 전기의 측정치에 사용한 할인율(들)도 공시한다.
- (7) 회수가능액이 자산의 사용가치인 경우에 사용가치의 현재 추 정치와 과거 추정치(해당되는 경우)에 사용된 할인율
- 131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이 중요하지 않아 관련 정보를 문단 130에 따라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기간 중 인식한 해당 손

상차손의 총계와 손상차손환입의 총계에 대하여 다음 정보를 공 시한다.

- (1)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에서 영향을 받는 주요 자산 분류
- (2)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게 한 주요 사건과 상황
- 회계기간 중에 자산(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가정을 공시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문단 134에서 는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 포함된 현금창출 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 133 문단 84에 따라 회계기간 중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일부를 보고기간 말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배분하지 않은 이유와 배분하지 않은 영업권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 가능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

- 134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 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에는 각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하다.
 - (1)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금액
 - (2)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내용연수가 비한정 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 (3)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한 기준 (사용가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 (4)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 (7) 최근 재무예산/예측에서 대상으로 한 기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경영진이 근거한 주요 가정. 주요 가정들이란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들을 말한다.
- (내)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주요 가정치가 과 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차 이가 난다면 그 차이의 정도와 이유
- (대) 경영진이 승인한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추정 대상 기간과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 단)에 사용하는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
- (P) 최근 재무예산/예측의 대상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성장률, 그리고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하는 국가(들), 현금창출단 위(현금창출단위집단)를 활용하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 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사용한 경우에 그 성장률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
- 卿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적용한 할인율(들)
- (5)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처분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가치평가기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동일한 현금창출단위 (현금창출단위집단)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측정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 (개)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 근거한 주요 가정. 주요 가정들이란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 단)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들을 말 한다.
 - (내)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설명, 주요 가정

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의 정도와 이유

- (나)-(1) 공정가치 측정치가 그 전체로서 분류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처분부대원가의 관측 가능성과 관계없음)
- (내)-(2) 가치평가기법을 바꾸었다면, 그 바꾼 내용과 바꾼 이유 할인현금흐름 추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한다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 때 경영진이 현금흐름을 추정한 기간
- (라) 현금흐름 추정에 사용한 성장률
- (매) 현금흐름 추정에 적용한 할인율
- (6)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근 거한 주요 가정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범위에서 변동될 경우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 집단)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다면 다음 항 목을 공시한다.
 - (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내) 주요 가정치
 - (i)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 이 경우에 회수가능액 측정에 사용하는 다른 변수 중 주요 가정치의 변동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를 고려한다.
- 135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 장부금액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의 장부 금액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 하여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현금창출단위(현금 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장부금액의 합계액을 공시한다. 또 이 중 같은 주요 가정을 사용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정한 현금창출단위(현

금창출단위집단)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 집단)들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의 합계액이 영업권 전체의 장부금액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그 사실과 함께 다음을 공시한다.

- (1)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 합계액
- (2)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내용연수가 비한정 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합계액
- (3) 주요 가정의 내용
- (4)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을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의 정도와 이유
- (5) 주요 가정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변동될 경 우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들의 장부금액 합계액이 회수가능액 합계액을 초과할 수 있다면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 (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들의 회수가능액 합계액이 장부금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 (내) 주요 가정치(들)
 - (中)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들의 회수가능액 합계액과 장부금액 합계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들)의 변동폭. 이 경우에 회수가능액 측정에 사용하는 다른 변수 중 주요 가정치(들)의 변동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를 참고한다.
- 136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에 대해 과거 회계 기간에 실시한 최근의 상세한 계산 결과는 문단 24이나 99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기간에 현금창출단위(현 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을 검사할 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와 관련하여 문단 134와 135에서 요구하는 공시 정보는 이월한 회수가능액 계산과

관련된 것이다.

137 적용사례의 사례 9에서는 문단 134와 135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예시한다.

경과 규정과 시행일

- 138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13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14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140A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140A.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용할 수도 있다.
- 한140A.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40B와 140E를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부 개정)에 따라 이 기준서의 문단 65, 81, 85, 139를 개정하였고, 문단 91~95와 138을 삭제하였 으며, 부록 C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 호(2008년 전부 개정)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 140C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140D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140E 2009년 6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이 기준서의 문단80(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140F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140G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140H 2012년 11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에 따라 문단 4, 문단 12(8) 위의 소제목과 문단 12(8)
 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140I 201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5,
 6, 12, 20, 22, 28, 78, 105, 111, 130, 134를 개정하였고, 문단 25~27을 삭제하였으며, 문단 53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140J 2013년 8월에 문단 130, 134와 문단 138 위의 소제목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하지 않는 기간(비교기간 포함)에는 적용할 수 없다.
- 140K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140L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 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140M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2,
 4, 5를 개정하였고, 문단 140F, 140G, 140K를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 140N [이 문단은 아직 시행되지 않는 제정사항을 참조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음]

기준서 등의 대체

14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부록 A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한 사용가치 측정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현재가치기 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지침을 제시한다. 이 부록에서는 '자산'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지만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집단에도 똑같이 적용하다.

현재가치 측정의 구성요소

- A1 다음 요소들은 함께 자산들 사이의 경제적 차이를 포착한다.
 - (1) 자산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더 복잡한 경우에는 일련의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 (2) 그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
 - (3) 현행 시장 무위험 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 (4) 자산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가격
 - (5) 자산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때로는 식별할 수 없는 그 밖의 요소들(예: 비유동성)
- A2 이 부록에서는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하여 설명하는데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문단 A1에서 기술한 (2)~(5)의 요소가 할인율에 반영되고,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에서는 문단 A1의 (2), (4), (5)의 요소가 위험조정 기대현금 흐름을 이끌어내는 데에 반영된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선택하더라도 그 결과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 즉 가능한모든 결과의 가중평균을 반영한다.

일반 워칙

- A3 미래현금흐름과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법은 측정 대상 자산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다음의 일반 원칙은 자산을 측정할 때 어떤 현재가치기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 (1)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에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내재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반영한다. 그렇게하지 않으면 일부 가정이 이중으로 반영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출채권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12%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면, 이 할인율은 특정한 속성이 있는 대출채권에서 생길 미래 채무불이행에 대한 예상을 반영한다. 그러나기대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같은 12%의 할인율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 현금흐름에 이미 미래 채무불이행에 대한가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추정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에는 편의가 개입되어서는 아니되며 측정 대상 자산과 관계없는 요인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자산의 미래 수익성이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하여추정 순현금흐름을 고의로 축소한다면 측정에 편의가 개입된것이다.
 - (3) 추정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은 하나의 예측치(예: 가능한 금액 중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 최솟값, 최댓값)가 아니라가능한 결과치의 변동 범위를 반영한다.

현재가치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과 기대현금흐름 접근법

전통적 접근법

A4 현재가치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때 전통적으로 일련의 추정 현금호름 하나와 할인율('위험조정할인율') 하나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하나의 할인율이 미래현금호름에 대한

모든 예상과 적정 위험프리미엄을 통합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할인율의 선택을 가장 강조한다.

- A5 측정 대상 자산과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을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통적 접근법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자산의 경우에 '12%의 채권'과 같이 시장에서 자산을 나타내는 방식과 일치한다.
- A6 그러나 전통적 접근법은 시장이 없거나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비금융자산과 같이 복잡한 측정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어렵다. 적절한 위험조정할인율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항목 (시장에서 거래되고 관측 가능한 이자율이 존재하는 자산과 측정 대상 자산)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측정 대상 자산의 현금흐름의 속성과 그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의 속성이 비슷하다면 측정 대상 현금흐름에 대한 적정 할인율을 그 다른 자산의 관측 가능한 이자율에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 (1) 할인할 일련의 현금흐름을 식별한다.
 - (2) 시장에서 비슷한 현금흐름 속성을 가진 다른 자산을 찾는다.
 - (3) 두 항목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자산에서 생길 일련의 현금흐름을 비교한다(예: 둘 다 계약상 현금흐름인지, 하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추정 현금흐름인지).
 - (4) 한 항목에는 존재하나 다른 항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한다(예: 하나가 다른 것보다 유동성이 낮은지).
 - (5) 두 자산에서 일련의 현금흐름이 경제상황 변화에 비슷하게 반응할 것 같은지를 검토한다.

기대현금흐름 접근법

A7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이 전통적 접근법보다 더 효과적인 측정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측정치를 이끌어낼 때 기대현금흐름접근법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하나의 현금흐름을 사용하지않고 발생 가능한 현금흐름에 대한 모든 예상을 사용한다. 예를들면 현금흐름이 10%의 확률로 100원, 60%의 확률로 200원, 30%의 확률로 300원이 예상된다면 기대현금흐름은 220원이다. 이와같이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은 측정 대상 현금흐름을 직접 분석하며 측정에 사용한 가정을 더 명확히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접근법과 차이가 있다.

A8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에 따르면 현금흐름의 시기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금흐름 1,000원이 1년 후에 유입될 확률이 10%, 2년 후에 유입될 확률이 60%, 3년 후에 유입될 확률이 30%라고 각각 가정할 경우에 기대현재가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단위: 원) 1년 후 유입되는 현금흐름 1,000원의 현재가치 (할인율=5.00%) 952.38 확률 10.00% 95.24 2년 후 유입되는 현금흐름 1,000원의 현재가치 (할인율=5.25%) 902.73 확률 60.00% 541.64 3년 후 유입되는 현금흐름 1,000원의 현재가치 (할인율=5.50%) 851.61 확률 30.00% 255.48 기대현재가치 892.36

A9 문단 A8에서 기대현재가치 892.36원은 전통적 개념의 최선의 추정치 902.73원(60% 확률)과 다르다. 전통적 현재가치 계산을 이사례에 적용하려면 발생 가능한 현금흐름의 여러 유입시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유입시기의 관련된 확률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전통적 현재가치 계산에 사용하는 할인율이 현금흐름 발생시기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A10 확률의 사용은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매우 주관적인 추정치에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이 실제로 더 정확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단 A6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통적 접근법은 기대현금흐름 접근법과 같은 계산의 투명성을 보여 주지 못하나 해당 접근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기대현금흐름 접근법과 같은 추정치와 주관성이 필요하다.
- A11 실무적으로 기대현금흐름의 요소를 약식으로 도입하여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음의 예와 같이 발생 가능한 현금흐름의 확률에 대해 제한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 (1) 추정 금액은 50원과 250원 사이에 있지만 그 범위의 어떠한 값도 다른 값보다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 이 제한된 정보에 근거하면 추정 기대현금흐름은 150원[(50원+250원)/2]이다.
 - (2) 추정 금액은 50원과 250원 사이에 있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은 100원이지만 추정 범위의 각 값에 부여될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이 제한된 정보에 근거하면 추정 기대 현금흐름은 133.33원[(50원+100원+250원)/3]이다.
 - (3) 추정 금액은 50원, 250원, 100원이고 그 확률이 각각 10%, 30%, 60%인 경우. 이 제한된 정보에 근거하면 추정 기대현금 흐름은 140원[(50원×0.10)+(250원×0.30)+(100원×0.60)]이다.

각각의 경우에 추정 기대현금흐름은 최솟값,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 최댓값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사용가치에 대한 더 나은 추정치를 제공할 것이다.

A12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비용과 효익의 제약을 받게 된다. 광범위한 자료에 접근하여 다양한 현금흐름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현금흐름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보다 나은 것을

개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원가 와 그 정보가 높이는 신뢰성을 비교하여야 한다.

- A13 한편 발생 가능한 결과의 수가 한정된 항목이나 하나의 항목을 측정하는 데에는 기대현금흐름 기법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자산에 가능한 결과가 두 가지이고 현금흐름이 10원이 될 확률이 90%, 1,000원이 될 확률이 10%인 경우에, 기대현금흐름은 109원이지만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그 자산에 대해 지급할 금액 중 어느 하나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 A14 문단 A13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측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측정 목적이 발생원가의 누적액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기대현금흐름은 표현의 충실성을 갖춘 기대원가의 추정치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단 A13의 예에서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비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더라도 10원이 될 수 없다. 이는 10원이라는 측정치는 자산의 측정에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불확실한 현금흐름은 확실한 현금흐름인 것처럼 표시한다(확실성을 가정한 확실성등가 현금흐름으로 조정하여 할인한다). 합리적인 거래당사자라면 문단 A13의 자산을 10원에 팔지는 않을 것이다.

할인율

A15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어떠한 접근법을 채택하든 현금호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은 추정 현금호름에서 조정한 위험을 다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가정의 영향이 이중으로 반영될 수 있다.

- A16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시장에서 직접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대용치를 사용한다. 대용치를 사용하는 목적은 가능한 한 다음 항목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 (1) 자산의 내용연수 말까지의 기간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
 - (2) 문단 A1(2)·(4)·(5)에서 기술한 요소. 다만 해당 요소를 추정 현 금흐름을 이끌어낼 때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 A17 대용치를 사용하여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추정할 때 우선 다음 이 자율을 고려한다.
 - (1)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
 - (2) 기업의 증분차입이자율
 - (3) 그 밖의 시장차입이자율
- A18 문단 A17의 이자율은 다음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 (1) 자산의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된 특유한 위험에 대해 시장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반영한다.
 - (2) 자산의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거나 이미 추정 현금흐름에 서 조정한 위험은 제외한다.
 - 또 국가위험, 환위험, 가격위험과 같은 위험을 고려한다.
- A19 할인율은 기업의 자본구조와 자산 구입대금을 조달하는 방법과는 독립적이다. 자산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은 자산 구입대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 A20 문단 55에서는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할인율 추정에 사용한 기준이 세후 기준이라면 세전 할인율을 반영하기 위해 이 기준을 조정한다.

A21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의 사용가치가 기간별 위험의 차이나 이자율의 기간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미래 기간별로 별도의 할인율을 사용한다.

부록 C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 C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부 개정)에 따라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1)이 (2)보다 클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 (1) 다음의 합계 금액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측정한 이전대가로서 일 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
 -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측정한 <mark>피취득자에 대한</mark> 비지배지분의 금액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 (I)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에 취득자가 이전 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 치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측정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취득일 현재 순액

영업권의 배분

C2 이 기준서의 문단 80에서는 영업권 외의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할당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사업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효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자의 해당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 각각에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결합에서 생긴 시너지 효과의 일부가 비지배지분이 없는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될 수도 있다.

손상검사

- C3 손상검사를 하려면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그 장부금액을 비교하여야 한다.
- C4 기업이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가 아니라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한다면,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은 관련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는 포함되지만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을 포함하기 위해,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과산하여 조정한다. 조정된 장부금액은 해당 현금창출단위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그 회수가능액과 비교한다.

손상차손의 배분

- C5 문단 104에서는 식별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액한 다음에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 C6 비지배지분이 있는 종속기업이나 그의 일부가 그 자체로서 현금 창출단위인 경우에 당기손익을 배분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지배 기업과 비지배지분에 손상차손을 배분한다.
- C7 비지배지분이 있는 종속기업이나 그의 일부가 그보다 큰 현금창출단위의 일부인 경우에 영업권 손상차손은 그 현금창출단위 내의 비지배지분이 있는 부분과 로렇지 않은 부분에 배분한다. 손상차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현금창출단위 다의 여러 부분에 배분한다.
 - (1) 손상이 현금창출단위의 영업권과 관련되는 만큼은 손상되기 전 각 부분 영업권의 상대적 장부가치에 따라 배분한다.

(2) 현금창출단위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관련되는 손상만큼은 손상되기 전 각 부분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상대적 장부 가치에 따라 배분한다. 각 부분에 배분된 손상차손은 해당 부 분 내의 각 자산에 그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그 부분들에 비지배지분이 있다면,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을 배분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한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손상차손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은 영업권과 관련된 경우에는(문단 C4 참조), 그 손상 차손은 영업권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지배기업에 배분된 영업권과 관련된 손상차손만을 영업권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다.

C9 적용사례의 사례 7에서는 영업권이 포함된 부분 소유 현금창출단 위의 손상검사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제정(2007. 11. 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5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개정(2015. 9. 11.)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기영,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적용사례

	문단번호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IE1~IE22
A - 소매연쇄점	IE1~IE4
B - 제조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공장	IE5~IE10
C - 단일 품목 생산기업	IE11~IE16
D - 잡지 제목	IE17~IE19
E - 반은 임대하고 반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IE20~IE22
사용가치의 계산과 손상차손의 인식	IE23-IE32
이연법인세 효과	IE33~IE37
A - 손상차손의 인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	IE33~IE35
B - 이연법인세자산을 생기게 하는 손상차손의 인식	IE36~IE37
손상차손의 환입	IE38~IE43
미래 구조조정의 처리	IE44~IE53
미래 원가의 처리	IE54~IE61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IE62~IE68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비례지분으로 최초에	
측정된 비지배지분	IE62~IE68
비지배지분이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관련	
종속기업이 독립적인 현금창출단위인 경우	IE68A~IE68E
비지배지분이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관련	
종속기업이 그보다 더 큰 현금창출단위의 일부인 경우	IE68F~IE68J
공동자산의 배분	IE69~IE79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시	IE80~IE89
	A - 손상차손의 인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 B - 이연법인세자산을 생기게 하는 손상차손의 인식 손상차손의 환입 미래 구조조정의 처리 미래 원가의 처리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비례지분으로 최초에 측정된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이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관련 종속기업이 독립적인 현금창출단위인 경우 비지배지분이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관련 종속기업이 그보다 더 큰 현금창출단위의 일부인 경우 공동자산의 배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모든 적용사례에서 해당 기업은 기술된 거래 외에 다른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적용사례에서 화폐금액은 '원'으로 표시된다.

사례 1.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 이 사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다양한 상황에서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 (2) 특정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강조한다.

A. 소매연쇄점

배경

IE1 점포 X는 소매연쇄점인 M에 속해 있다. X는 모든 상품을 M의 구매센터를 통해 구매한다. 가격, 마케팅, 광고, 인사정책(X의 출납원과 판매사원의 고용은 제외함) 모두는 M이 결정한다. M은 X가 있는 도시 내에 5개의 다른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며(이들의 상권은 서로 중복되지 않음) 다른 도시에도 20개의 다른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 이 모든 점포는 X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X와다른 4개의 점포는 5년 전에 인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영업권을 인식하였다.

X가 속하는 현금창출단위(X의 현금창출단위)는 무엇인가?

분석

- IE2 X의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할 때 예를 들면 다음의 사항을 기업이 고려한다.
 - (1) 내부 경영보고가 각 점포별로 성과를 측정하도록 조직화되어 있는지
 - (2) 사업이 점포별 이익기준으로 운영되는지, 지역기준이나 도시기 준으로 운영되는지
- IE3 M의 모든 점포는 각기 다른 상권에 속해 있으므로 서로 다른 고객기반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X가 M기업의 수준에서 관리되지만, X가 창출하는 현금유입은 M의 다른 점포의 현금 흐름과는 거의 독립적이다. 따라서 X는 현금창출단위일 가능성이높다.
- IE4 현금창출단위인 X가 내부관리 목적으로 영업권을 관찰하는 최소 단위에 해당한다면, M은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이 기준서 문단 90 에서 기술한 손상검사를 한다. 그러나 현금창출단위인 X의 수준에서 영업권의 장부금액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없고 내부관리 목적으로 관찰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이 기준서의 문단 88에서 기술한 바에 따라 손상검사를 한다.

B. 제조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공장

배경

IE5 공장 Y가 최종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원재료는 같은 기업에 속하는 공장 X에서 구입한 중간재이다. X의 제품은 모든 이윤이 X로 넘어가는 이전가격으로 Y에 팔린다. Y의 최종 생산품의 80%는 기업의 외부 고객에게 판매된다. X의 최종 생산품의 60%는 Y에 판매되며, 나머지 40%는 기업의 외부 고객에

게 판매된다.

다음 각 경우에 X와 Y가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는 무엇인가?

경우 1: X는 Y에 판매하는 제품을 활성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내부 이전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높다.

경우 2: X가 Y에 판매하는 제품의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석

경우 1

- IE6 X는 제품을 활성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고, 따라서 Y에서의 현금 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X 의 제품 일부를 Y에서 사용하지만 X는 별개의 현금창출단위일 가능성이 높다(이 기준서 문단 70 참조).
- IE7 Y도 별개의 현금창출단위일 가능성이 높다. Y는 제품의 80%를 기업의 외부 고객에게 판매한다. 따라서 Y의 현금유업은 거의 독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IE8 내부 이전가격은 X의 생산품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X와 Y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내부에서 사용되는 X의 제품미래 가격(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재무예산/예측을 수정한다(이 기준서 문단 70 참조).

경우 2

IE9 각 공장의 회수가능액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다른 공장의 회수가

능액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 (1) X의 제품 과반이 내부에서 사용되며 활성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으므로, X의 현금유입은 Y의 제품 수요에 달려있다. 따라서 X는 Y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한다고 볼 수 없다.
- (2) 두 공장은 함께 관리된다.

IE10 결국 X와 Y는 함께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소 자 산집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C. 단일 품목 생산기업

배경

IE11 기업 M은 단일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A, B, C 공장을 보유한다. 각 공장은 서로 다른 대륙에 위치하고 있다. A는 B나 C에서 조립하는 부품을 생산한다. B와 C의 통합 가동률은 100%에 미치지 못한다. M의 제품은 B나 C를 통하여 전 세계에 판매된다. 예를 들면 B의 제품을 C보다 B에서 더 빠르게 C가 소재하는 대륙으로 수송할 수 있다면 B의 제품을 C가 소재하는 대륙에서 판매할 수 있다. B와 C의 가동률은 두 지역 사이의 매출 할당에 달려있다.

다음 각각의 경우에 A, B, C가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는 무엇인가?

경우 1: A의 제품의 활성시장이 존재한다.

경우 2: A의 제품의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석

경우 1

- IE12 A는 독립된 현금창출단위일 가능성이 높다. A의 제품의 활성시장이 있기 때문이다(사례 B: 제조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공장의 경우 1 참조).
- IE13 B와 C가 조립하는 제품의 활성시장은 있지만, B와 C의 현금유입은 두 지역에 대한 생산량 할당에 달려있다. B와 C의 미래현금유입이 각각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따라서 거의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집단은 B와 C의 합일 가능성이 높다.
- IE14 A의 사용가치와 (B+C)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A 제품의 미래 가격(독립된 당사자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재무예산/예측을 조정한다 (이 기준서 문단 70 참조).

경우 2

- IE15 각 공장의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다른 공장의 회수가능액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 (1) A의 제품의 활성시장이 없다. 따라서 A의 현금유입은 B와 C 의 최종 생산품 판매량에 달려있다.
 - (2) B와 C가 조립하는 제품의 활성시장이 있더라도, B와 C의 현금 유입은 두 지역의 생산량 할당에 달려있다. B와 C의 미래현금 유입은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 IE16 결국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집단은 A, B, C의 합(M 전체)일 가능성이 높다.

D. 잡지 제목

배경

IE17 150개의 잡지 제목을 소유한 출판기업이 있다. 이 가운데 70개는 매수한 것이며, 80개는 자체 개발하였다. 잡지 제목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어 있다. 새로운 잡지 제목을 만들고 기존 잡지 제목을 유지하는 데 드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직접 판매와 광고에서 생기는 현금유입은 각잡지 제목별로 구분될 수 있다. 각 잡지 제목은 고객부문별로 관리한다. 잡지의 광고수입 규모는 그 잡지 제목과 관련된 고객부문에 속하는 잡지 제목들의 범위에 달려 있다. 경영진은 오래된 잡지 제목을 경제적 수명이 다하기 전에 폐기하고 같은 고객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잡지 제목으로 곧바로 바꾸는 방침을 갖고 있다.

각 잡지 제목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는 무엇인가?

분석

IE18 개별 잡지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 잡지의 광고수입이 비록 같은 고객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잡지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지만, 직접 판매와 광고에서 얻는 현금유입은 각 잡지 제목별로 식별할 수 있다. 또 잡지 제목은 고객 부문별로 관리하지만 폐기 결정은 각 잡지별로 한다.

IE19 따라서 개별 잡지 제목은 다른 잡지 제목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 유입을 창출하며 각각 별개의 현금창출단위일 가능성이 높다.

E. 반은 임대하고 반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배경

IE20 기업 M은 제조기업이다. M이 소유한 본사 건물은 전체가 내부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직을 감축한 다음에 현재는 절반만내부용도로 사용하고 절반을 제삼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리스계약기간은 5년이다.

본사 건물의 현금창출단위는 무엇인가?

분석

- IE21 본사 건물의 주된 목적은 M의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자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사 건물 전체가 기업 전체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사 건물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는 기업 M 전체일 가능성이 높다.
- IE22 본사 건물은 투자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건물의 사용가치를 미래의 시장 임대료 예측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사례 2. 사용가치의 계산과 손상차손의 인식

이 사례에서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과 사용가치의 계산

IE23 기업 T는 20X0년 말에 기업 M을 10,000원에 취득하였다. M은 3 개국에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표 1> 20X0년 말의 자료

20X0년 말	매수가격의 배분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공정가치	영업권 ⁽¹⁾
A국에서의 활동	3,000	2,000	1,000
B국에서의 활동	2,000	1,500	500
C국에서의 활동	5,000	3,500	1,500
합 계	10,000	7,000	3,000

- (1) 각 국가에서의 활동은 내부관리 목적으로 영업권을 관찰하는 최저 수준을 나타낸다(영업권은 매수 계약에 규정된 각 국가에서의 활동의 매수가격과 식별할 수 있는 공정가치의 차이로 산정한다).
- IE23A 각 국가에서의 활동에 영업권이 배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각 활동에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고, 손상 징후가 있다면 그보다 더 자주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90 참조).
- IE24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 지 중 더 많은 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20X0년과 20X1년 말에 각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는 그 장부금 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의 활동과 그 활동에 배분된 영업권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IE25 20X2년 초에 A국에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는 T의 주요 제품 수출을 유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로 예측 가능한 미래 기간에 A국 내 T의 생산이 40% 감소할 것이다.
- IE26 유의적인 수출 제한과 그에 따른 생산 감축 전망에 따라, T는 20X2년 초에 A국 영업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 IE27 T는 A국 내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을 내용연수 12년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예상한다.
- IE28 T는 A국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표 2> 참조)하기 위해 서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 (1) 경영진이 승인한 향후 5년(20X2년~20X6년)에 대한 최근 재무 예산/예측을 바탕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 (2) 후속 기간(20X7년~20Y2년)의 현금흐름을 하락하는 성장률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20X7년의 성장률은 3%로 추정한다. 이 성장률은 A국 내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보다 낮은 것이다.
 - (3) 할인율로 15%를 선택한다. 이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A국 현금 창출단위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할인율이다.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 IE29 A국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1,360원이다.
- IE30 T는 A국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그 장부금액과 비교한다 (<표 3> 참조).

- IE31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1,473원만큼 초과하므로 T는 같은 금액의 손상차손을 곧바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A국 영업에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A국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는 그 밖에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하기 전에 영(0)으로 감액한다(이 기준서 문단 104 참조).
- IE32 법인세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별도로 회계처리한다(사례 3A 참조).

<표2> 20X2년 초 A국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계산

(단위: 원)

연도	장기 성장률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15%의 현가요소 ³	할인된 미래현금흐름
20X2(n=1)		230^{1}	0.86957	200
20X3		253^{1}	0.75614	191
20X4		273^{1}	0.65752	180
20X5		290^{1}	0.57175	166
20X6		304^{1}	0.49718	151
20X7	3%	313^{2}	0.43233	135
20X8	-2%	307^{2}	0.37594	115
20X9	-6%	289 ²	0.32690	94
20Y0	-15%	245^{2}	0.28426	70
20Y1	-25%	184^{2}	0.24719	45
20Y2	-67%	61 ²	0.21494	13
사용가치				1,360

- 1 순현금흐름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함(40% 삭감 후).
- 2 하락하는 성장률을 적용하여 전기 현금흐름에서 외삽법(extrapolation)으로 추정함.
- 3 현가요소는 $k=1/(1+a)^n$ 로 계산함. n은 할인기간이고 a는 할인율임.

<표 3> 20X2년 초 A국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계산과 배분

(단위: 원)

20X2년 초	영업권	식별할 수 있는 자산	합계
역사적원가	1,000	2,000	3,000
감가상각누계액(20x1)	_	(167)	(167)
장부금액	1,000	1,833	2,833
손상차손	(1,000)	(473)	(1,473)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	-	1,360	1,360

사례 3. 이연법인세 효과

A. 손상차손의 인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

이 사례에서는 사례 2에서 제시한 기업 T의 자료와 아래에서 제공하는 추가 정보를 사용한다.

- IE33 20X2년 초에 A국 현금창출단위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세무기 준액은 900원이다. 세무상 손상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율은 40%이다.
- IE34 A국 현금창출단위의 자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해당 자산에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줄어든다. 따라서 이연법인세부채가 감소한다.

(단위: 원)

	손상차손 인식 전		손상차손 인식 후
20X2년 초	식별할 수 있는	손상차손	식별할 수 있는
	<i>자산</i>		<i>자산</i>
장부금액(사례 2)	1,833	(473)	1,360
세무기준액	900	-	900
가산할 일시적차이	933	(473)	460
이연법인세부채, 세율 40%	373	(189)	184

IE3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처음에 영업권에 관련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업권에 관련된 손상차손에는 이연법인세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B. 이연법인세자산을 생기게 하는 손상차손의 인식

IE36 기업은 장부금액 1,000원, 회수가능액 650원인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30%이며,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800원이다. 세무상 손상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손상차 손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i>손상차손</i> 인식 전	<i>손상차손</i> 효과	<i>손상차손</i> 인식 후
장부금액	1,000	(350)	650
세무기준액	800	-	800
가산할(차감할) 일시적차이	200	(350)	(150)
이연법인세부채(자산), 세율 30%	60	(105)	(45)

IE3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되, 차 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 정도까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사례 4. 손상차손의 환입

이 사례에서는 사례 2에서 제시한 기업 T의 자료와 아래에서 제공하는 추가 정보를 사용한다.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

IE38 20X3년에도 A국 정부는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T의 제품에 미치는 수출 법률의 영향은 경영진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생산이 30% 정도 늘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A국 영업의 순자산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추정할 필요가 있다(이 기준서 문단 110과 111 참조). A국 영업의 순자산에 대한 현금창출단위는 여전히 A국 영업이다.

IE39 사례 2와 비슷한 계산에 따르면 A국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1,910원이 된다.

손상차손의 환입

IE40 T는 A국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순장부금액을 비교한다.

<표 1> 20X3년 말 A국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계산

20X2년 초(사례 2)	영업권	식별할 수 있는 자산	합 계
역사적원가	1,000	2,000	3,000
감가상각누계액	-	(167)	(167)
손상차손	(1,000)	(473)	(1,473)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	-	1,360	1,360

20X3년 말	영업권	식별할 수 있는 자산	합 계
추가 감가상각(2년) ⁽¹⁾	-	(247)	(247)
장부금액	-	1,113	1,113
회수가능액			1,910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97

- (1) 20X2년 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다음에 T는 A국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수정된 장부금액과 남은 내용연수(11년)에 기초하여, 연간 166.7원에서 123.6원으로 변경하였다.
- IE41 마지막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A국 순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에 유리한 변화가 생겼다. 그러므로 이기준서 문단 114에 따라 20X2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을 환입한다.
- IE42 이 기준서 문단 122와 123에 따라 A국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387원만큼 증액한다(<표 3> 참조). 즉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 1,910원과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 1,500원(<표 2> 참조) 중 적은 금액으로 수정한다. 이 증가액을 곧바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 IE43 이 기준서 문단 124에 따라,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는다.

<표 2> 20X3년 말 A국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 후 역 사적원가 산정

(단위: 원)

20X3년 말	식별할 수 있는 자산
역사적원가	2,000
감가상각누계액(166.7×3년)	(500)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	1,500
장부금액(<표 1> 참조)	1,113
차 이	387

<표 3> 20X3년 말 A국 자산의 장부금액

20X3년 말	영업권	식별할 수 있는 자산	합계
총 장부금액	1,000	2,000	3,000
상각누계액	-	(414)	(414)
손상차손누계액	(1,000)	(473)	(1,473)
장부금액	-	1,113	1,113
손상차손환입액	0	387	387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	-	1,500	1,500

사례 5. 미래 구조조정의 처리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

- IE44 20X0년 말에 기업 K는 공장에 손상검사를 한다. 해당 공장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이다. 그 공장을 구성하는 자산들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이다. 공장의 장부금액은 3,000원이며, 남은 내용연수는 10년이다.
- IE45 해당 공장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사용가치는 14%의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IE46 경영진이 승인한 예산에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 (1) 20X3년 말에, 해당 공장에 대해 추정원가가 100원인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K는 아직 구조조정을 확약하지 않았으므로, 미래 구조조정원가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 (2) 이 구조조정으로 미래현금유출을 줄이는 형태의 미래 효익이 있을 것이다.
- IE47 20X2년 말에 K는 구조조정을 확약하였다. 구조조정원가는 20X0년 말과 동일하게 100원으로 추정되고, K는 이 금액만큼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경영진이 최근에 승인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공장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은 문단 IE51에 제시되어 있고 현행 할인율은 20X0년 말과 같다.
- IE48 20X3년 말에 실제 구조조정원가 100원이 발생하여 지급하였다. 경 영진이 최근에 승인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 공장의 미래현금

흐름과 현행 할인율은 20X2년 말에 추정된 것과 같다.

20X0년 말

<표 1> 20X0년 말 공장의 사용가치 계산

(단위: 원)

연도	미래현금흐름	할인된 현금흐름 (할인율 14%)
20X1	300^{1}	263
20X2	280^{2}	215
20X3	420^{2}	283
20X4	520^{2}	308
20X5	350^{2}	182
20X6	420^{2}	191
20X7	480^{2}	192
20X8	480^{2}	168
20X9	460^{2}	141
20X10	400^{2}	108
사용가치		2,051

- 1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추정 구조조정원가는 제외한다.
- 2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구조조정에서 예상되는 추정 효익은 제외한다.

IE49 공장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이 그 장부금액에 못 미치므로 공장 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표 2> 20X0년 말 손상차손 계산

	공장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	3,000
회수가능액(표 1)	2,051
손상차손	(949)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	2,051

20X1년 말

IE50 공장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추정하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공장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다.

20X2년 말

IE51 기업이 이제 구조조정을 확약하였으므로, 공장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구조조정에서 예상되는 효익을 현금흐름 예측에 고려한다. 이것은 20X0년 말에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하였던 추정 미래 현금흐름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기준서 문단 110과 111 에 따라 20X2년 말에 공장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산정한다.

<표 3> 20X2년 말 공장의 사용가치 계산

연도	미래현금흐름	할인된 현금흐름 (할인율 14%)
20X3	420^{1}	368
20X4	570^{2}	439
20X5	380^{2}	256
20X6	450^{2}	266
20X7	510^{2}	265
20X8	510^{2}	232
20X9	480^{2}	192
20X10	410^{2}	144
사용가치		2,162

- 1 이미 부채가 인식되었기 때문에 추정 구조조정원가는 제외한다.
- 2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구조조정에서 예상되는 추정 효익을 포함한다.
- IE52 공장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이 그 장부금액보다 더 많다(<표4>참조). 따라서 20X0년 말에 공장에 대해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을 환입한다.

<표 4> 20X2년 말 손상차손환입 계산

(단위: 원)

	공장
20X0년 말 장부금액(표 2)	2,051
20X2년 말	
감가상각액(20X1년과 20X2년: 표 5)	(410)
손상차손환입 전 장부금액	1,641
회수가능액(표 3)	2,162
손상차손환입액	521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	2,162
장부금액: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표 5)	2,400 ⁽¹⁾

(1) 손상차손을 환입하더라도 공장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를 초 과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환입 전액을 인식한다.

20X3년 말

IE53 구조조정원가를 지급할 때 100원의 현금이 유출된다. 현금유출이 있었지만 20X2년 말에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한 추정 미래현 금흐름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20X3년 말에 공장의 회수가능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표 5> 공장의 장부금액 요약

(단위: 원)

연도 말	<i>감가상각 후</i> 역사적 원가	회수가능액	조정된 감가상각액	(손상차손)	<i>손상차손</i> 인식 후 장부금액
20X0	3,000	2,051	0	(949)	2,051
20X1	2,700	계산 불필요	(205)	0	1,846
20X2	2,400	2,162	(205)	521	2,162
20X3	2,100	계산 불필요	(270)	0	1,892

계산 불필요: 손상차손의 증가나 감소 징후가 없으므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례 6. 미래 원가의 처리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

- IE54 20X0년 말에 기업 F는 기계에 손상검사를 한다. 이 기계는 현금 창출단위에 해당한다. 기계는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며 이 장부금액은 150,000원이고, 추정되는 남은 내용연수는 10년이다.
- IE55 이 기계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은 사용가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사용가치는 14%의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IE56 경영진이 승인한 예산에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 (1) 현재 상태의 기계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정원가
 - (2) **20**X4년에 기계의 생산능력을 높여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들 **25**,000원의 원가
- IE57 20X4년 말에 기계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원가가 들었다. 경영진이 최근에 승인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기계의 추정 미래현금호름은 문단 IE60에 제시되어 있고 현행 할인율은 20X0년 말과 같다.

20X0년 말

<표 1> 20X0년 말 기계의 사용가치 계산

(단위: 원)

연도	미래현금흐름	할인된 현금흐름 (할인율 14%)
20X1	22,165 ¹	19,443
20X2	21,450 ¹	16,505
20X3	$20,550^{1}$	13,871
20X4	$24,725^{1,2}$	14,639
20X5	25,325 ^{1,3}	13,153
20X6	$24,825^{1,3}$	11,310
20X7	24,123 ^{1,3}	9,640
20X8	25,533 ^{1,3}	8,951
20X9	$24,234^{1,3}$	7,452
20X10	22,850 ^{1,3}	6,164
사용가치		121,128

- 1 현재 상태의 기계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정원가를 포함한다.
- 2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기계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추정원가는 제외한다.
- 3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기계의 성능 향상에서 예상되는 추정 효익은 제외한다.

IE58 기계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이 그 장부금액보다 적다. 따라서 기계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표 2> 20X0년 말 손상차손 계산

	기계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	150,000
회수가능액(표 1)	121,128
손상차손	(28,872)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	121,128

20X1년~20X3년

IE59 기계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추정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기계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다.

20X4년 말

IE60 기계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원가가 들었다. 따라서 기계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기계의 성능 향상에서 예상되는 미래 효익을 현금흐름 예측에 고려한다. 이것은 20X0년 말에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하였던 추정 미래현금흐름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 기준서 문단 110과 111에 따라 20X4년 말에 기계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계산한다.

<표 3> 20X4년 말 기계의 사용가치 계산

연도	미래현금호름 ⁽¹⁾	할인된 현금흐름 (할인율 14%)
20X5	30,321	26,597
20X6	32,750	25,200
20X7	31,721	21,411
20X8	31,950	18,917
20X9	33,100	17,191
20X10	27,999	12,756
사용가치		122,072

- (1)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기계의 성능 향상에서 예상되는 추정 효익을 포함한다.
- IE61 기계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이 장부금액과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 가보다 더 많다(<표 4> 참조). 따라서 20X0년 말에 기계에 대해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그 기계의 장부금액이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가 되도록 한다.

<표4> 20X4년 말 손상차손환입 계산

(단위: 원)

	기계
20X0년 말 장부금액(표 2)	121,128
20X4년 말	
감가상각액(20X1년부터 20X4년까지: 표 5)	(48,452)
기계의 성능 향상 원가	25,000
손상차손환입 전 장부금액	97,676
회수가능액(표 3)	122,072
손상차손환입액	17,324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	115,000
장부금액: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표 5)	115,000 ⁽¹⁾

(1) 기계의 사용가치는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경우의 금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환입금액은 기계의 장부금액이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

<표 5> 기계의 장부금액

(단위: 원)

	フレット メレット お		フィカ		손상차손
연도	감가상각 후	회수가능액	조정후	<i>(손상차손)</i>	인식 후
	역사적원가		감가상각액		장부금액
20X0	150,000	121,128	0	(28,872)	121,128
20X1	135,000	계산 불필요	(12,113)	0	109,015
20X2	120,000	계산 불필요	(12,113)	0	96,902
20X3	105,000	계산 불필요	(12,113)	0	84,789
20X4	90,000		(12,113)		
향상원가	25,000		-		
	115,000	122,072	(12,113)	17,324	115,000
20X5	95,833	계산 불필요	(19,167)	0	95,833

계산 불필요: 손상차손의 증가나 감소 징후가 없으므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례 7A.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비례지분으로 최초에 측정된 비지배지분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

- IE62 지배기업은 20X3년 1월 1일에 종속기업의 지분 80%를 2,1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500원이다.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종속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지분 300원(1,500원의 20%)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하였다. 영업권 900원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2,100원+300원)와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1,500원)의 차액이다.
- IE63 종속기업의 자산집단은 연결실체의 다른 자산들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집단이다. 따라서 종속기업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이다. 지배기업의 다른 현금창출단위가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와 관련된 영업권 500원은 지배기업 내 다른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었다. 종속기업을 구성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해야 하고, 손상 장후가 있다면 그보다 더 자주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90 참조).
- IE64 20X3년 말에 현금창출단위인 종속기업의 회수가능액은 1,000원으로 산정한다. 영업권을 제외한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350원이다.

종속기업(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IE65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이 종속기업의 회수가능액 1,000원에는 포함되지만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인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준서 부록 C의 문단 C4에 따라, 회수가능액 1,000원과 비교하기 전에 종속기업의 장부금액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영업권 금액만큼 가산하여 조정한다.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80% 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은 지배기업 내 다른 현금창출단위에 500원을 배분하고 남은 400원이다. 따라서 취득일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 20%에 귀속되는 영업권은 100원이다.

<표 1> 20X3년 말 종속기업의 손상검사

(단위: 원)

		(인기: 전)
종속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합계
<i>영업권</i>	<i>순자산</i>	
400	1,350	1,750
100		100
500	1,350	1,850
		1,000
		850
	<i>영업권</i> 400 100	영업권 순자산 400 1,350 100 -

손상차손 배분

IE66

이 기준서 문단 104에 따라 손상차손 850원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자산들에 배분하는데 우선 영업권의 장부금액부터 감액한다.

IE67 따라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850원 중 500원을 영업권에 배분한다. 이 기준서 부록 C의 문단 C6에 따라, 부분 소유 종속기업이 그 자체로서 현금창출단위가 된다면, 당기손익을 배분할 때와같은 기준에 따라 영업권 손상차손을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에배분한다. 이 사례에서 당기손익은 상대적 소유지분에 따라 배분된다. 영업권은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80%에 상당하는 정도로만 인식되므로 영업권 손상차손의 80%(400원)만 인식한다.

IE68 나머지 손상차손 350원은 종속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하면서 인식한다(<표 2> 참조).

<표 2> 20X3년 말 종속기업에 대한 손상차손의 배분

(단위: 원)

20X3년 말	영업권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합계
장부금액	400	1,350	1,750
손상차손	(400)	(350)	(750)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	-	1,000	1,000

사례 7B. 비지배지분이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관련 종속기업이 독립적인 현금창출단위인 경우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

IE68A 지배기업은 20X3년 1월 1일에 종속기업의 지분 80%를 2,1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공 정가치는 1,500원이다.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인 350

원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하였다. 영업권 950원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액(2,100원+350원)과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1,500원)의 차액이다.

IE68B 종속기업의 자산집단은 연결실체의 다른 자산들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집단이다. 따라서 종속기업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이다. 지배기업의 다른 현금창출단위가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너지 효과에 관련된 영업권 500원은 지배기업 내 다른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었다. 종속기업의 장부금액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해야 하고, 손상 징후가 있다면 그보다 더 자주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90 참조).

종속기업의 손상검사

IE68C 20X3년 말에 지배기업은 현금창출단위인 종속기업의 회수가능액을 1,650원으로 산정하였다. 영업권을 제외한 종속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은 1,350원이다.

<표 1> 20X3년 말 종속기업의 손상검사

			(한테, 현)
20X3년 말	영업권	식별할 수 있는 	<i>합계</i>
장부금액	450	1,350	1,800
회수가능액			1,650
손상차손			150

(다의 위)

손상차손 배분

IE68D 이 기준서 문단 104에 따라, 손상차손 150원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자산들에 배분하는데 우선 영업권의 장부금액부터 감액한다.

IE68E 따라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150원 전액을 영업권에 배분한다. 이 기준서 부록 C의 문단 C6에 따라 부분 소유 종속기업이그 자체로서 현금창출단위가 된다면, 당기손익을 배분할 때와 같은 기준에 따라 영업권 손상차손을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한다.

사례 7C. 비지배지분이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관련 종속기업이 그보다 더 큰 현금창출단위의 일부인 경우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

IE68F 사례 7B의 문단 IE68A에서 기술한 사업결합에서 종속기업의 자산이 지배기업의 다른 자산들이나 자산집단과 함께 현금유입을 창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결과로 종속기업은 손상검사 목적상 그자체로서 현금창출단위가 되지는 못하고 그보다 더 큰 현금창출단위인 Z의 일부가 된다. 지배기업의 다른 현금창출단위도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시너지 효과에 관련된 영업권 500원은 다른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었다. Z의 종전 사업결합과 관련된 영업권은 800원이다.

IE68G Z의 장부금액에는 종속기업과 종전 사업결합에서 생긴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고, 손상 징후 가 있다면 그보다 더 자주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90 참조).

종속기업의 손상검사

IE68H 20X3년 말에 지배기업은 현금창출단위 Z의 회수가능액을 3,300원으로 산정한다. 영업권을 제외한 Z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250원이다.

<표 3> 20X3년 말 Z의 손상검사

			(단위: 원)
20X3년 말	<i>영업권</i>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i>합계</i>
장부금액	1,250	2,250	3,500
회수가능액			3,300
손상차손			200

손상차손 배분

IE68I 이 기준서 문단 104에 따라, 손상차손 200원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자산들에 배분하는데 우선 영업권의 장부금액부터 감액한다. 따라서 현금창출단위 Z의 손상차손 200원 전액을 영업권에 배분한다.이 기준서 부록 C의 문단 C7에 따라, 부분 소유 종속기업이 그보다 더 큰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영업권 손상차손을 현금창출단위 Z의 각 부분에 먼저 배분한 다음에 부분 소유 종속기업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한다.

IE68J 지배기업은 손상되기 전 각 부분의 영업권의 상대적 장부가치에 따라 손상차손을 현금창출단위의 각 부분에 배분한다. 이 사례에서 종속기업에는 손상차손의 36%(450원/1,250원)를 배분한다. 이 손상차손 금액은 다시 당기손익을 배분할 때와 같은 기준에 따라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한다.

사례 8. 공동자산의 배분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

- IE69 기업 M은 3개의 현금창출단위 A, B, C를 보유하고 있다. 현금창출단위 A, B, C의 장부금액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M 이 영업하는 기술적 환경에 불리한 변화가 있다. 따라서 M은 각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한다. 20X0년 말에 A, B, C의 장부금액은 각각 100원, 150원, 200원이다.
- IE70 영업은 본사 차원에서 한다. 본사 자산의 장부금액은 200원인데, 이 가운데 본사 건물의 장부금액이 150원이며 나머지 50원은 연구소의 장부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들의 상대적인 장부금액은 본사 건물이 각 현금창출단위에 이바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합리적인 기준이다. 연구소의 장부금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없다.
- IE71 현금창출단위 A의 남은 추정 내용연수는 10년이고, B, C, 본사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는 20년이다. 본사 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 각한다.
- IE72 각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 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은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사용 가치는 15%의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공동자산의 식별

IE73 이 기준서 문단 102에 따라, M은 먼저 검토 대상인 개별 현금창 출단위와 관련된 모든 공동자산을 식별한다. 공동자산은 본사 건

물과 연구소이다.

IE74 그 다음에 각 공동자산을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한다.

- (1) 본사 건물의 장부금액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검사 대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있다.
- (2) 연구소의 장부금액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검사 대상인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없다.

공동자산의 배분

IE75 본사 건물의 장부금액을 각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배분한다. 현금창출단위 B와 C의 경우에 추정되는 남은 내용연수가 20년인 반면, 현금창출단위 A의 추정되는 남은 내용연수는 10년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사용하여 배분한다.

<표 1> 본사 건물 장부금액의 가중 배분액 계산

(단위: 원)

20X0년 말	A	В	С	합계
장부금액	100	150	200	450
내용연수	10년	20년	20년	
내용연수에 기초한 가중치	1	2	2	
가중치 부여 후 장부금액	100	300	400	800
본사 건물 배분 비율	12%	38%	50%	100%
	(100/800)	(300/800)	(400/800)	
건물 장부금액의 배분액				
(위 비율에 기초함)	19	56	75	150
장부금액(본사 건물 배분 후)	119	206	275	600

회수가능액의 산정과 손상차손의 계산

IE76 이 기준서 문단 102에서는 우선 개별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을 그 장부금액(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본사 건물의 장부금액 포함)과 비교하고 손상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준서 문단 102에서는 그 다음에 M 전체(연구소가 포함된 최소의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M 전체의 장부금액(본사 건물 및 연구소의 장부금액 포함)과 비교하도록 요구한다.

<표2> 20X0년 말 A, B, C, M의 사용가치 계산

	A		_	3		C		А
<i>연</i> 도	미래현금 흐름	할인된 현금흐름 <i>(15%)</i>	미래현금 흐름	할인된 현금흐름 (15%)	미래현금 흐름	할인된 현금흐름 <i>(15%)</i>	미래현금 흐름	할인된 현금흐름 (15%)
1	18	16	9	8	10	9	39	34
2	31	23	16	12	20	15	72	54
3	37	24	24	16	34	22	105	69
4	42	24	29	17	44	25	128	73
5	47	24	32	16	51	25	143	71
6	52	22	33	14	56	24	155	67
7	55	21	34	13	60	22	162	61
8	55	18	35	11	63	21	166	54
9	53	15	35	10	65	18	167	48
10	48	12	35	9	66	16	169	42
11			36	8	66	14	132	28
12			35	7	66	12	131	25
13			35	6	66	11	131	21
14			33	5	65	9	128	18
15			30	4	62	8	122	15
16			26	3	60	6	115	12
17			22	2	57	5	108	10

	A		В		С		M	
<i>연</i> 도	미래현금 호름	할인된 현금호름 (15%)	미래현금 흐름	할인된 현금호름 (15%)	미래현금 흐름	할인된 현금호름 (15%)	미래현금 흐름	할인된 현금호름 (15%)
18			18	1	51	4	97	8
19			14	1	43	3	85	6
20			10	1	35	2	71	4
시	용가치	199		164		271		720 ⁽¹⁾

(1) 연구소는 기업 전체에 대해 추가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각 개별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합계는 사업 전체의 사용가치보다 적다. 이러한 추가 현금흐름이 본사 건물에 기인하지는 않는다.

<표 3> A, B, C에 대한 손상검사

(단위: 원)

20X0년 말	A	В	С
장부금액	119	206	275
(건물 배분 후)(표 1)			
회수가능액(표 2)	199	164	271
손상차손	0	(42)	(4)

IE77 다음 단계는 손상차손을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된 자산과 본사 건물에 배분하는 것이다.

<표 4> 현금창출단위 B와 C에 손상차손 배분

현금창출단위	В	С
본사 건물에 배분하는 금액 현금창출단위 내에 포함	$(12)(42 \times^{56}/_{206})$	$(1)(4^{\times 75}/_{275})$
된 자산에 배분하는 금액	$(30)(42 \times ^{150}/_{206})$	$(3)(4\times^{200}/_{275})$
합 계	(42)	(4)

IE78 연구소의 장부금액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현금창출단 위 A, B, C에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소 장부금액이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M 전체)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한다.

<표 5> 연구소의 장부금액을 배분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 집단(M 전체)에 대한 손상검사

(단위: 원)

20X0년 말	A	В	С	건물	연구소	M
장부금액	100	150	200	150	50	650
검사의 1단계에서 판명된 손상차손	-	(30)	(3)	(13)	-	(46)
검사의 1단계 후 장부금액	100	120	197	137	50	604
회수가능액(표 2)						720
'더 큰'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ı

IE79 따라서 M 전체에 대한 손상검사에서는 추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현금창출단위 A, B, C에 대한 손상검사 1단계의 결과인 손상차손 46원만을 인식한다.

사례 9.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 창출단위에 대한 공시

다음 사례의 목적은 이 기준서 문단 134와 135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예시하는 것이다.

배경

IE80 기업 M은 다국적 제조회사이며 부문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지역부문을 사용한다. M의 3개 보고부문은 유럽, 북미, 아시아이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3개의 개별 현금창출단위(유럽 2개: A와 B, 북미 1개: C)와 아시아에 있는 1개의 현금창출단위집단(영업 XYZ로 구성)에 각각 배분되었다. 현금창출단위 A, B, C와 영업 XYZ는 내부관리 목적으로 영업권이 관찰되는 최저 수준을 나타낸다.

IE81 M은 20X2년 12월에 북미에 있는 제조영업 C를 취득하였다. M의다른 북미의 영업과는 달리, C는 고이윤·고성장 산업에 속해 있으며 주제품에 대해 10년간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특허권은 M이 C를 인수하기 직전에 C에 부여된 것이다. C의 인수에 대한 회계처리의 일부로 M은 특허권 외에 영업권 3,000원과 브랜드명 1,000원도 인식하였다. M의 경영진은 취득한 브랜드명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M은 브랜드명 외에 내용연수가비한정인 그 밖의 무형자산은 없다.

IE82 현금창출단위 A, B, C, 영업 XYZ에 배분된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영업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A	350	-
В	450	-
С	3,000	1,000
XYZ	1,200	-
합계	5,000	1,000

IE83 20X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M은 영업권이나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 어디에도 손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현금창출단위와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은 사용가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M은 회수가능액 계산이 다음 가정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고 판단하였다.

현금창출단위 A, B	현금창출단위 C	영업 XYZ
예산 기간의 매출총이익률 (예산 기간=4년)	예산 기간의 5년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 (예산 기간=5년)	예산 기간의 매출총이익률 (예산 기간=5년)
예산 기간의 원재료 가격 상승률	예산 기간의 원재료 가격 상승률	예산 기간의 일본 엔화 대 미국 달러화 환율
예산 기간의 시장점유율	예산 기간의 시장점유율	예산 기간의 시장점유율
예산 기간을 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장률	예산 기간을 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장률	예산 기간을 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장률

IE84 현금창출단위 A와 B, 영업 XYZ의 예산 기간의 매출총이익률은 예산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의 회계연도에 달성된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하여 추정하되, 예상되는 효율 개선의 결과로 매년 매출총이 익률이 5%씩 오를 것으로 가정한다. A와 B는 상호 보완적인 제

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M은 같은 매출총이익률을 달성하도록 A 와 B를 운영하고 있다.

- IE85 예산 기간의 시장점유율은 예산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의 회계연 도에 달성한 시장점유율(각 연도의 시장점유율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함)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M은 다음과 같이 예 상한다.
 - (1) A와 B의 시장점유율은 서로 다르겠지만 지속적인 품질 개선 의 결과로 예산 기간에 매년 3%씩 오를 것이다.
 - (2) C의 시장점유율은 광고비 지출 증가와 주제품에 대한 10년간 특허권 보호에서 생기는 효익으로 예산 기간에 매년 6%씩 오 를 것이다.
 - (3) XYZ의 시장점유율은 예산 기간에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품질이 개선되는 반면에 경쟁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IE86 A와 B는 유럽에 있는 같은 공급업체에서 원재료를 구매하는 반면, C는 북미의 여러 공급업체에서 원재료를 구매한다. M은 예산기간의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유럽과 북미 국가의 관련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예상 소비자물가지수와 일치할 것으로 추정한다.
- IE87 M은 예산 기간의 5년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이 예산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의 그러한 국채수익률과 일치할 것으로 추정한다. M은 일본 엔화 대 미국 달러화 환율을 예산 기간에 대한 평균 시장선도환율과 일치할 것으로 추정한다.
- IE88 M은 예산 기간 후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일정한 성장률을 사용한다. M은 A, B, XYZ의 성장률은 A, B, XYZ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에 관한 공개된 정보와 일치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C의 성장률은 C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

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을 초과한다. M의 경영진은 C의 주제품에 10년간 특허권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IE89 M은 20X3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주석에 다음 공시를 포함한다.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3개의 현금창출단위(유럽 2개: A와 B, 북미 1개: C)와 아시아에 있는 1개의 현금창출단위집단(영업 XYZ로 구성)에 각각 배분되었습니다. 현금창출단위 C와 영업 XYZ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영업권의 총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이지만, 현금창출단위 A와 B 각각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총 장부금액과 비교하면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창출단위 A와 B의 회수가능액은 같은 주요 가정의 일부에 근거하는데, A와 B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합한 금액은 유의적입니다.

영업 XYZ

영업 XYZ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경영진이 승인한 5년을 추정 대상 기간으로 하는 재무예산에 기초한 현금흐름 추정과 8.4%의 할인율을 사용하였습니다. 5년을 넘는 기간의 현금흐름은 6.3%의고정 성장률을 일관되게 사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은 XYZ가 영업을 하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XYZ의 회수가능액이 기초한 주요 가정치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변동되더라도 XYZ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금창출단위 C

현금창출단위 C의 회수가능액도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경영진이 승인하고 5년을 추정 대상 기간으로 하는 재무예산에 기초한 현금흐름 추정과 9.2%의 할인율을 사용하였습니다. 5년을 넘는 기간의 현금흐름은 12%의 고정 성장률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 성장률은 C가 영업을 하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을 4%포인트만큼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C는 주제품에 대해 20X2년 12월에 부여된 10년간의 특허권 보호에서 효익을 얻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그 특허권의 효익을 고려할 때 12%의 성장률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경영진은 현금창출단위 C의 회수가능액이 기초한 주요 가정치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변동되더라도 C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금창출단위 A와 B

현금창출단위 A와 B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 A와 B는 상호 보완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A와 B의 회수가능액은 서로 같은 주요 가정의 일부에 기초합니다. 둘 다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경영진이 승 인한 4년을 추정 대상 기간으로 하는 재무예산에 기초한 현금호 름 추정과 7.9%의 할인율을 사용하였습니다. 4년을 초과하는 기간 의 현금흐름은 모두 5%의 고정 성장률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습니 다. 이 성장률은 A와 B가 영업을 하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 A와 B의 예산 기간의 현금흐름 추정은 예 산 기간에 같은 예상 매출총이익률과 원재료가격 상승률에 기초 하였습니다. 경영진은 A와 B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주요 가정치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변동되더라도 A와 B의 장부금액 합계가 회수가능액 합계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위: 원)

	영업 XYZ	현금창출단위 C	현금창출단위 A와 B(합계)
영업권 장부금액	1,200	3,000	800
내용연수가 비한 정인 브랜드명의 장부금액		1,000	-
사용가치 계산에	사용한 주요 가정(1)	
• 주요 가정	• 예산 매출총이 익률	• 5년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	
• 주요 가정치 를 결정하는 기준	시작되기 직	시작되는 시 점의 5년 만 기 미국 국채 수익률	시작되기 직 전의 회계연
	효율 개선을 제 외 하 고 는 과거 경험치 를 반영함. 경 영진은 매년 5%의 개선은 상당히 달성 가 능 하 다 고 판단함.		효율 개선을 제 외 하 고 는 과거 경험치 를 반영함. 경 영진은 매년 5%의 개선은 상당히 달성 가 능 하 다 고 판단함.
• 주요 가정	예산 기간동안의 일본 엔화 대 미국달러 환율	원재료 가격 상승률	• 원재료 가격 상승률
주요 가정치 를 결정하는 기준	예산 기간에 대한 평균 시 장선도환율	원재료 구매 처인 북미국 가의 예산 기	처인 유럽국

	영업 XYZ	현금창출단위 C	현금창출단위 A와 B(합계)
		간동안의 예 상 소비자물 가지수	
	는 외부정보	주요 가정치 는 외부정보 원천과 일치 함.	는 외부정보
• 주요 가정	• 예산 시장점 유율	• 예산 시장점 유율	υ.
	예산 기간이 시작되기 직 전의 회계연 도의 시장점 유율	시작되기 직 전 회계연도	
	는 과거 경험 치를 반영함. 지 속 적 으 로 품질이 개선 되는 반면에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되기	품에 대한 특 허권(10년간 보호), 그리고 M의 북미부 문의 일부인 현금창출단위 전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 되는 시너지 효과로 시장	

(1) 이 표에서 제시하는 현금창출단위 A와 B에 대한 주요 가정은 두 현금 창출 단위 모두의 회수가능액 계산에 사용된 가정들만임.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에 갈음하고자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AS 36 '자산손상(Impairment of Assets)'의 결론도출근거

	문단번호
도입	BC1~BC3
적용범위(문단 2)	BCZ4~BCZ8
회수가능액의 측정(문단 18~57)	BCZ9~BCZ30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의 합계액에 기초한	
회수가능액	BCZ12~BCZ13
공정가치에 기초한 회수가능액	BCZ14~BCZ20
사용가치에 기초한 회수가능액	BCZ21~BCZ22
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 중 많은 금액에 기초한	
회수가능액1)	BCZ23~BCZ27
처분예정자산	BCZ27
회수가능액의 측정에 관련된 그 밖의 세부 사항	BCZ28~BCZ30
상한으로서의 대체원가	BCZ28~BCZ29
감정가치	BCZ30
순매각가격(문단 25~29)	BCZ31~BCZ39
순실현가능가치	BCZ37~BCZ39
사용가치(문단 30~57과 부록 A)	BCZ40~BC80
기댓값 접근법	BCZ41~BCZ42
내부창출영업권에서 창출되거나 다른 자산과의	
시너지로 창출되는 미래현금흐름	BCZ43~BCZ45
외화로 추정하는 사용가치(문단 54)	BCZ46~BCZ51
할인율(문단 55~57과 A15~A21)	BCZ52~BCZ55
2004년 기준서에 포함된 추가 지침	BC56~BC80
사용가치에 반영하는 요소(문단 30~32)	BC56~BC61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문단 33, 34, 44)	BC62~BC75
사용가치 측정에 현재가치기법의 사용(문단 A1~A14)	BC76~BC80

결론도출근거 목차

법인세 BCZ81~BC94 미래법인세현금흐름에 대한 고려 BCZ81~BCZ84 세전 할인율의 산정 BCZ85 IAS 12와의 상호작용 BC786~BC789 2002년 12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와 현장 방문 참여자의 검토의견 BC90~BC94 손상차손의 인식(문단 58~64) BCZ95~BCZ112 '영구적' 기준에 기초한 인식 BCZ96~BCZ97 '발생 가능성' 기준에 기초한 인식 BCZ98~BCZ104 할인되지 않은 미래현금흐름 합계액(이자원가 제외) BCZ99~BCZ102 IAS 10(1994년 재구성)에 기초한 발생 가능성 기준 BCZ103~BCZ104 '경제적' 기준에 기초한 인식 BCZ105~BCZ107 재평가자산: 손익계산서에 인식 대 자본에 직접 인식 BCZ108~BCZ112 현금창출단위(문단 66~73) BCZ113~BC118 내부 이전가격 결정(문단 70) BC116~BC118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검사 BC119~BC130 손상검사의 빈도 및 시기(문단 9와 10(1)) BC121~BC128 회수가능액 계산 결과의 이월(문단 24) BC127~BC128 회수가능액의 측정과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 BC129~BC130 영업권의 손상검사(문단 80~99) BC131A~BC177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문단 80~87) BC137~BC159 영업권 최초 배분의 완료(문단 84와 85) BC151~BC152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일부 처분(문단 86) BC153~BC156 보고 구조의 변경(문단 87) BC157~BC159 손상차손의 인식 및 측정(문단 88~99, 104) BC160~BC170 공개초안 제안의 배경 BC160~BC164 IASB의 재심의 BC165~BC170 2008년 IFRS 3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부록 C) BC170A 손상검사의 시기(문단 96~99) BC171~BC177

결론도출근거 목차

손상검사의 순서(문단 97)	BC174~BC175
회수가능액 계산 결과의 이월(문단 99)	BC176~BC177
현금창출단위의 자산에 손상차손 배분(문단 104~107)	BCZ178~BCZ181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문단 110~123)	BCZ182~BCZ186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문단 124)	BC187~BC191
영업권이나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시(문단 134와 135)	BC192~BC209
공개초안 제안의 배경	BC192~BC204
후속 현금흐름 검증	BC195~BC198
개정 기준서에 포함된 공시 요구사항	BC199~BC204
IASB의 재심의	BC205~BC209
2008년도 <i>IFRS 연차 개선</i> 에 따른 변경 사항	BC209A
2008년도 <i>IFRS 연차 개선</i> 에 따른 변경 사항 IFRS 13에 따른 변경 사항	BC209A BC209B~BC209D
IFRS 13에 따른 변경 사항	BC209B~BC209D
IFRS 13에 따른 변경 사항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BC209B~BC209D BC209E
IFRS 13에 따른 변경 사항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경과 규정	BC209B~BC209D BC209E BC210~BC228C
IFRS 13에 따른 변경 사항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경과 규정 영업권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BC209B~BC209D BC209E BC210~BC228C BC216~BC222
IFRS 13에 따른 변경 사항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경과 규정 영업권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BC209B~BC209D BC209E BC210~BC228C BC216~BC222 BC223~BC226
IFRS 13에 따른 변경 사항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경과 규정 영업권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조기 적용	BC209B~BC209D BC209E BC210~BC228C BC216~BC222 BC223~BC226 BC227~BC228
IFRS 13에 따른 변경 사항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경과 규정 영업권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조기 적용 IFRS 연차 개선(2009)에 대한 경과 규정	BC209B~BC209D BC209E BC210~BC228C BC216~BC222 BC223~BC226 BC227~BC228 BC228A
IFRS 13에 따른 변경 사항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경과 규정 영업권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조기 적용 IFRS 연차 개선(2009)에 대한 경과 규정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에 대한 경과 규정	BC209B~BC209D BC209E BC210~BC228C BC216~BC222 BC223~BC226 BC227~BC228 BC228A BC228B~BC228C

IAS 36에 대한 소수의견

^{1)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5호(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하었다.

IAS 36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Framework	Conceptual Framework	개념체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for Financial Reporting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제1103호	사업결합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for Sale and Discontinued		중단영업
	Operations		
IFRS 8	Operating Segments	제1108호	영업부문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Statements		
IAS 2	Inventories	제1002호	재고자산
IAS 8	Accounting Policie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
	Changes in Accounting		경 및 오류
	Estimates and Errors		
IAS 10	Events after the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Reporting Period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제1011호	건설계약
IAS 12	Income Taxes	제1012호	법인세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AS 16	Property, Plant and	제1016호	 유형자산
	Equipment		
IAS 19	Employee Benefits	제1019호	종업원급여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in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Foreign Exchange Rates		
IAS 27	Separate Financial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Statements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Hyperinflationary		의 재무보고
	Economies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Presentation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
	Liabilities and Contingent		발자산
	Assets		
IAS 38	Intangible Assets	제1038호	무형자산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Recognition and		
	Measurement		

IAS 36 '자산손상(Impairment of Asset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36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IASB는 사업결합 과제의 일부로 IAS 36을 개정하였다. 그 과제의 일부로 IAS 36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시 고려하는 것은 IASB의 의도가 아니었다.

개정 전 IAS 36에는 IASC가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려한 사항들을 요약한 결론도출근거가 포함되었다. 편의상, IASB는 (1) IASB가 다시 고려하지 않은 사안과 (2) 자산손상 기준서의 변천사를 다룬 개정 전 결론도출근거 자료를 이번 결론도출근거에 포함하였다. 그 자료는 BCZ라는 접두사로 표시된 문단에 포함되어 있다. IASB가 독자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려한 사항을 기술한 문단은 접두사 BC로 문단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이 결론도출근거의 용어는 IAS 1(2007년 전부 개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 하여 수정하지는 않았다.

2011년 5월에 발표한 IFRS 13을 개발하면서 IASB는 순공정가치의 정의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 '순공정가치'로 언급한 것은 모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대체하였다. 이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이 결론도출근거를 수정하지는 않았다.

도입

BC1 IASB(또는 IASC)가 IAS 36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또는 IAS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BC2 IASC는 1998년에 개정 전 IAS 36을 공표하였다. 이는 사업결합 과제의 일부로 IASB가 개정하였다. 이 과제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의 결과로 IASB는 2004년에 IFRS 3의 제정과 IAS 38 및 IAS 36의 개정을 동시에 공표하였다. 그 과제의첫 번째 단계의 일부로서 IAS 36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시 고려하는 것은 IASB의 개정 의도가 아니었다. IAS 36의 개정은 주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하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이라한다)과 영업권의 손상검사에 관련되어 있었다. IASB는 사업결합과제의 두 번째 단계로서 2008년에 IFRS 3의 전부 개정과 IAS 27의 개정을 동시에 공표하였다. IASB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측정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IAS 36을 개정하였다(문단 BC170A 참조). IASB는 IAS 36에 있는 그 밖의 요구사항은 심의하지 않았다. 그 요구사항은 IASB가 나중에 자산손상 과제의일부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BC3 개정 전 IAS 36에는 IASC가 일부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려한 사항들을 요약한 결론도출근거가 포함되었다. 편의상, IASB는 IASB가 다시 고려하지 않은 사안을 다룬 개정 전 결론도출근거자료를 이번 결론도출근거에 포함하였다. 이 자료는 BCZ라는 접두사로 표시된 문단에 제시된 견해는 IASC의 견해이다.

적용범위(문단 2)

BCZ4 IAS 2에서는 재고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IASC는 이 요구사항이 재고자산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IAS 2와 IAS 36에 포함된 요구사항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없다(문단 BCZ37~BCZ39 참조).

²⁾ IAS 27의 연결 규정은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0으로 대체되었다.

BCZ5 IAS 11³)과 IAS 12에서는 각각 건설계약에서 생기는 자산의 손상 과 이연법인세자산의 손상을 이미 다루고 있다. IAS 11과 IAS 12 모두 회수가능액은 사실상 할인되지 않은 기준으로 산정한다. IASC는 이 요구사항이 IAS 36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C는 IAS 11과 IAS 12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IASC는 IAS 11이나 IAS 12를 개정할 어떠한 계획도 없었다.

BCZ6 IAS 19에는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IAS 36에서는 그러한 자산의 손상을 다루지 아니한다. IAS 19의 한도는 IAS 36의 요구사항과 대체로 양립할 수 있는 할인기준으로 산정된다.4)

BCZ7 IAS 395)에서는 금융자산의 손상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BCZ8 IAS 36은 특별히 배제되지 않는다면 유동성/비유동성 분류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에 적용할 수 있다. IAS 36이 공표되기 전에는, 재고자산을 제외하고는 유동자산의 손상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회수가능액의 측정(문단 18~57)

BCZ9 회수가능액 측정원칙을 결정하면서, IASC는 그 첫 단계로 기업이 자산의 손상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C는 이러한 경우에 기업이 자산을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

^{3)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IAS 11을 대체하였다. IFRS 15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일부 자산의 손상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IFRS 15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IAS 36 문단 2를 개정하였다.

^{4) 2011}년에 IAS 19를 개정하였을 때 삭제한 문장

⁵⁾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업은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 (1) 자산을 영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보다 매각하는 경우에 더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면, 자산을 매각한다.
- (2)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비록 당초 예상에는 못 미쳐도 다음 중하나 이상의 이유 때문에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사용한다.
 - (개) 자산을 곧바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 (내) 자산을 저가로만 매각할 수 있다.
 - (다) 자산의 용역잠재력을 여전히 회수할 수 있지만, 추가 노력 이나 지출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 (라) 비록 당초 예상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자산에는 수익성 이 있다.

IASC는 합리적인 기업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자산에서 예상되는 추정 순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한 투자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Z10 IASC는 자산의 회수가능액 산정에 관한 다음 네 가지 대안 중 어느 것이 위의 결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 (1) 회수가능액은 할인되지 않은 미래현금흐름의 합계액으로 한다.
- (2)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회수가능액은 주로 자산의 시장가치에서 이끌어 내야 한다. 시장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면, 회수가능액은 시장가치의 대용치로서 그 자산의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6)
- (3)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사용가치로 한다.
- (4)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 으로 한다.7)

각 대안에 관한 논의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6)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시장가치 (market value)'라는 용어를 '공정가치(fair value)'로 변경하였다.

^{7)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하였다.

- BCZ11 공정가치, 순매각가격, 사용가치는 모두 자산에서 예상되는 추정 순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현재가치 계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공정가치이에는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반영되어 있다.
 - (2) 순매각가격에는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시장의 예상에서 자산을 처분하는 데 드는 직접 증분원 가를 뺀 금액이 반영되어 있다.
 - (3) 사용가치는 자산의 계속 사용과 처분에서 생기는 미래현금호름의 현재가치에 대해 기업이 추정하는 금액이다.
 - 이 기준은 모두 자산에서 얻게 되는 실제 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가 추정과 다를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공정가치와 순매각가격은 사용가치와 다를 수 있다. 시장에서는 개별기업과 같은 가정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의 합계액에 기초한 회수가능액

- BCZ12 회수가능액을 자산에서 생기는 할인되지 않은 미래현금흐름의 합계액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 역사적원가 회계는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과 무관 하다. 따라서 자산에서 회수될 금액을 추정할 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 (2) 다음에 관한 추가 연구와 논의 없이 할인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 (개) 재무제표에서 할인의 역할
 - (나) 자산의 일반적인 측정기준. 재무제표에 다양한 기준(역사적 원가, 할인금액, 그 밖의 기준)으로 계상된 자산이 있다면

^{8)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포함한다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 (3) 적절한 할인율을 산정하기가 종종 어렵고 주관적이다.
- (4) 할인하면 인식되는 손상차손 금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손상 차손환입에 관한 요구사항과 맞물려서 손익계산서에 변동성을 크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 경우에 이용자가 기업의 성과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다.

공개초안 제55호(E55) '자산손상(Impairment of Assets)'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소수가 이 관점을 지지하였다.

- BCZ13 IASC는 다음의 이유로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의 합계액에 기초 하여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 (1) 회수가능액 측정의 목적은 투자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화폐는 물가가 안정되어 있을 때에도 시간가치를 갖는다.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지 않는다면, 창출하는 현금흐름의 금액은 같지만 시기가 다른 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같아 보일 것이 다. 그러나 그 두 자산의 현행시장가치는 서로 다를 것이다. 모든 합리적인 경제적 거래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 기 때문이다.
 - (2) 재무제표에서 채택된 일반적인 측정기준이 무엇이든 간에,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 그 밖의 외부 재무제 표이용자, 경영진에게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측정치가 더 목적 적합하다.
 - (3) 많은 기업이 이미 할인기법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다. 특히 할 인기법은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 (4) 미래현금흐름의 예상에 기초하는 그 밖의 재무제표 항목(예: 장기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채무)에는 이미 할인이 요구되고 있다.
 - (5) 적어도 화폐의 시간가치만큼의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는 자산을 적시에 알아낼 수 있다면 이용자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정가치에 기초한 회수가능액

- BCZ14 국제회계기준 제32호(IAS 32) '금융상품: 공시와 표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와 그 밖의 여러 국제 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10)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 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 BCZ15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¹¹) 측정에 관하여 다음의 요구사항이나 지침을 포함한다.
 - (1) 유형자산 항목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목적상 IAS 16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시장가치이며, 그 시장가치는 보통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평가인이 산정한다. 시장이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정가치는 자산의 상각 후 대체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 (2) 무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목적상 IASC는 공개초안 제60호(E60)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에서,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의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E60에서는 활성시장의 정의를 제안하였다.12)
 - (3) IASC는 취득자가 미래에 자산을 사용하려는 의도에 관계없이 공정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제22호(IAS 22)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공개초안 제61호(E61)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 참조]의 전부 개정을 제안하였다.13)
 - (4) IAS 3914)에 따르면,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금융상품의

^{9) 2005}년에 IASB는 IAS 32를 개정하여 그 명칭을 '금융상품: 표시(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로 바꾸었다.

^{10)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를 유출가격으로 정의한다.

^{11)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IAS 16과 IAS 39의 관련 요구사항을 해당 기준서들에서 삭제하였다.

¹²⁾ IASC는 1998년에 무형자산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을 의결하였다.

¹³⁾ IASC는 1998년에 IAS 22의 전부 개정을 의결하였다.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한다.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이 비슷한 금융상품의 시장가치, 현금흐름 할인 분석, 옵션가격 결정모형과 같은 추정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 치를 산정한다.

- BCZ16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공정가치(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자산의 가격과 미래현금흐름 할인계산의 결과를 고려하여 추정한다)라는 일부 주장도 있다.15) 공정가치를 지지하는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목적은 시장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며, 기업특유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 치에 대한 기업의 추정치는 주관적이며, 경우에 따라 남용될 수 있다. 시장의 판단이 반영된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자산 에서 회수될 금액을 더 신뢰성 있게 나타내는 측정치이다. 그 러한 시장가격은 경영진이 판단할 여지를 줄인다.
 - (2) 자산이 어떤 기업에서 다른 참여자들에서보다 순현금유입을 더 많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월등한 수익은 거의 항상 사업과 경영진의 시너지 효과에서 비롯되는 내부창출영업권 때문에 창출되는 것이다. IASC가 E60에서 제안한 내용(내부창출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과 일치하도록, 그러한 시장 초과 현금흐름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할 때제외하여야 한다.
 - (3) 회수가능액을 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산 정하는 것은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때 하나의 측정치만 있어야 함에도 두 가지의 다른 측정치를 산정하는 것과 같다.

^{14) 2003}년 IAS 32와 IAS 39를 개정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IAS 32에서 IAS 39로 재배 치하였다. 그 이후에 IFRS 9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2011년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IASB의 프로젝트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IFRS 13에 재배치하였다.

^{15)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에서는 사용하는 (그리고 매각되지 않을)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가치평가 기법(예: 현행대체원가 가치평가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E55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소수가 회수가능액을 공정가치(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자산의 가격과 미래현금흐름 할인계산의 결과를 고려하여 추정한다)로 측정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 BCZ17 IASC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공정가치(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자산의 가격과 미래현금흐름 할인계산의 결과를 고려하여 추정한다)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IASC는 자산을 보유하는 개별 기업의 합리적 추정(시장가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의 공정가치에 대한 근거와 사용가치에 대한 근거)보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시장의 예상(시장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경우의 공정가치에 대한 근거와, 순매각가격에 대한 근거)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 기업은 시장의 관점에서 최선이라고 보는 용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사용하기로 계획할 수 있다.
 - (2) 시장가치가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는 거래의 양 당사자, 즉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거래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을 때에만 그렇다.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기보다는 계속 사용하여 현금흐름을 더 많이 창출할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합리적인 기업은 그 자산을 매각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에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두 당사자 사이의 거래만을 참조하면 안 되며, 기업의 자산 사용에서 나오는 그 자산의 용역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
 - (3) IASC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할 때 목적 적합한 정보는

기업이 자산에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금액(관련되는 다른 자산과의 시너지 효과 포함)이라고 보았다.

다음 두 사례에서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공정가치(관측 가능한 시장가치를 구할 수 있다면 주로 이에 기초한다)로 측정하여야 한 다는 제안(IASC는 채택하지 않음)을 예시한다.

사례 1

기업은 10년 전에 본사 건물을 2,000원에 매입하였다. 이후 부동산시장이 폭락하여 대차대조표일에 이 건물의 시장가치는 1,000원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해도 될 정도일 것이다. 대차대조표일에 건물의 장부금액은 1,500원이고남은 내용연수는 30년이다. 이 건물은 기업의 모든 예상에 부응하고 예측할 수 있는 미래기간에도 그 예상에 부응할 것으로보인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의 본사 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다. 이 건물은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은 건물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즉 기업 전체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한다. 계산 결과 건물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는 손상되지 않았다.

공정가치(관측 가능한 시장가치를 구할 수 있다면 우선 이에 기초한다)의 지지자들은 계산 결과 건물이 속하는 현금창출단 위가 손상되지 않았음에도 건물의 회수가능액을 그 시장가치인 1,000원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로 손상차손 500원(1,500원-1,000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IASC는 이 접근법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 건물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IASC는 위에 기술된 상황에서 기업이 건물을 1,000원에 매각할 의사가 없을 것이므로 매각을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겼다.

사례 2

20X0년 말에 기업은 영업에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100원에 구입하였다. 이 컴퓨터는 4년에 걸쳐 정액법 으로 감가상각한다. 잔존가치는 영(0)으로 추정된다. 20X2년 말 에 컴퓨터의 장부금액은 50원이다. 이 유형의 중고컴퓨터의 활 성시장이 있다. 이 컴퓨터의 시장가치는 30원이다. 기업은 내용 연수가 다하기 전에는 컴퓨터를 교체할 의도가 없다. 컴퓨터가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는 손상되지 않았다.

공정가치(관측 가능한 시장가치를 구할 수 있다면 우선 이에 기초한다)의 지지자들은 컴퓨터가 속하는 현금창출단위가 손상되지 않았음에도 컴퓨터의 회수가능액을 그 시장가치인 30원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로 손상차손 20원(50원-30원)을 인식하게될 것이다.

IASC는 이 접근법을 지지하지 않았고, 다음의 전제에서는 컴퓨터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1) 기업은 예상 내용연수가 다하기 전에 컴퓨터를 처분하기로 확약하지 않았다.
- (2) 컴퓨터가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는 손상되지 않았다.

BCZ18 IASC는 자산에 대해 거래 층이 두텁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가치가 공정가치의 합리적 추정치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IAS 36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많은 자산에서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즉 영업권, 대부분의 무형자산, 다수의유형자산 항목의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은 존재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IAS 36에 따라 산정하면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한 회수가능액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BCZ1916) IAS 36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일부 자산의 경우에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존재하거나 비슷한 자산의 가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자산의 순매각가격은 공정가치와 처분에 드는 직접 증분원가만큼만 차이가 난다. IASC는 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 중더 많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회수가능액이,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해도 될 정도임에도) 시장가격에 주로 기초하는 공정가치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BCZ17(1)에서설명하였듯이 시장에서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BCZ20 IASC는 IAS 36에 기업이 시장과 다른 부당한 가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만큼 충분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 면 기업이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항목을 사용하여야 한 다.
 - (1)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만한 가정에 기초하며 외부증거에 더 비중을 두어 예측한 현금흐름
 - (2)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

사용가치에 기초한 회수가능액

- BCZ21 다음의 이유로 사용가치만이 자산 회수가능액의 적절한 측정치라는 일부 주장도 있다.
 - (1)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처분을 전제로 하는 대체 측정 치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 (2) 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의 사용에서 얻어지는 용역잠재력보다 더 많아서는 안 된다. 사용가치와는 달리, 시장가치에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반드시 반영되지는 않는다.

E55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극소수가 이 견해를 지지하였다.

^{16)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의 목적과 시장참여자 가정의 사용에 대해 설명한다.

- BCZ22 IASC는 다음의 이유로 위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 (1) 자산의 순매각가격이 사용가치보다 더 많은 경우에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자산을 처분할 것이다. 이 경우에 경제적 현실과 무관한 손상차손이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순 매각가격에 기초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 (2) 자산의 순매각가격이 사용가치보다 많지만 경영진이 해당 자산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추가 손실(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의 차이)은 후속 기간에 적절히 반영된다. 그 추가 손실은 후속 기간에 경영진이 자산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하는 데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에 기초한 회수가능액17)

- BCZ23 회수가능액이 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에 합리적인 경영진이 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결정에서 나온 것이다. 더욱이 자산을 보유하는 개별 기업의 합리적 추정치(사용가치의 산정 근거)보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시장의 예상(순매각가격의 산정 근거)을 우선시하거나 그 반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문단BCZ17~BCZ20과 BCZ22 참조). 시장의 가정이나 기업의 가정 중무엇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는 단정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IAS 36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많은 자산의 완전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누가 예측하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완전히 정확할 것 같지는 않다.
- BCZ24 IASC는 손상차손 인식의 필요성을 결정할 때 기업이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 때문에 IAS 36에서는 기업이 회수가 능액을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추정할 위험을 제한하

^{17)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하였다.

- 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안전장치를 포함하였다.
- (1) IAS 36에서는 다음의 징후 중 하나가 있을 때마다 회수가능액을 정식으로 추정하도록 요구한다.
 - (개) 자산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
 - (나)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다. 이목적에서 IAS 36에는 비교적 상세한(비록 완전하게 망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손상 징후의 목록이 포함된다(이기준서 문단 12와 111 참조).
- (2) IAS 36에서는 경영진이 사용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미래현금흐름 예측 기준에 대해 지침을 제시한다(이 기준서 문단 33 참조).
- BCZ25 IASC는 먼저 산정된 금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순매각 가격과 사용가치 모두를 산정하도록 요구할 때 생길 원가를 고려하였다. IASC는 그러한 요구사항의 효익이 원가를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BCZ26 E55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과반수가 회수가능액을 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IASC의 관점을 지지하였다.

처분예정자산

BCZ27 IASC는 처분예정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순매각가격으로만 측정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기업이 가까운 장래에 자산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자산의 순매각가격은 보통 사용가치에 가깝다. 실제로 자산의 계속 사용에서 나오는 미래현금흐름이 영(0)에 가깝기 때문에 사용가치의 대부분이 자산에 대해 받을 순처분대가로 구성된다. 따라서 IASC는 추가 요구사항이나 지침을 마련할 필요없이, IAS 36에 있는 회수가능액의 정의가 처분예정자산의 경우에

도 적절하다고 보았다.

회수가능액의 측정에 관련된 그 밖의 세부 사항

상한으로서의 대체원가

- BCZ28 회수가능액의 상한으로 자산의 대체원가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사업상 자산의 가치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업이 자산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 BCZ29 IASC는 자산의 회수가능액 측정에 대체원가기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다. 대체원가는 자산의 원가를 측정하는 것일 뿐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에서 회수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감정가치

BCZ30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회수가능액의 외부 감정을 받을 수 있다. 외부 감정 자체가 별도의 측정기법은 아니다. IASC는 기업이 외 부 감정 가치를 사용한다면 그 외부 감정이 IAS 36의 요구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순매각가격(문단 25~29)18)

BCZ31 IAS 36에서는 순매각가격을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을 매각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에서 자산의 처분에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를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18)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하였다.

- BCZ32 다시 말하면, 순매각가격에는 자산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시장의 예상(화폐의 시간가치와 그러한 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시장의 고려가 포함된 것임)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반영되어 있다.
- BCZ33 자산의 매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에 드는 직접 증분 원가를 빼서는 안 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경영진이 자산을 처 분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계속기업 가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 문이다.
- BCZ34 IASC는 순매각가격을 산정할 때 처분에 드는 직접 증분원가를 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순매각가격을 산정하는 목적은 기업이 측정일에 자산을 매각하여 회수할 수 있는 순금액을 산정하여 자산을 계속 보유하여 사용하는 대안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BCZ35 IAS 36에 따르면 자산을 처분한 다음에 생기는 (IAS 19의 정의에 따른) 해고급여와 사업 축소 또는 재조정(reorganising)에 관련된 원가는 자산 처분에 드는 직접 증분원가가 아니다. IASC는 이 원가가 자산 처분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이 지침은 충당부채 과제19)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 BCZ36 '순매각가격'의 정의가 '순공정가치'의 정의와 비슷하지만 IASC는 '순공정가치' 대신에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C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가 기업이 산정해야 하고 자산의 사용가치와 비교될 금액을 더 잘 기술할 수 있다고 보았다.

¹⁹⁾ IASC는 1998년에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을 의결하였다.

순실현가능가치

- BCZ37 IAS 2에서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 판매비용을 빼 금액'
- BCZ38 IASC는 IAS 2에서 정의하는 '순실현가능가치'라는 용어를 회수가 능액의 산정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IAS 2에서는 순실현가능가치의 정의에서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 (2)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추정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 경영진이 즉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순매각가격에는 강제매각(forced sale)이 반영될 것이다.
 - (3) 순매각가격에서는 그 출발점으로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합의된 판매가격을 사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정의에서는 이 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 BCZ39 대부분의 경우에 순매각가격과 순실현가능가치는 서로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IASC는 IAS 2에서 사용하는 순실현가능가치의 정의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재고자산의 경우에 순실현가능가치의 정의가 잘 이해되고 만족스럽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용가치(문단 30~57과 부록 A)

BCZ40 IAS 36에서는 사용가치를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 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정의한다.

기댓값 접근법

BCZ41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내재된 시기와 금액의 불확실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기대 미래현금흐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기댓값 접근법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하나의 미래현금흐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가능한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모든 예상을 고려한다.

사례

기업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추정한다. 첫 번째 가능성은 미래현금흐름 120원이 40% 확률로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미래현금흐름 80원이 60% 확률로 생기는 것이다.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현금흐름은 80원이 될 것이고, 기 대현금흐름은 96원(80×60%+120×40%)이 될 것이다.

BCZ42 대부분의 경우에 현금흐름 추정의 기초가 되는 예산/예측에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하나의 추정치만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IASC는 기댓값 접근법을 허용하되,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내부창출영업권에서 창출되거나 다른 자산과의 시너지로 창출되는 미래현금 흐름

BCZ43 IASC는 미래현금유입 추정치에, 최초 인식한 자산(또는 그 자산의 일부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매각하였다면 그 남은 부분)에 관련된 미래현금유입만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한 제안의 취지는 내부창출영업권에서 창출되거나 다른 자산과의시너지로 창출되는 미래현금유입이 자산의 사용가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는 IASC가 E60에서 내부창출영업 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제안과 일치한다.20)

BCZ44 많은 경우에 최초 인식한 자산에서 창출되는 미래현금유입과 내 부창출영업권이나 자산의 변형에서 창출되는 미래현금유입을 구 별하기가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사업결합이 있었거나 후속 지출로 자산이 개량되었을 때 특히 그렇다. IASC는 자산의 장부금액 회수가 부분적으로 내부창출영업권에서 이루어지는지 보다는 장부금액이 회수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BCZ45 또 미래현금유입에 최초 인식한 자산에 관련된 미래현금유입만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은, 현금흐름은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해야 한다는 IAS 36의 요구사항과 상충된다(이 기준서 문단 33 참조). 따라서 IAS 36에서는 미래현금유입이 최초 인식한 자산에서 창출되든지 아니면 후속적 개량 또는 변형에서 창출되든지 간에 자산의 현재 상황에 기초하여 추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

몇 년 전에 기업은 10,000개의 주소가 담긴 고객목록을 매입하여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다. 기업은 제품을 직접 마케팅하면서 이 목록을 사용한다. 최초 인식 이후로 약 2,000개의 고객 주소가 목록에서 삭제되었고 3,000개의 새로운 고객 주소가추가되었다. 기업은 고객목록의 사용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최초 인식한 자산에 관련된 미래현금유입만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IASC는 채택하지 않음)에 따르면, 기업은 취득한 고객목록 중 8,000(10,000-2,000)명의 고객에게서 창출되는 미래현금유입만

²⁰⁾ IASC는 1998년에 무형자산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을 의결하였다.

을 고려한다.

IAS 36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목록의 현재 상태, 즉 11,000(8,000+3,000)명이 모두 포함된 고객목록에서 창출되는 미래현금흐름을 고려한다.

외화로 추정하는 사용가치(문단 54)

- BCZ46 현장조사 참여자의 검토의견에 대응하여 IAS 36 문단 54에서는 외화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의 사용가치 계산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IAS 36에 따르면 외화표시 사용가치는 대차대조표일의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보고통화²¹)로 환산한다.
- BCZ47 통화가 자유롭게 환전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된다면, 현물환율에는 그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에 대한 시장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미래 환율에 대해 유일하게 구할수 있는 불편 추정치는 현행 현물환율에다 각 통화가 속하는 두국가 사이의 예상인플레이션율 차이만큼 조정하는 것이다.
- BCZ48 사용가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하므로 그 계산 과 정에서 이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고려하게 된다.
 - (1) 미래현금흐름을 명목기준(인플레이션 영향과 개별 가격 변동의 영향을 모두 포함)으로 추정하고 인플레이션 영향이 포함된 할인율로 할인하는 방법
 - (2) 미래현금흐름을 실질기준(인플레이션 영향은 제외하지만 개별 가격 변동의 영향은 포함)으로 추정하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제외된 할인율로 할인하는 방법
- BCZ49 외화로 표시되는 사용가치를 환산하는 데 선도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선도환율에는 이자율 차이에 대한 시

²¹⁾ IAS 21(2003년 개정)에서 '보고통화'라는 용어를 '기능통화'로 대체하였다.

장의 조정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환율을 사용하면 화폐의 시간가치가 이중으로 고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먼저 할인율 에서 고려되고 또 선도환율에서도 고려된다).

BCZ50 통화가 자유롭게 환전될 수 없거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그 결과로 더는 현물환율이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에 대한 시장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IAS 36에 따르면 기업이 외화로 추정한 사용가치를 환산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일의 현물환율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IASC가 현행 현물환율보다 더 신뢰성 있는 미래 환율에 대한 추정치를 기업이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BCZ51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통화로 추정하지 않고 대용치인 다른 통화로 추정하여 그 다른 통화에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대안은 특히 현금흐름이 초인플레이션 경제[이러한 경우에 일부에서는 대용치로서 경화(hard currency) 사용을 선호할 것이다]의 통화 또는 보고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창출되는 경우에 더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을 사용하면, 각 통화가 속하는 두 국가 사이의 인플레이션율 차이에 따른 변동이 아닌 다른 이유로 환율이 변동되는 경우에 정보를 왜곡하게 될 것이다. 또 이 대안은, IAS 29에 따른 접근법이 보고 통화22)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에 대차대조표일의 측정단위로 다시 작성하기 위한 대용치로서 하나의 경화를 정하여 그 경화로 환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인율(문단 55~57과 A15~A21)

BCZ52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목적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현금흐름에 있는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²²⁾ IAS 21(2003년 개정)에서 '보고통화'라는 용어를 '기능통화'로 대체하였다.

- (1) 현금흐름을 조기에 창출하는 자산은 같은 현금흐름을 나중에 창출하는 자산보다 더 가치가 있다. 모든 합리적인 경제적 거 래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할 것이다. 미래 일정한 날까 지 현금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르는 원가는 그 기간에 그 돈을 투자하지 못하여 잃게 된 이익을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는 기 회원가이다. 위험에 대한 고려에 앞서 화폐의 시간가치는 만기 가 같은 국채와 같은 무위험 투자자산의 수익률에서 얻을 수 있다.
- (2) 미래현금흐름의 가치는 현금흐름과 관련된 변동성(위험)에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합리적인 경제적 거래에서는 위험 을 고려할 것이다.

BCZ53 따라서 IASC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1) 역사적 이자율, 즉 자산을 취득할 때 내재된 유효이자율에 기초한 할인율은 채택하지 않는다. 회수가능액의 후속 추정치도 현재 유효한 이자율에 기초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자산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현재 유효한 경제상황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이자율에는 현재 유효한 경제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 (2) 미래현금흐름 자체를 자산의 모든 특유한 위험에 대해 조정하지 않는다면 무위험 이자율에 기초한 할인율도 채택하지 않는다.
- (3)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이 할인율은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위험이 같은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과 같다.
- BCZ54 원칙적으로 사용가치는 기업의 관점에서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자산의 용도에 따라 산정되는 기업 특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논리

적으로 보면 이 경우에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의 특유한 위험 모두에 대한 기업 자체의 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러나 IASC는 그러한 할인율은 객관적으로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 36에서는 미래현금흐름은기업 자체에서 추정하되 할인율에는 가능한 정도까지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비슷하게 할인율에는 불확실한 미래현금흐름에 대해 시장에서 요구할프리미엄을 기업이 추정한 현금흐름의 분포에 기초하여 반영해야한다.

BCZ55 IASC는 IAS 36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그자산 특유의 현행 이자율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다른 자산(검토 대상 자산과 가능한한 비슷한 자산)에 대해 시장에서 결정된 현행 이자율을 출발점으로 삼고 자산(추정 현금흐름이 조정되지 않음)의 특유한 위험을 이 이자율에 반영하여 조정하게 된다.

2004년 기준서에 포함된 추가 지침

사용가치에 반영하는 요소(문단 30~32)

BC56 IAS 36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다음 항목을 명확히 하는 추가 지침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개정 기준서에도 포함되었다.

- (1) 자산의 사용가치에 반영하는 요소
- (2) 그 요소 중 일부(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 자산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가격,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그 밖의 요소들)는 미래 현금흐름을 조정하여 반영하거나 할인율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IASB는 여러 관계자에게서 개정 전 IAS 36에 있는 사용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대응하여 공 개초안에 이 추가 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BC57 의견제출자들은 대체로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였다.

- (1)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가 치를 측정할 수 있게 IAS 36을 개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2) 무형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자산에 내재된 불확실 성에 대한 보상가격을 미래현금흐름에서 조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 (3)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반영하게 될 그 밖의 요소(이 요소는 해당 자산이 기업에서 갖는 가치가 아니라 시장에서 매긴 가격을 말한다)를 사용가치의 측정치에 반영하면 사용가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밖의 요소는 기업이 그 자산에서 창출할 수 있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만 사용가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BC5823) 위 (1)을 고려하면서 IASB는 IAS 36에 따른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의 측정이, 자산의 회수가능액에는 합리적인 경영진이 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IASC의 결정에 기인함을 알게 되었다. 또 그 결정과 관련하여, 자산을 통제하는 기업의 합리적 추정치(사용가치)보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시장의 예상(순공정가치)을 우선시하거나 그 반대가 되지도 않았다(문단 BCZ23 참조). IAS 36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을 개발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IASB는 회계에서 적절한 측정 목적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고려하고 해결하기 전까지는 개정 전 IAS 36에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채택하였던 측정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더욱이 IAS

²³⁾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IAS 36의 문단 27을 삭제하였다.

36에서는 순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다른 평가기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이 기준서의 문단 27에서는 '자산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나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을 매각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는 최선의정보에 기초하여 순공정가치를 산정한다'라고 기술한다.

BC59 위 (2)를 고려하면서 IASB는 개정 전 IAS 36에서 위험조정을 현금 흐름이나 할인율 중 어느 하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선호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았다. IASB는 회계에서 측정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고려하고 해결하기 전까지는 개정 전 IAS 36의 회수가능액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되도록이면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였던바, 이 접근법을 개정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조정을 현금흐름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또 IASB는 자문 과정의 일환으로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 조회기간에 현장 방문과 전문가 회의(round-table discussions)를 실시하였다.24) 많은 현장 방문 참여자가 위험조정을 할인율에 반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C60 위 (3)을 고려하면서 IASB는 IAS 36에서 채택한 사용가치가 순수한 뜻에서 '기업에 특유한' 가치는 아님을 알게 되었다. 비록 계산의 출발점으로 사용되는 현금흐름이 기업에 특유한 현금흐름을 나타내기는 하지만(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서 도출되며,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다), 그 현재가

²⁴⁾ 현장 방문은 2002년 12월 초부터 2003년 4월 초까지 실시되었으며, 현장 방문에서 IASB 위원과 스태 프는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영국에서 41개 기업들과 회의를 가졌다. IASB 위원과 스태프는 SFAS 141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과 SFAS 142 '영업권과 그 밖의 무형자산(Goodwill and Other Intangible Assets)', 그리고 이와 동등한 캐나다의 관련 규정(2001년 6월 공표)을 처음 적용하면서 북미 기업들이 직면한 실행상의 문제에 관하여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자, 회계기준제정기구, 규제기구와 일련의 전문가 회의(round-table discussions)도 가졌다.

치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 평가가 반영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56(개정 전 기준서의 문단 49)에서는 '화폐의 시 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 율은,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위험이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투 자자들이 요구할 수익률과 같다'라고 분명히 밝힌다. 바꿔 말하면 자산의 사용가치에는 경영진이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에 대해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반영한다.

- BC61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 (1) 그 기업이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반영하게 될 그 밖의 요소를 계산 요소에 포함하는 것이 IAS 36에서 채택한 사용가치의 측정과 일치한다.
 - (2) 공개초안에서 제안한(그리고 개정된 기준서의 문단 30에서 열 거하는) 요소 모두를 자산의 사용가치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 다.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문단 33, 34, 44)

- BC62 공개초안에서는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과거의 실제 현금흐름과 경영진이 과거에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한 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에 기초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제안하였다.
- BC63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는 이 제안에 반대하였고, 그 논 지는 다음과 같다.
 - (1) 과거 현금흐름 예측이 실제 현금흐름과 달랐던 이유는 현재의 추정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영진에 중요한 변동

이 있었다면, 경영진이 과거에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한 능력은 현재 추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또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면, 이는 경영진의 편견을 나타내기보다는 경영진의 통제 밖에 있는 요인(예: 2001년 9월 11일에일어난 사건)의 결과일 수도 있다.

- (2) 경영진의 과거 예측과 실제 현금흐름 사이에 있었던 차이를 현금흐름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반영 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 (3) 이러한 제안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 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다.
- BC64 IASB는 언급한 공개초안에서 현금흐름 예측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과거에 실제로 생긴 현금흐름과 경영진이 과거에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한 능력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는 과거 실제 현금흐름과 경영진이 과거에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한 능력이 현재 추정의 개선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IASB는 경영진이 현금흐름 예측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수립할 때 다음 항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적절하다면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였다.
 - (1) 기업의 과거 실제 성과
 - (2) 경영진이 현금흐름을 일관되게 과대하게 또는 과소하게 예측 한 과거 전력
- BC65 따라서 IASB는 이 제안을 고수하지 않고, 그 대신에 다음 내용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기준서 문단 34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 (1) 경영진은 과거에 추정한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여 현행 현금흐름 추정에 기초가 되는 가

정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 경영진은 실제 현금흐름이 창출되었던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속 사건 또는 상황의 영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면, 현행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과거 실제 결과와 일관되도록한다.
- BC66 IASB는 이 기준서의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가 제기하여 IFRIC이 IASB에 이관한 두 가지 회계논제도 검토하였다. 두 가지 회계논제 모두 개정 전 IAS 36의 문단 27(2) 와 37(현행 IAS 36의 문단 33(2)와 44)을 적용하는 것에 관련되었다. IASB는 공개초안을 개발할 때 그 문단을 다시 고려하지 않았다.
- BC67 문단 27(2)에서는 사용가치를 측정에 사용되는 현금흐름 추정은 경영자가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문단 37에서는 미래현금흐름은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현재 상태에서 추정하고 다음의 사건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미래현금 유입 또는 유출은 제외하도록 요구하였다.25)
 - (1)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 (2)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성능을 당초 평가된 수준보다 개선 하거나 향상하는 미래 자본적 지출
- BC68 IASB가 고려한 첫 번째 회계논제는 다음의 경우에 현금창출단위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되었다.
 - (1) 현금창출단위를 취득하는 대가로 지급한 가격이 현금창출단위에서 나오는 순현금유입을 상당히 증액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구조조정이 포함된 추정에 기초하는 경우
 - (2)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26)를 추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관

²⁵⁾ 자산의 성능을 당초 평가된 수준보다 개선하거나 향상하는 미래 자본적 지출을 제외하도록 한 요구사 항은 2003년에 IAS 16이 개정됨에 따라 함께 개정하였다. 현행 IAS 36의 문단 44에서는 자산 성능 향상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유입 또는 현금유출을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한다.

측 가능한 시장이 없는 경우

의견제출자는 구조조정으로 생기는 순현금유입이 사용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현금창출단위를 취득한 직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면 손상차손이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 BC69 IASB는 의견제출자가 지적하였듯이 IAS 36에 따를 경우에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새로 취득한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가, 아직 확약되지 않은 미래 구조조정의 순효익이 가격에 포함된 만큼 현금창출단위의 취득가격보다 적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그렇다고 하여 해당 현금창출단위 취득 직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면 손상차손이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은 아니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았다.27)
 - (1) IAS 36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순공정가치를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를 매각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 (2) 이 기준서 문단 25~27에서는 순공정가치의 추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최근에 취득한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지급한 가격에 처분부대원가와 거래일 및 추정일사이의 경제상황 변동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 (3)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는 그 밖의 방식으로 추정하더라도, 그 추정치에는 취득자가 현금창출단위의 구조조정이나 미래 자본적 지출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순효익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반영될 것이다.

²⁶⁾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포함한다.

^{27)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IAS 36 문단 25~27을 삭제하 였다.

- BC70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순공정가치로 산정될 것이다. 그 결과로 구조 조정의 순효익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반영될 것이며, 이는 처분부대원가가 중요한 경우에만 손상차손이 생기게 되는 것임을 뜻하다.
- BC71 IASB는 새로 취득한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처리하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논리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회수가능액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취지는 자산이 손상되었을 때 내려질 경제적 의사결정(당장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며 사용할 것인지)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 BC72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 (1) IAS 36을 개정하여 아직 확약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원가 와 효익도 사용가치 계산에 포함하면 개정 전 IAS 36에서 채택하였던 사용가치의 개념이 유의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 개념은 '자산의 현재 상태에서의 사용가치'이다.
 - (2) IAS 36에 있는 사용가치의 개념을 사업결합에 관한 과제의 일부로 수정해서는 안되고, IASB가 회계에서 적절한 측정 목적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할 때 비로소 다시고려해야 한다.
- BC73 IASB가 고려한 두 번째 회계논제는 일부 의견제출자의 제안에 관련된 것으로서 개정 전 IAS 36의 문단 27(2)와 37(현행 IAS 36의 문단 33(2)와 44)의 상충 문제였다. 문단 27(2)에서는 사용가치는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측(미래 구조조정과 미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경영진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에 기초하여 측정하도록 요구했다. 반면 문단 37에서는 아직 확약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과 자산의 성능을 당초 평가된 수준보다 개 선하거나 향상하는 미래 자본적 지출의 효과는 사용가치에서 제 외하도록 요구했다.28)

BC74 IASB는 자산의 현재 상태에서 미래현금유입을 사용하여 사용가치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IASC의 의도였다는 사실은 개정 전IAS 36의 결론도출근거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예측에 기초하여 사용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그러한 예측에 아직확약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의 성능을 개선하거나향상하는 것과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IAS 36의 문단 37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BC75 따라서 IASB는 개정된 기준서의 문단 33(2)에서,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되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 성능의 개선 또는 향상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미래현금 유입 또는 유출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추정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자산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또는 추정 내용연수가 서로다른 여러 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자산)의 경우에 관련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내용연수가 더 짧은 자산(구성요소)의 대체는현금창출단위(자산)에 대한 일상적인 수선 활동의 일환으로 본다는 점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용가치 측정에 현재가치기법의 사용(문단 A1~A14)

BC76 공개초안에서는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현재가치기법 사용에 대한

²⁸⁾ 자산의 성능을 당초 평가된 수준보다 개선하거나 향상하는 미래 자본적 지출을 제외하도록 한 요구사 항은 2003년에 IAS 16이 개정됨에 따라 함께 개정하였다. 현행 IAS 36의 문단 44에서는 자산 성능 향상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입 또는 유출을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한다.

추가 적용지침을 제안하였다. IASB는 개정 전 IAS 36에 있던 사용가치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에 부응하여 공개초안에 추가 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 BC77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대체로 추가 지침을 지지하였다. 지지하는 관점에는 차이가 없지만 이들 의견제출자는 다음 내용 을 제안하였다.
 - (1) IAS 36에 대한 간략한 부록으로 지침을 제한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 (2) 지침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IAS 36의 주된 목적(자산의 손상검 사에 대한 회계원칙을 정하는 것)에서는 벗어난다. 따라서 그 지침은 기준서에서 제외해야 한다.
 - (3)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4)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은 경영진이 거래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금지해야 한다.
- BC78 위 (1)과 (2)를 고려하면서 IASB는 추가 지침에 대한 의견제출자가 추가 지침의 유용성과 충분성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 BC79 위 (3)과 (4)를 고려하면서 IASB는 개정 전 IAS 36에서는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고 금지하지도 않았음을 보았다. IASB는 회계에서 측정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기 전까지는 개정 전 IAS 36의 회수가능액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되도록이면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바,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금지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또 위 (4)와 관련하여 현장 방문 참여자 중 일부는 예산/예측 및 전략적 의사결정에 기대값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로서 민감도 분석과 통계 분석을 일상

적으로 실시한다고 말하였다.

BC80 따라서 IASB는 공개초안에서 제안하였던 현재가치기법의 사용에 관한 적용지침을 개정 기준서에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인세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에 대한 고려

- BCZ81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은 회수가능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은 다음 두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편리하다.
 - (1) 손상차손의 인식 후, 자산의 세무기준액(세무 목적으로 자산에 귀속된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에 비롯되는 미래법인세 현금 흐름. 이러한 차이는 IAS 12에서 '일시적차이'로 기술한다.
 - (2)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회수가능액과 같을 경우에 생기는 미래 법인세 현금흐름
- BCZ82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서는 일시적차이의 세효과를 IAS 12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나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차이의 미래 세효과(문단 BCZ81에서 언급한 첫 번째 구성요소)는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더 자세한 논의는 문단 BCZ86~BCZ89 참조).
- BCZ83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보통 원가와 동일하다. 따라서 순매각가격29에는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회수가능액과 동일하다면 생기는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평가가 암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문단 BCZ81에서 언급한 두 번째 구성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순매각가격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29)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 하였다.

BCZ84 원칙적으로 사용가치에는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사용가치와 동일하다면 생기는 미래법인세 현금흐름(문단 BCZ81에서 언급한 두번째 구성요소)의 현재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요소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차이의 효과를 제외할 필요 가 있다.
- (2)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사용가치와 동일한 세무기준액이 사용가치 자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복 잡한 계산이 필요할 것이다.
- 이 이유로 IASC는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세전 미래현금흐름과 이 에 따른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전 할인율의 산정

BCZ85 이론적으로 세전 할인율이 세후 할인율에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의 특정 금액 및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기만 하면, 세후 현금 흐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든 세전 현금흐름을 세전 할인율로 할인하든, 그 결과는 같아야 한다. 세전 할인율이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하여 조정한 것과 항상 같지는 않다.

사례

이 사례에서는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하여 조정한 것이 항상 적절한 세전 할인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시한다.

20X0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은 1,757원이고 남은 내용연수는 5년이다. 20X0년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원가와 같다. 자산의 원가는 20X1년 말에 전액 세무상 손금으로 공제되며, 세율은 20%이다. 자산에 대한 할인율은 세후 기준으로만 산정될 수 있

고 10%로 추정된다. 20X0년 말에 세전 기준으로 산정된 현금흐름 추정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0X1	20X2	20X3	20X4	20X5
(1) 세전 현금흐름	800	600	500	200	100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사용가치

20X0년 말	20X1	20X2	20X3	20X4	20X5
(2) 세무상 손금 공제액	(1,757)	-	-	-	-
(3) 법인세 현금흐름 [((1)-(2))× 20 %]	(191)	120	100	40	20
(4) 세후 현금흐름 [(1)-(3)]	991	480	400	160	80
(5) 10%로 할인된 세후 현금흐름	901	396	301	109	50
<i>사용가치[∑(5)]</i>					1,757

세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세후 할인율을 세율만큼 가산하 여 조정함)을 사용하여 산정한 사용가치

세전 할인율(가산하여 조정된 것)[10% ÷ (100%-20%)] 12.5%

20X0년 말	20X1	20X2	20X3	20X4	20X5
(6) 12.5%로 할인된 세전 현금흐름	711	475	351	125	55
사용가치[Σ (6)]					1,717

'진정한' 세전 할인율의 산정

세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산정된 사용가치와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하여 산정된 사용가치가 동일하도록 반복계산하여 세전 할인율을 산정할 수 있다. 위 예시에서 세전 할인율은 11.2%이다.

20X0년 말	20X1	20X2	20X3	20X4	20X5
(7) 11.2%로 할인된 세전현금흐름	718	485	364	131	59
사용가치[Σ (7)]					1,757

'진정한' 세전 할인율은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하여 조정한 것과 같지는 않으며, 세율, 세후 할인율, 미래법인세 현 금흐름의 시기와 자산의 내용연수에 좌우된다. 위 예시에서 20X0년 말에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원가와 같으므로, 대차대조 표에 계상될 이연법인세는 없다.

IAS 12와의 상호작용

BCZ86 IAS 36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은 현재가치 계산에 기초하여야 한다. 반면 IAS 12에 따르면 자산의 장부금액(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에 기초한 경우에는 현재가치)과 세무기준액(할인 전 금액)을 비교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산정한다.

BCZ87 이 불일치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할인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AS 12의 개정(안)(1996년 의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데에 충분한 지지가 없었다. IASC는 여전히 기존 관행의 변화에 찬성하는 합의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 36에서는 일시적차이의 세효과를 IAS 12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BCZ88 IAS 12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자산 또는 현금 창출단위의 사용가치가 세전 사용가치 회수의 세효과를 반영하도 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면 세율이 25% 라면 장부금액 300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세전 현금흐름으로 현재가지 400을 받아야만 한다.

BCZ89 IASC는 그러한 조정을 할 경우에 개념적 장점이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불필요한 복잡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 36에서는 그러한 조정을 요구하지도 허용하지도 않는다.

2002년 12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와 현장 방문 참여자의 검토의견

- BC90 IASB는 IAS 36을 개정하면서 개정 전 IAS 36에 있던 다음을 고려하였다.
 - (1) 법인세환급액과 법인세납부액은 사용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2) 사용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 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미 래현금흐름의 추정치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해 조정되지 않은 경우) 세전 할인율이어야 한다.
- BC91 IASB는 공개초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위 요구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현장 방문 참여자와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세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에 유의적인 시행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계 시스템과 전략적 의사결정 시스템은 완전히 통합되어 있고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 BC92 이 문제를 고려하면서 IASB는 개정 전 IAS 36의 사용가치 정의와 사용가치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이, 세금의 속성 중 무엇을 사용가 치에 반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확하지는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IAS 36이 세전 현금흐름을 세전 할인율(세전 할인율은 세후 할인율에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의 특정 금액 및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어야 한다)로 할인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세전 할인율에 어떤 세효과를 포함하여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

- BC93 IASB는 개정 전 IAS 36에 있던 세전 현금흐름을 세전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어떠한 세금 속성이 사용가치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후자의 문제를 사업결합 과제의 일부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사용가치 계산에서 세금 처리에 관한 결정은 측정에 관한 개념체계 과제의일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이번 IAS 36 개정에서는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세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 BC94 그러나 IASB는 개념적으로는 세전 할인율이 세후 할인율에 미래법인세 현금호름의 특정 금액 및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기만 하면 세후 현금호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든 세전 현금호름을 세전 할인율로 할인하든 같은 결과를 가져와야한다고 보았다.일반적으로 세전 할인율이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하여조정한 것과 같지는 않다.

손상차손의 인식(문단 58~64)

- BCZ95 IAS 36에서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면 손상차 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IASC는 재무제표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하였다.
 - (1) 손상차손이 영구적으로 보일 때 인식한다('영구적 기준').

- (2) 자산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일 때, 즉 기업이 자산 의 장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한다('발 생 가능성 기준').
- (3)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면 곧바로 인식한다('경제적 기준').

'영구적' 기준에 기초한 인식

BCZ96 '영구적' 기준을 지지하는 측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 (1) 이 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을 때에는 손상차손이 인식되지 않는다.
- (2) 손상차손의 인식은 미래의 영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미래의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는 역사적 원가주의와 상반된다. 또 감가상 각(상각)을 할 때 자산의 예상되는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이미래 손실이 반영된다.

E55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일부만이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였다.

BCZ97 IASC는 다음의 이유 때문에 '영구적' 기준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1) 손상차손이 영구적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이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 손상차손의 인식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2) 이 기준은 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자원이라는 기본 개념에 상충한다. 원가기준 발생주의회계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상을 고려하지 않고는 사건을 반영할 수 없다. 회수가 능액을 줄이는 사건이 이미 벌어졌다면, 장부금액을 이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발생 가능성' 기준에 기초한 인식

BCZ98 자산의 장부금액을 모두 회수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발생가능성' 기준을 지지하는 견해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 (1) '발생 가능성' 기준을 적용하는 실무적 접근법으로서 미래현금 흐름 합계액(할인되지 않아 이자원가를 배분하지 않은 것)에 기초한 인식기준의 사용을 지지하는 견해
- (2) 국제회계기준 제10호(IAS 10)(1994년 재구성) '우발상황과 대차 대조표일 후 발생사건(Contingencies and Events Occurring After the Balance Sheet Date)'30)에 있는 요구사항의 반영을 지지하는 견해

할인되지 않은 미래현금흐름 합계액(이자원가 제외)

BCZ9931) 일부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는 손상차손 인식의 기준으로 '발생가능성' 기준을 사용하면서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실무적 접근법으로, 자산의 미래현금흐름 합계액(할인되지 않아 이자원가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자산의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한정하여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그 금액은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로 측정한 회수가능액의 차이로측정한다.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거나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자산의 가격과 가치평가기법(예: 현재가치로 할인된 현금흐름의 합계액, 옵션가격 결정모형, 행렬식 가격결정, 옵션조정 스프레드모형, 기본적 분석)의결과를 고려하여 추정한다.

BCZ100 이 접근법의 특징 중 하나는 손상차손의 인식기준과 측정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 다 적더라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합계액(이자원가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많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

³⁰⁾ IAS 10(1994년 개정)에 있던 우발상황에 관한 요구사항을 1998년에 IAS 37에 있는 요구사항으로 대체하였다.

^{31)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 측정규정을 포함한다.

게 된다. 이는 특히 내용연수가 긴 자산에서 생길 수 있다.

- BCZ101 할인하지 않은 미래현금흐름 합계액(이자원가를 배분하지 않은 것)을 인식기준으로 사용하기를 지지하는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 할인하지 않은 금액에 기초한 인식기준은 역사적 원가주의에 부합하다.
 - (2)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일시적인 손상차 손의 인식과 잠재적인 이익 변동성을 피할 수 있다.
 - (3) 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는 입증하기 어렵다. 즉 자산의 처분가 격이나 적절한 할인율은 추정하기가 어렵다.
 - (4)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증가한다. 추정 현금흐름을 미래 특정 기간에 배분하는 원가의 발생이 없이도 할인하지 않은 미래현금흐름 합계액이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이를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내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E55 '자산손상(Impairment of Assets)'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소수가 이 견해를 지지하였다.

- BCZ102 IASC는 위에서 열거된 주장들을 고려해 보았지만 다음의 이유로 이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 (1) 합리적 기업이라면 자산이 손상되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투자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손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내용연수가 긴 자산의 경우에는 더욱그러하다.
 - (2) IAS 36에 따르면 각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매년 추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중요하게 손상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만 추정하면 된다. 자산을 적절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상각)한다면 사건이나 상황 변화로 회수가 능액 추정치가 갑자기 감소하지 않는 한 중요하게 손상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 (3) 발생 가능성 요소는 사용가치의 산정,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회수가능액이 순매각가격32)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이어 야 한다는 조건에서 이미 고려되어 있다.
- (4)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정에 불리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재무제표이용자가 이 가정의 변화에 대해 적시 에 정보를 얻게 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IAS 10(1994년 재구성)에 기초한 발생 가능성 기준

- BCZ103 IAS 10에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우발손실금액을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 (1) 관련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다음에 대차대조표일 현재 자산 이 손상되었거나 부채가 생겼다는 사실이 미래사건으로 확인 될 가능성이 높다.
 - (2) 이 결과로 생기는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 BCZ104 IASC는 IAS 10에 있는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한다는 관점을 다음의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 (1) IAS 10에 있는 요구사항은 충분히 상세하지 않으며 '발생 가능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 (2) 그 요구사항은 불필요한 가능성 층을 추가할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생 가능성 요소는 사용가치의 추 정치와 회수가능액이 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 이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이미 고려되어 있다.

'경제적' 기준에 기초한 인식

BCZ105 IAS 36에서는 손상차손의 인식기준으로 '경제적' 기준에 의존한다.

^{32)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 하였다.

즉 손상차손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면 인식된다. 이 기준은 IAS 36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은 국제회계기준 [예: 국제회계기준 제9호(IAS 9) '연구 및 개발 원가(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IAS 22, IAS 16]에서 사용되었다.

BCZ106 IASC는 '경제적' 기준이야 말로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 전체에서 창출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주는 최선 의 기준이라고 보았다. 손상차손의 가능성 또는 영구성과 같은 요소는, 자산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측정에 반영된다.

BCZ107 E55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과반수가 손상차손을 '경제적'기준에 기초하여 인식하여야 한다는 IASC의 관점을 지지하였다.

재평가자산: 손익계산서에 인식 대 자본에 직접 인식

BCZ108 IAS 36에서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33)에 곧바로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같은 자산의 과거 재평가 잉여금이 환원되는 만큼은 직접 자본34)에 인식한다.

BCZ109 재평가자산의 용역잠재력이 명백하게 감소한 경우(예: 물리적 손상)에 손상차손을 손익계산서에 인식하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BCZ110 손상차손을 항상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업의 영업활동 일부를 구성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이 생긴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한편 IAS 16에 따르면 자산의 재평가 여부와 관계없

³³⁾ IAS 1(2007년 전부 개정)'에서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두 개의 계산서(별도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³⁴⁾ 개정 IAS 1(2007년 전부 개정)에 따라 손상차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감가상각액은 항상 손익계산서에 인식된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측은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 처리가 감가상각의 처리와 왜 달라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 BCZ111 IASC는 손상차손이 재평가액 감소인지 아니면 용역잠재력 감소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C는 IAS 16에서 사용하는 처리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여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을 재평가 감소액(이와 비슷하게 손상차손환입은 후속적 재평가증가액)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 BCZ112 재평가자산의 경우에 공시 목적상 '손상차손'('손상차손환입')과 '재평가 감소액'('재평가 증가액')의 구분이 중요하다. 기업 전체로 볼 때 중요한 손상차손이 인식되었거나 환입되었다면, IAS 36에서 는 IAS 16에 따른 재평가액 인식에 대한 정보보다는 손상차손의 측정방법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요구한다.

현금창출단위(문단 66~73)

- BCZ113 일부는 개별자산 기준으로만 회수가능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한다. E55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소수는 이 관점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 현금창출단위를 사업 전체가 아닌 다른 수준으로 식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개별 자산에는 손상차손이 전혀 인식되 지 않을 것이다.
 - (2) 어떤 자산이 그 밖의 자산이나 자산집단과는 독립적인 현금유 입을 창출하는지에 관계없이 손상차손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이 주장에서는 활용도가 낮아지거나 진부화되었으나 여전히 사용되는 자산을 그 예로 든다.
- BCZ114 IASC는 어떤 자산집단에 대해 독립적인 현금유입의 최저 수준을 식별하는 데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C는

현금창출단위의 개념이 여러 자산들끼리 함께 현금흐름을 창출한 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BCZ115 공개초안 제55호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IAS 36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과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산정에 관하여 추가 지침과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IAS 36에서는 현금창출단위가 가능한 최저 수준의 자산집단에 대하여 식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내부 이전가격 결정(문단 70)

- BC116 개정 전 IAS 36에서는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요구하였다.
 - (1) 산출물의 전부나 일부가 내부에서 사용되더라도 해당 자산이 나 자산집단은 현금창출단위로 식별되어야 한다.
 - (2) 다음 항목을 추정할 때 산출물의 미래 시장가격에 대한 경영 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개) 해당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산출물의 내부 사용에 관련된 미래현금유입
 - (나) 기업 내 다른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산출 물의 내부 사용에 관련된 미래현금유출
- BC117 위 (1) 요구사항은 개정 기준서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공 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현금흐름을 예측할 때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내부 이전가격 결정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추가 지침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위 (2)의 요구사항을 수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즉 활성시장에서도 판매될 수 있는 산출물을 내부에서 소비하는 현금창출단위만을 다루기보다는, 범위를 더 넓혀 내부 이전가격 결정의 영향을 받는 모든 현금창출단위를 다루는 식

으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 BC118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가 창출하는 현금 유입이 내부 이전가격 결정의 영향을 받는다면, 다음 항목을 추정할 때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달성될 미래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1) 해당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미래현금유입
 - (2) 내부 이전가격 결정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자산 또는 현금창출 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미래현금유출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검사

- BC119 사업결합 과제의 첫 단계로 IASB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1) 관련 요소(예: 법적, 규제적, 계약적, 경쟁적, 경제적 요소) 모두를 분석해 볼 때, 무형자산이 기업에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예측 가능한 한계가 없다면 해당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상각해서는 안되고 정기적으로 그 손상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위 논제 각각에 대해 IASB가 심의한 내용의 개요는 IAS 38의 결론도출근거에 제시되어 있다.
- BC120 IASB는 위의 결론에 이른 다음에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 상검사를 하는 형식을 고려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 (1)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는 일 년에 한 번은 하여야 하고, 손상 징후가 있다면 그보다 더 자주 해야 한다.
 - (2)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측정과 그 손상차손 (그리고 손상차손환입) 회계처리는, IAS 36의 영업권 외의 자산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문단 BC121~BC126에서는 IASB가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검사 빈도 및 시기에 대하여 IASB가 결론에 이르기까지 심의한 내용을 요약한다. 문단 BC129와 BC130에서는 IASB가 그러한 자산의 회수가능액의 측정과 그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에 관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심의한 내용을 요약한다.

손상검사의 빈도 및 시기(문단 9와 10(1))

- BC121 공개초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자산이 손상되었을 때 다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원가배분 개념이 아니라 가치평가 개념이라고 보았다. 일부에서는 '회수가능원가개념(the recoverable cost concept)'이라고 명명한 이 개념은, 자산의 원가나 다른 장부금액을 특정 회계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절차보다는 미래에 자산에서 생기는 효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손상검사를 하는 목적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사용이나 매각으로 회수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가 유한한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 기준으로 배분하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얻게 된다. IASB는 무형자산이 상각되지 않는 경우에 그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손상검토에 더 의존해야 할 것임을 인정하였다.
- BC122 따라서 공개초안에서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해 연차 보고기간 말마다 손상검사를 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자산의 손상을 일 년에 한 번 검사한다고 해서 연차 검사사이에 손상의 징후가 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이나 상황의 변화에 대한 경영자의 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공개초안에서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손상검사 때까지 기다리지 않

고 바로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제안하였다.

- BC123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일 년에 한 번 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하도록 하는 제안을 대체로 지지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손상 검사를 매년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손상검사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IASB는 이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후에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결론 내렸다.
 - (1) 무형자산이 상각되지 않는 경우에 그 장부금액이 회수가능가 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손상검토에 더 의존해야 할 것이라는 관점을 재확인하였 다.
 - (2) IAS 36에서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일 년에 한 번 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하도록 요구하여 야 한다.
- BC124 그러나 문단 BC122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공개초안에서는 비한 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연차 손상검사를 회계연도 말마다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IAS 36에서 연차 손상검사의 시기를 의무적으로 정하는 데에 반대하였다. 그 논지는 다음과 같다.
 - (1)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연차 손상검사는 매년 같기만 하다면 회계연도 중 어느 때에라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안(이제는 기준서 요구사항이 되었음)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연차 손상검사의 시 기가 융통성을 갖지 못할 근거는 없다.
 - (2)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와 연계되어 있다면(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 상검사를 개별적으로나 더 작은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로 하지

않고 영업권이 속한 현금창출단위와 같은 수준에서 한다면), 그 회수가능액을 회계연도 말에 측정하도록 요구할 경우에 그자산(과 영업권)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는 회계연도마다 적어도 두 번 하여야 하는데, 이는 너무나 부담스러운일이다. 예를 들면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고, 비한정 내용연수무형자산의 손상검사는 영업권과 같은 현금창출단위 수준에서 실시한다고 가정하자. 또 기업은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보고하고 회계연도 말이 12월 31일이며,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연차 전략계획·예산절차가 완료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3분기 말에 한다고 가정하자. 비한정 내용연수무형자산의 연차 손상검사를 회계연도 말마다 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할 것이다.

- (가) 매년 9월 말에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계산하여 장부금액과 비교하고,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먼저 감액한 다음에 남은 손상차손을 현금창출단위의 다른 자산(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포함)에 배분하여 해당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 (i)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을 검사하기 위해 매년 12월에도 같은 절차를 다시 수행한다.
- (F) 현금창출단위, 영업권,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으면 회계연도 중 어느 때에라도 같은 절차를 수 행한다.
- BC125 위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모두 회수가능액을 회계연도 말마다 계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IASB는 문단 BC124(2)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검사가 때때로 영업권의 손상검사와 연계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두 가지 손상검사 모두를 회계연도 말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BC126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영업권의 연차 손상검사와 마찬가지로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연차 손상검사도 매년 같은 시기에 수행한다면 회계연도 중 어느 때에라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회수가능액 계산 결과의 이월(문단 24)

BC127 이 기준서에서는 문단 24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대해 최근에 실시한 상세한 계산 결과를 과거 회계기간에서 이월하여 해당 회계기간의 손상검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C128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IASB의 결정에서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회수가능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서도 그러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더 많다고 결론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IASB는 이 경우는 최근에 회수가능액을 산정한 결과가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였고 그 이후로 별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손상차손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대해 과거 회계기간에 실시한 상세한 계산 결과를 이월하여 해당 회계기간의 손상검사에 사용할 수있도록 허용한다면, 손상검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손상검사에 드는 원가를 유의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회수가능액의 측정과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

BC129 IASB는 하나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

고 그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을 회계처리하는 데 채택하는 측정기준이 다른 식별할 수 있는 자산들에 적용되는 측정기준과 달라야 할 어떠한 설득력 있는 이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채택하면 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이 손상될 것이다. 비슷한거래는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기초한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이 모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IASB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측정과 그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에서 다루는 다른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일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130 IASB는 개정 전 IAS 36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회수가능액 (사용가치와 순매각가격 중 더 많은 금액) 산정과 그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채택하였던 측정기준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나 IASB가 IAS 36을 개정할 때 의도했던 바는 손상검사에 관한 일반적인 접근법을 다시 고려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IASB는 일반적인 접근법에 관한 문제를 사업결합 과제의 일부로 다루기보다는 나중에 IAS 36 전체를 재검토할 때다루기로 결정하였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문단 80~99)

BC13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BC131A IASB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는 대신에 일 년에 한 번이나, 사건이나 상황 변화로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자주 영업권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 22에서는 취득한 영업권을 최선의 추정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권 내용연수가 최초 인식후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반증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 그 가정에 대해 반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손상되었다는 징후가

없더라도 적어도 회계연도 말마다 개정 전 IAS 36에 따라 취득한 영업권에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 BC131B 취득한 영업권을 처음 인식한 후의 적절한 회계처리를 고려하면 서 IASB는 다음 세 가지 접근법을 검토하였다.
 - (1) 정액법으로 상각하되 영업권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 사를 하는 접근법
 - (2) 상각은 하지 않고 일 년에 한 번이나 사건이나 상황 변화로 영업권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자주 영업권 손 상검사를 하는 접근법
 - (3) 기업이 접근법 (1)과 (2)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접근법
- BC131C 공개초안 제3호(ED 3)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밝힌 의견제출자가 대체로 동의하였듯이, IASB는 기업이 접근법 (1)과 (2)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선택권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이 손상된다.
- BC131D ED 3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밝힌 의견제출자는 대체로 접근법 (1)을 지지하였다. 이들은 접근법 (1)을 지지하는 논거로 다음 내용을 제시하였다.
 - (1) 취득한 영업권은 소비되며 내부창출영업권으로 대체되는 자산이다. 따라서 상각을 하면 취득한 영업권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IAS 38에서 내부창출영업권의 인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부합하도록 내부창출영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 (2) 개념적으로 영업권 상각은 취득한 영업권의 원가를 소비하는 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방법이며 비한정 내용연수가 아닌 다른

무형·유형 고정자산에 적용하는 접근법과 일치한다. 실제로 기업은 유형자산 항목의 내용연수를 정하여 그 감가상각대상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취득한 영업권을 이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개념적 이유도 없다.

(3) 취득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만족할 만한 신뢰성 수준으로 예측할 수는 없고 영업권이 감소하는 형태를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비록 자의적일지라도 일정 기간에 걸쳐 영업권을 체계적으로 상각하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만 들이고도 개념적건전성과 실행 가능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다루기 힘든 문제의 유일한 실무적 해결책이 된다.

BC131E 이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수용할 수 있는 신뢰성 수 준을 표현의 충실성과 실무적 문제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형식으 로 달성하는 일이 영업권의 후속 회계처리를 심의하면서 직면하 는 주된 난제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IASB는 취득한 영업권의 내 용연수와 그 영업권이 감소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 지만, 영업권 상각은 그러한 예측에 의존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일정 기간의 상각금액은 기껏해야 취득한 영업권의 그 기간 소비량의 자의적 추정치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IASB는 영 업권이 자산이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전체 가치를 유 지한다면(예를 들면 기업이 광고선전과 고객서비스에 자원을 지출 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되면서 내부창출영업권으로 대체 된다는 것이 사실임에 틀림없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ED 3을 개 발하면서 이르렀던 관점과 일치하게, IASB는 취득한 영업권을 대 체하는 내부창출영업권이 인식되지도 않는데 취득한 영업권의 소 비를 반영하기 위해 상각한다고 해서 정보로서 유용한지에 의문 을 가졌다. 따라서 IASB는 ED 3을 마련할 때 영업권을 임의의 기 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내렸던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IASB는 입증되지 않은 증거와 연구 증거 모두 이 관점을 지지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BC131F 문단 BC131C(2)에 요약된 의견제출자의 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영업권 및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모두 그 자산이 기업을 위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직접 관련되기는 하지만, 유형고정자산의 예상 물리적 효용이 내용연수에 상한을 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달리 말하면 영업권과는 달리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에서 예상되는 물리적 효용을절대로 넘을 수 없다.
- BC131G IASB는 ED 3를 개발하면서, 엄격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손상검사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면,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는 대신에 일 년에 한 번이나 사건이나 상황 변화로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자주 영업권 손상검사를 하는 접근법을 취하여 재무제 표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보았던 관점을 재확인하였다. 그러한 손상검사방법이 취해야 하는 형식과 관련하여 IAS 36 개정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가 제시한 검토의견을 고려한 후에 IASB는 충분히 엄격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손상검사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BC132 문단 BC133~BC177에서는 영업권의 손상검사가 취해야 할 형식에 대하여 IASB가 심의한 내용의 개요를 설명한다.
 - (1) 문단 BC137~BC159에서는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는 것과 영업권에 손상검사를 하는 수준에 관한 요구사항을 논의 한다.
 - (2) 문단 BC160~BC170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의 빈도를 포함하여 그 손상차손의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논의한다.
 - (3) 문단 BC171~BC177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의 시기에 관한 요 구사항을 논의한다.

BC133 IASB는 심의의 첫 단계로 영업권 손상검사의 목적과 그러한 손상 검사를 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회수가능액 측정을 고려하였다. IASB는 최근 북미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를 하기 위한 측정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반면, 개정 전 IAS 36과 영국회계기준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와 순매각가격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BC134 또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은 취득자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는 자산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을 예상하여 지급한 금액을 뜻한다고 보았다. 영업권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측정할 수 없다. 그 대신에 영업권은 사업결합원가가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부채,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 즉 나머지 금액으로 측정한다. 더욱이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사업결합 후 창출되는 영업권은 같은 현금흐름에 함께 이바지하기 때문에 서로 분리해서 식별할 수 없다.35)

BC135 IASB는 사업결합 후 내부에서 창출되는 영업권을 별도로 분리해서 측정하고 그 측정치를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검사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항상 내부창출 영업권 때문에 손상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영업권 손상검사의 목적은 기껏해야 영업권 장부금액이, 취득한 영업권과 사업결합 후 내부에서 창출되는 영업권 모두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에서 회수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데 있다는 관점을 가졌다.

³⁵⁾ IASB는 사업결합 과제의 두 번째 단계에서 IFRS 3에 있는 영업권의 정의와 측정 기준을 개정하였다 [IFRS 3(2008년 전부 개정)의 문단 32와 부록 A 참조].

BC136 IASB는 영업권이 나머지 금액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채택하는 측정기준에 관계없이 영업권 손상검사의 출발점은 영업권이 관련되는 영업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비록 IASB는 회계에서 적절한 측정 목적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기 전까지는,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적절한 측정치를 식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IAS 36에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채택한 측정기준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으나, 취득한 영업권이 장부금액에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도 그 측정기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이렇게 함으로써 영업권 손상검사가, 다른 자산이나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IAS 36에 따라 하는 손상검사와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이점이 생길 것임에 주목하였다.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문단 80~87)

- BC137 개정 전 IAS 36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를 관련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의 일부로 하도록 요구하였다. 개정 전 기준서에서는 '아래에서 위로/위에서 아래로(bottom-up/top-down)' 접근법을 채택하였던 바, 이 접근법에 따르면 영업권 손상검사는 그 장부금액의 일부를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최소 현금창출단위 각각에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배분함으로써 실시되었다.
- BC138 공개초안에서는 개정 전 IAS 36과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1) 영업권 손상검사는 관련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의 일부로 하여야 한다.
 - (2)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그 일부를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

라, 배분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 각각에 배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개초안에서는 영업권 장부금액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는, 해당현금창출단위가 경영진이 자산들(영업권이 포함된 것임)의 투자수익을 관찰하는 최저 수준임을 나타내는 경우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추가 지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현금창출단위가 국제회계기준 제14호(IAS 14) '부문보고(Segment Reporting)'에 따라결정되는 기업의 일차적 보고형식에 기초한 부문보다 더 클 수는없었을 것이다.

BC139 위 제안을 개발하면서, IASB는 취득한 영업권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인 현금호름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상검사는 관련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의 일부로만 할 수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배분'의 뜻은 명확하게 하는 지침이 없다면, 사업결합으로 취득자의 기존 현금창출단위 모두의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기업 전체의 수준에서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오히려 영업권 손상검사를 하는 수준과 기업의 경영방식을 반영하고 영업권이 자연스럽게 관련될 수 있는 내부보고 수준 사이에 연계가 있어야한다. 따라서 IASB에는 내부보고 목적상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와 해당 영업을 지원하는 자산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 수준에서, 영업권 손상검사를 해야한다는 점이 중요하였다.

BC140 IASB가 위 문제를 재심의하면서 의견제출자와 현장 방문 참여자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실무에서는 영업권 배분에 관한 IASB의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영업권을 IASB의 의도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 배분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일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

였다. 예를 들면 일부 의견제출자와 현장 방문 참여자는, 영업권을 그토록 낮은 수준에 배분하자는 제안을 따르려면 기업이 영업권을 자의적으로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손상검사 수행 목적으로 보고시스템을 새로 또는 추가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IASB는 그 의도가 영업권 손상검사를 실시하는 수준과 기업의 경영방식을 반영하는 내부보고 수준 사이에 연계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문의수준이나 그보다 아래 수준에서 영업권을 관찰하지 않는 기업을 제외한다면, 영업권 손상검사의 수준에 관한 제안이 기업이 영업권을 자의적으로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 기업이 보고시스템을 새로 또는 추가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가져와서도 안된다.

- BC141 IASB는 현장 방문 참여자와 토의한 결과, '현금창출단위'의 정의가 공개초안 문단 73에서 한 제안, 즉 영업권을 '그 장부금액 일부를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최소 현금 창출단위' 각각에 배분하여야 한다는 것과 결부될 때 위와 같은 혼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현장 방문 참여자와 의견제출자는 공개초안 문단 74에서 제시한 '경영진이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을 관리하는 최저 수준'이 불분명하다고 느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어느 수준의 경영진 (예: 이사회, 최고경영자, 부문관리자)'인가라는 것이었다.
- BC142 IASB는 위 문제와 관련된 의도를 현장 방문 참여자들에게 명확히 한 결과, 영업권 손상검사를 기업 전체 수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여기는 하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들 모두 IASB가 영업권 손 상검사를 해야 한다고 믿는 수준을 지지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BC143 또 IASB는 의견제출자와 현장 방문 참여자 중 다수의 검토의견에 서, 특히 행렬식(matrix basis) 경영조직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배

분하는 현금창출단위가 기업의 일차적 보고형식에 기초한 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으로 당초 IASB의 의도(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실시하는 수준과 기업이 경영방식을 반영하는 내부보고수준 사이에는 연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음의 사례에서는 이 문제를 보여준다.

행렬식으로 경영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일차적으로 지역기준에 따라, 이차적으로 제품집단기준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여러 지역에 분포한 제품집단 하나를 취득하면서 영업권이 생겼고, 이 영업권은 계속 내부보고 목적상 제품집단(이차적 부문)의 일부로 관찰된다. '더 크다'의 정의에 따르면 이차적 부문이 일차적 부문보다 '더 클'수 있다.

BC144 따라서 IASB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 (1) 기준서에서는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 위집단 각각이 기업 내에서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이 관찰되 는 최저 수준임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2)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자의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 각각에 취득한 날 부터 배분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 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배분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서에서 분명히 한다.
- (3)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이, 기업의 일차적 보고형식에 기초한 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 대신에 기업의 일차적 또는 이차적 보고형식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한 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으로 대체한다. IASB는 행렬식 기업도 자기의 경영방식을 반영하는 내부보고 수준에서 영업권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36)

^{36) 2006}년에 IAS 14를 IFRS 8로 대체하였다. IFRS 8에서는 일차적, 이차적 부문정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문단 BC150A 참조).

- BC145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손상검사 목적으로 영업권을 배분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우려를 추가로 제기하였다.
 - (1) 영업권을 최소한 부문 수준으로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 종종 자의적 배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기업이 보고시스템을 새로 또는 추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회계기준 합치를 위해서는 영업권 손상검사의 수준이 SFAS 142에서 정하는 수준(보고단위 수준)과 같아야 한다.
 - (3) SFAS 142에서 요구하듯이, 사업을 구성하는 복수의 현금창출 단위가 비슷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면 비록 내부 목적상으로는 독립적으로 감시할지라도 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취 급하여야 한다.
- BC146 위 (1)과 관련하여, IASB는 공개초안을 개발하면서 이른 결론, 즉 사업결합으로 기존 현금창출단위 모두의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기업 전체 수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기업의 잘못된 판단을 막으려면 영업권을 적어도 부문 수준으로 배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BC147 위 (2)와 관련하여, IASB는 SFAS 142에서 영업권 손상검사를 '보고단위'라 불리는 보고 수준에서 하도록 요구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보고단위는 영업부문[(SFAS 131 '기업의 부문에 관한 주석공시와 관련된 정보(Disclosures about Segments of an Enterprise and Related Information)'37)에서 정의함]이거나 그보다 한 단계

³⁷⁾ SFAS 131에 따라 '영업부문'을 식별하는 기준과 IAS 14에 따라 기업의 일차적 보고형식에 기초한 부문을 식별하는 기준은 다르다. SFAS 131에서는 영업부문을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로 정의한다.

⁽¹⁾ 수익을 얻고 비용이 발생하는(기업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 사업활동에 종사한다.

⁽²⁾ 부문에 자원배분 의사결정을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영업결과를 기업의 최고영업의사결 정자가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³⁾ 구분되는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다.

²⁰⁰⁶년에 IAS 14는 IFRS 8로 대체하였다(문단 BC150A 참조).

낮은 수준의 단위('구성단위'라고 부른다)이다. 영업부문의 구성단위가 구분된 재무정보를 구할 수 있는 사업을 구성하고 부문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해당 구성단위의 영업결과를 검토한다면 보고단위가 된다. 그러나 둘 이상의 구성단위가 서로 비슷한 경제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보고단위로 보아야한다. 영업부문은, 그 모든 구성단위가 비슷하거나, 그 구성단위중 어느 것도 보고단위가 되지 않거나, 오직 하나의 구성단위로만구성되어 있다면 보고단위로 본다.

- BC148 따라서 IAS 36과는 달리 SFAS 142에서는 영업권을 손상검사 목적으로 '밀어내릴(pushed down)' 수 있는 수준(영업부문 한 단계아래 수준)에 제한을 두고 있다.
- BC149 IASB는 영업권 손상검사의 수준에 관하여 SFAS 142와 합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현장 방문과 북미 전문가 회의(round-table discussions)에서 발견한 다음 사항에 주목하였다.
 - (1) 현장 방문에 참여한 미국 상장기업의 대부분은, IASB가 영업 권 손상검사의 수준에 대해 제안한 내용을 따를 경우에 실무적으로 영업권 손상검사가 SFAS 142에 따른 것과 같은 수준이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은 IASB의 제안을 따를 경우에 SFAS 142에 따를 경우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영업권 손상검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IASB의 접근법이 재무제표이용자와 경영진에게 더 유용한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여긴다.
 - (2) 전문가 회의 참여자 중 몇몇은 자신들(감사법인 참여자의 경우에는 감사대상기업)은 SFAS 142에 따른 손상검사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영업권 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도 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그렇게 더 낮은 수준의단위에 영업권 손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도 이 손상차손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여유(cushions)'가 있는 다른 단위와 통합

하면 손상차손이 '사라지는(disappeared)' 경우에 SFAS 142에서 그러한 영업권 손상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에 큰 불만을 표시하였다.

BC150 IASB는 문단 BC145의 제안 (3)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구성하는 특성이 비슷한 복수 단위를 통합하면, 경영진이 현금창출단위에 손상차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된 단위에 그 손상차손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손상차손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IASB는 기업의 경영방식 때문에 영업권 손상차손에 관한 정보를 특정 수준에서 경영진이 이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도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BC150A 2006년에 IFRS 8이 IAS 14를 대체하여 부문을 식별하는 기준이 변경되었다. IAS 14에서는 두 부류의 부문으로 구별되었다. 하나 는 관련 제품과 용역에 기초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에 기초하는 것이었다. IFRS 8에 따르면 영업부문은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에 기초하여 식별한다. 이 기준 개 정의 목적은 부문정보의 공시를 개선하는 것이었지 손상검사 목 적의 영업권 배분에 관한 IAS 36의 요구사항을 바꾸는 것은 아니 었다. 개정 전 IAS 36의 요구사항에서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 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 각각이 'IAS 14에 따라 결정되는 기업 의 일차적 또는 이차적 보고형식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한 부문보 다 크지 않아야 한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IFRS 8에 의해 'IFRS 8에 따라 결정되는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로 바뀌었다. IAS 14에 따라 결정되는 부문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당초 요구사 항을 지지하는 위에서 제시된 주장은 IFRS 8에 따라 결정되는 부 문을 기초로 하는 개정 요구사항도 지지한다.

BC150B

IFRS 8에서 도입한 영업부문에 대한 정의 때문에 IFRS 8을 적용 하는 기업은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그 용어의 정의는 IAS 36 문단 80에서 허용하는 영업권의 손상목적상 최대 단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에 IASB는 IAS 36에서 허용하는 손상검사 목적상 최대 단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개발되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가운데 하나의 견해 는 영업권의 손상검사 목적상 최대 단위는 IFRS 8 문단 12에서 허용하는 통합을 하기 전의 IFRS 8 문단 5에서 정의하는 영업부 문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이 단위는 IFRS 8 문단 12 에서 허용하는 통합 후, 문단 5에서 정의하는 영업부문 수준이라 는 것이다. IASB는 문단 80(1)에 따라 경영진이 영업권을 관찰하 는 기업의 최저 수준은 IFRS 8에서 정의하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 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최저 수준의 영업부문과 같 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IASB는 기업의 영업권에 대한 관찰 수 준과 기업의 내부보고 수준을 연계하는 것은 문단 BC140에서 기 술한 바와 같이 의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영업 권 손상검사 목적상 영업부문을 영업권이 관찰되는 수준보다 큰 단위로 통합하는 것이 문단 BC145~BC150에서 제시하였듯이 IAS 36의 기본 원칙에 모순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IFRS 8에서 허 용하는 비슷한 경제적 특성에 대한 통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자동적으로 배분된 영업권의 시너지 효과에서 효익이 예상되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 로, 통합된 부문들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부문임을 나타내거나 손상된 영업권의 회복에 함께 이바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IASB는 IAS 36에서 영업권 손상검사를 위해 요구하는 단 위는 IFRS 8 문단 5에서 정의한 통합 전의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 다는 것을 기술하기 위하여 2009년 4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 '에서 문단80(2)를 개정하였다.

영업권 최초 배분의 완료(문단 84와 85)

- BC151 공개초안에서는 사업결합을 한 회계연도 말 이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최초 배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 다음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말 이전에 그 영업권의 최초 배분을 끝마칠 것을 제안하였다(개정 기준서에서는 이를 요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ED 3에서는 사업결합에 관한 최초 회계처리를 사업결합을 한 회계연도 말까지 잠정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취득자가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IFRS 3에서는 이를 요구한다).
 - (1) 잠정치를 사용하여 사업결합을 회계처리한다.
 - (2) 취득한 날부터 12개월 내에 최초 회계처리를 완료한 결과로 작정치에 조정 사항이 생기면 이를 인식한다.38)
- BC152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영업권의 최초 배분을 완료하는 기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를 완료하는 기간이 왜 달라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는 종종 영업권 배분을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완료된 후까지도 수행할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업권 배분을 완료하는 데에는 더 긴 기간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사업결합원가나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부채·우발부채의 매수일현재 공정가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금액을 IFRS 3에 따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를 완료할 때까지는 확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일부 처분(문단 86)

BC153 공개초안에서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 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

³⁸⁾ IASB는 사업결합 과제의 두 번째 단계에서 잠정치에 대한 조정은,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입수된 새로운 정보로 취득일에 미리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만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조정은 취득일부터 1년을 넘지 않는 측정기간 내에 해야 한다.

록 제안하였다.

- (1) 처분손익을 산정할 때 해당 영업의 장부금액에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다.
- (2) 관련 영업권은 처분되는 영업과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 BC154 이 제안은 하나만 수정한 채로 이 기준서에 반영하였다. 이 기준서에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처분되는 영업에 관련된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다면, 처분되는 영업에 관련된 영업권을 처분되는 영업과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 BC155 공개초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제안된 손상검사 수준에 따르면, 자의적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 창출단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자산집단과 영업권을 관련짓거나 식별해 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IASB는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이 처분되는 경우에 영업권 금액의 일부가 해당 영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현금창출단위 내의 처분되는 부분이 영업을 구성하는 경우에 영업권을 배분하여야 한다.
- BC156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손상검사 목적으로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보 다 더 낮은 수준의 자산집단과 영업권을 관련짓거나 식별해 낼 수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예를 들면 피취득자가 취득자의 장부금액 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존 현금창출단위 중 하나와 통합된다고 가정하자. 또 취득자가 그 현금창출단위 내의 적자 영 업을 사업결합 거의 직후에 매각한다고 가정하자.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권 장부금액 중 어떤 금액도 처분되지 않았으며 따

라서 장부금액 중 어떤 금액도 처분손익 산정에 포함하여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의견제출자에게 동의하였다.

보고 구조의 변경(문단 87)

- BC157 공개초안에서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구성을 바꾸는 방식으로 보고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영향을 받는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을 다시 배분하고 그 배분기준으로는 현금창출단위내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상대가치 접근법을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 BC158 공개초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구성을 바꾸는 방식으로 보고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와 같은 배분문제가 생긴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에 같은 배분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BC159 그 결과로 IASB가 영업을 처분할 때의 영업권 배분방법에 관한 제안을 수정하기로 한 결정과 일치하게, 개정 기준서에서는 영업 권이 배분된 하나 이상의 현금창출단위의 구성을 바꾸는 방식으로 보고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 (1) 영향을 받는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을 다시 배분한다.
 - (2) 재배분을 할 때에는, 다른 방법이 변경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와 관련된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한다고 제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 내의 영업을 처분할 때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상대가치 접근법을 사용한다.

손상차손의 인식 및 측정(문단 88~99, 104)

공개초안 제안의 배경

BC160 공개초안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 목적으로 2단계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1단계에서는 잠재적 영업권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선별장치를 사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은 그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에만 잠재적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이 잠재적으로 손상되었다고 확인된다면, 그 다음으로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회수가능액('내재가치'로 측정됨)을 그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실제 손상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권의 내재가치는 나머지 금액, 즉 다음 (1)이 (2)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 (1)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 (2) 현금창출단위를 손상검사일 현재 사업결합으로 취득한다고 가정할 때 기업이 인식할 식별할 수 있는 자산·부채·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기업결합으로 취득하였지만 취득일에 영업권과 구별하여 인식하지 않은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은 제외)

BC161 IASB는 공개초안을 개발하면서, 사업결합 후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영업권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을 현금창출단위 전체의 회수가능액에서 분리하는 방법에 먼저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IASB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원가를 취득한 순자산에 배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영업권 최초 인식 후 그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영업권의 현행 내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순자산 측정치 일부를 해당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서 빼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사업결합 후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영업권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단 BC160(2)에서 설명한 현금창출단위의 순자산 측정치를 사용하면 영업권의

현행 내재가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BC162 IASB는 영업권 회수가능액의 가장 적절한 측정치에 대해 결정한 후, 영업권 손상검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결론과 일치하게, IASB는 상각하지 않는 영업권의 경우에 그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손상검사에 더 의존해야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영업권 손상검사를 일년에 한 번은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또 일년에 한 번하는 손상검사가 연차 검사 사이에 영업권 손상 징후가 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이나 상황의 변화에 대한 경영자의 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영업권의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도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BC163 IASB는 손상검사의 빈도에 대해 결정을 한 후 제안된 검사가 원가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 우려는 (영업권의 내재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현금창출단위를 손상검사일 현재 사업결합으로 취득한다고 가정할 때 기업이 인식할식별할 수 있는 자산·부채·우발부채 각각의 공정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주로 관련되어 있다.
- BC164 따라서 IASB는 영업권 손상검사의 1단계로서 SFAS 142에 있는 것과 비슷한 선별장치를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SFAS 142에 따 르면 영업권에 손상검사를 하는 경우에 먼저 손상검사 목적으로 영업권이 배분된 보고단위의 공정가치를 그 장부금액과 비교한다. 보고단위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영업권은 손상되 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영업권의 내재 공정가치는 보고단위의 공정 가치가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문단 BC160에서 기술하

는 접근법과 일치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

IASB의 재심의

BC165 많은 의견제출자가 영업권 손상검사에 2단계 접근법을 채택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제안된 손상검사 중 두 번째 단계와 영업권 손상차손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의견제출자는 제안된 접근법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개념적 주장을 하였다.

- (1) SFAS 142에 있는 2단계 접근법의 일부 측면만을 취함으로써 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서로 뒤섞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영업권의 내재가치를 현금창출단위 공정가치와 그 안에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공정가치 순액의 차이로 측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현금창출단위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과 그 안에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공정가치 순액의 차이로 측정하여 영업권 측정치는 개념적으로 공정가치도 아니고 회수가능액도 아닌 결과를 가져온다. 이때문에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그 내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 (2) 특히 영업권은 다른 많은 자산과는 달리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금창출단위 내 다른 자산들을 개별적이 아니라 현금창출단위 전체의 일부로 보는 경우에, 영업권만 별도의 손상검사를 고려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개정 전 IAS 36에서는 일련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함께 운영되는 자산집단에서만 얻을 수 있다면, 손상차손은 그 자산집단 전체에 대해서만 검토해야지 집단 내에 있는 개별 자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
- (3) 다른 자산과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는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은 그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해 별도로 측정하여

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 나중에 IASB가 그러한 손상차손 측정 접근법이 다른 자산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하면 IASB가 영업권에 대해 제안된 2단계 접근법을 채택하면 사실상 다른 모든 자산의 손상 측정에도 '개별자산·공정가치'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스스로 구속하게 될 수 있다. 이문제에 관한 결정은 손상검사의 적절한 측정 목적을 광범위하게 다시 고려하는 과정에서만 내려져야 한다.

- (4) 현금창출단위 내 다른 자산은 현금창출단위 전체의 일부로만 고려되는데 영업권은 내재가치 계산을 사용하여 별도로 손 상검사를 하면 비대칭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즉 미인식 영업권 때문에 다른 자산의 장부가치는 손상에서 보호되지만, 반대로 다른 자산의 미인식 가치 때문에 영업권 장부금액은 손상에서 보호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다른 자산의 미인식 가치가 나중에라도 인식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합리해보인다. 더욱이 영업권의 손상차손이 현금창출단위 내에 있는다른 자산의 미인식 가치를 초과할 때마다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그 회수가능액보다 적어질 것이다.
- BC166 또 의견제출자, 현장 방문 참여자, 북미 전문가 회의 참여자들은 제안된 2단계 접근법 적용의 실무 적용 가능성과 적용원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였다.
 - (1) 많은 기업이 정기적으로 두 번째 단계의 손상검사를 수행해야할 것이며 그 결과로 현금창출단위를 손상검사일 현재 사업결합으로 취득한다고 가정할 때 기업이 인식할 식별할 수 있는 자산·부채·우발부채 각각의 공정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록 일부 기업에는 (예를 들면 기업의 유의적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일이 유의적인 실무적 어려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의 기업은 꽤 광범위한 규모로 그리고 유의적인 원가

를 들여 현금창출단위의 자산 일부나 전부에 대해 독립된 평가인을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내부적으로 창출되었지만 인식되지는 않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식별하고 측정하는 경우에 특히 그렇다.

- (2) 복수의 현금창출단위에 이바지하는 다품종 제품 시설을 운영하는 다부문 제조기업의 경우에 손상된 현금창출단위 안에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자산·부채·우발부채 각각의 공정가치를 실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기업의 일차적 부문기준은 지역(예: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이고 이차적 부문기준은 제품집단(예: 백신, 무처방의약품, 처방약품, 비타민과 식이요법보충제)이라고 가정하자.39) 또 추가로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 (가) 영업권을 내부관리 목적으로 관찰하는 최저 수준은 일차적 부문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예: 북미에 있는 비타민 사업 부)이며 따라서 영업권의 손상검사도 이 수준에서 한다.
 - (나) 각 지역에 있는 공장과 유통시설에서는 모든 제품집단을 생산하고 유통시킨다.
 - (다) 영업권을 포함한 각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각 공장 및 유통시설의 장부금액은 관련되는 각 제품 집단에 배분하였다.

예를 들면 북미 비타민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친다면 이 단위의 영업권 내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북미 지역의 모든 자산에 가치평가를 한 다음에 각 자산 공정가치의 적절한 부분을 북미 비타민단위에 배분해야 할 것이다. 이 가치평가에는 엄청난 원가가 들 가능성이 높으며 합리적 기간에 평가를 완료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현장 방문 참여자들의 추정치는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포함). 부문 수준에서 영업권을 관찰하고 영업권 손상검사를 하는 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실행 불가능의 정도가 훨씬 더 클 것이다.

^{39) 2006}년에 IAS 14를 IFRS 8로 대체하였다. IFRS 8에서는 일차적, 이차적 부문정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문단 BC150A 참조).

- BC167 IASB는 위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다음 사실에 주목하였다.
 - (1) 현장 방문에 참여한 미국 상장기업과 북미 전문가 회의 참여 자 중 SFAS 142에 따라 두 번째 단계의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만 했던 모두가 유의적인 원가를 들여 독립된 평가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 (2)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손상모형이 비록 SFAS 142의 2단계 접근 법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의 이유에서 SFAS 142에 따른 손상검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회계기준 사이의 합치를 이 끌어 낼 것 같지는 않다.
 - (가) IAS 36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이지 공정가치는 아니다. 미국 상장기업 중 많은 기업은 IAS 36에 따라 사용할 회수가능액 측정치가 SFAS 142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와는 다르다고 말하였다.
 - (나) SFAS 142에 따라 영업권 손상검사를 하는 수준은 종종 IAS 36에 따라 손상검사를 하는 수준보다 높을 것이다. 현장 방문에 참여한 미국 상장기업 중 다수는 IAS 36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의 이유 때문에 SFAS 142에 따르는 경우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영업권 손상검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① SFAS 142에서는 영업권을 손상검사 목적으로 '밀어내릴' 수 있는 수준에 제한(영업부문 한 단계 아래 수준)을 두고 있다.
 - ② SFAS 142에서는 경제적 특성이 비슷한 구성단위끼리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참여자는 IAS 36의 접근법이 재무제표이용자와 경영진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만장일치로동의하였다. 또 IASB는 북미 전문가 회의 참여자 중 다수(감사법인 참여자의 경우에는 감사대상기업)는 SFAS 142에서 정의한 보

고단위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영업권 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도 구할 수 있다고 말한 데 주목하였다. 이 참여자 중 다수는 그렇게 더 낮은 수준의 단위에 영업권 손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에도 이 손상차손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다른 단위와 통합하면 손상차손이 '사라지는' 경우에 SFAS 142에서 그러한 영업권 손상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

BC168 또 IASB는 IAS 36이 SFAS 142와는 달리 현금창출단위 내 모든 자산(영업권 포함)의 손상검사를 통합하는 손상모형에서 출발한다 는 점에 주목하였다. US GAAP이 영업권을 제외한 장기성자산의 손상검사를 하기 위해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 기준으로 선별장 치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IAS 36에서는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 다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영업권이 배분된 '더 큰'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할 때, 그 안에 포함된 자산이나 '더 작은' 현금창출단위에서 손상 징후가 포착된다면 그 자산이나 더 작은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먼저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IASB는 IAS 36의 문맥상 다 른 자산과 더 작은 현금창출단위 모두에 대한 손상검토를 한 다 음에야, 더 큰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이 그 단위에 포함된 영업 권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기업이 US GAAP에 따른다면 이러한 가정은 합리적이지 못할 것이다.

BC169 IASB는 SFAS 142의 접근법에 완전히 합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그러나 IASB는 합치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SFAS 142의 접근법에 따르면 그보다 더 낮은 수준(영업권을 손상에서 보호해 주는 '여유'가 제거될 것이다)에서 영업권 손상검사를 하고 개정 전IAS 36의 1단계 접근법에 따라 영업권 손상차손 금액을 측정하는 접근법보다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할 것을 우려하였다.

BC170 IASB는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는 데에 따르는 복잡성과 원가가 그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개정 전 IAS 36에 포함되었던 영업권 손상 측정에 관한 접근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초과액 중 영업권 장부금액을 영(0)이 될 때까지 감액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창출단위 내 다른 자산에 각각의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한다.

2008년 IFRS 3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부록 C)

BC170A IFRS 3 개정(2008년 전부 개정)의 결과로 이 기준서의 부록 C 요구사항과 관련 사례가 비지배지분의 두 가지 측정방법(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법과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비례지분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또 부록 C는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개정되었다.

손상검사의 시기(문단 96~99)

BC171 영업권 손상검사에 드는 원가를 줄이고 공개초안의 제안과 일관되도록, 이 기준서에서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연차 손상검사를, 매년 같기만 하다면, 회계연도 중어느 때에라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로 다른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는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일부나 전부가 해당 회계연도 중에 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것이라면, 해당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검사는 해당 회계연

도 말 전에 해야 한다.

- BC172 IASB는 때때로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결합을 처음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그 '과 다지급(overpay)'한 금액을 인식함으로써 영업권 금액이 투자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 경우에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한 회계연도에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사업결합에 관하여 충실하게 표현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 BC173 IASB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 검사를 회계연도마다 하되 회계연도 중 어느 때에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만 둘 경우에 기업이 위와 같은 영업권 손상차손이 있음에도 사업결합을 한 다음 회계연도까지 인식을 지연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기준서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일부나 전부가 해당 회계연도 중에 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것이라면, 해당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검사는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손상검사의 순서(문단 97)

- BC174 이 기준서에서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를 구성하는 자산(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영업권이 포함된 해당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와 같은 시기에 하는 경우에 그 밖의 자산(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앞서 할 것을 요구한다.
- BC175 IASB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을 구성하는 자산이나 더 작은 현금창출단위에 손상 징후가 있으면

그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 집단과 같은 시기에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 여부와 그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 안에 있는 자산 또는 더 작은 현금창출단위에 관련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먼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회수가능액 계산 결과의 이월(문단 99)

BC176 이 기준서에서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검사와 일치하도록 문단 99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에 대해 최근 실시한 상세한 계산 결과를 과거 회계기간에서 이월하여 당기 손상검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C177 영업권에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IASB의 결정에서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많은 기업이 실제로 회수가능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서도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더 많다고 결론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IASB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결론과 일치하도록, 이 경우는 최근에 회수가능액을 산정한 결과가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였고 그 이후로 어떠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서 손상차손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에 대해 과거 회계기간에 실시한 상세한 계산 결과를 이월하여 당기 손상검사에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손상검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손상검사에 드는 원가

를 유의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현금창출단위의 자산에 손상차손 배분(문단 104~107)

- BCZ178 IAS 36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배분에 관하여 E55와 다른 요구사항을 두고 있다. 특히 E55에서는 손상차손을 다음과 같이 배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 (1) 먼저 영업권에 배분한다.
 - (2) 두 번째로 활성시장이 없는 무형자산에 배분한다.
 - (3) 세 번째로 순매각가격40)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자산에 배분하다.
 - (4) 마지막으로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그 장부금액 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BCZ179 위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가치가 가장 주관적인 자산에 배분하여야 한다. 영업권과 활성시장이 없는 무형자산이 바로 그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 활성시장이 없는 무형자산(IASC는 브랜드명, 출판제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은 영업권과 비슷하다고 보았다.
- (2) 자산의 순매각가격이 장부금액에 못 미친다면 다른 자산이 아 니라 바로 그 자산에 손상차손 일부를 배분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 BCZ180 E55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위 제안에 반대하였으며 그 논 거는 다음과 같다.
 - (1) 활성시장이 없는 모든 무형자산이 영업권과 비슷하지는 않다. (예: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권리). 또 무형자산의 가치가 유형

^{40)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하였다.

자산(예: 전문화된 공장 및 설비)의 가치보다 항상 더 주관적이지도 않다.

(2) 현금창출단위의 개념 속에는 현금창출단위 내 자산을 개별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취급하려는 접근법이 내포되어 있다.

IASC는 위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여, E55에서 무형자산과 순매각 가격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자산에 손상차손을 배분하도록 한 제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BCZ181 IASC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을 손상되었음이 명백한 자산에 먼저 배분하도록 한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IASC는 손상되었음이 명백한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그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까지 추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모든 자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이 명백하게 손상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문단 110~123)

BCZ182 IAS 36에서는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마지막으로 인식된 이후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가 변동된 경우에만 환입하도록 요구한다.

BCZ183 손상차손환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1) 손상차손환입은 역사적원가 회계시스템에 배치된다. 장부금액이 감소하면 회수가능액이 자산의 새로운 원가기준이 된다. 결과적으로 손상차손을 환입하면 자산을 평가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많은 경우에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재평가에 사용되는 측정기준과 비슷하다. 따라서 손상차손환입은 금지하거나 재평가로서 자본(재평가잉여금)에 직접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손상차손을 환입하면 보고이익의 변동성이 커진다. 주기적인

단기 이익측정치가 장기성자산 측정치의 미실현손익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 (3) IAS 36에 따르면 손상차손을 환입하더라도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보다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손상차 손환입의 결과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환입된 금액과 수정된 장부금액 모두가 정보로서 어떠한 의미도 없다.
- (4) 많은 경우에 손상차손을 환입하면 암묵적으로 내부창출영업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 (5) 실무에서 손상차손환입을 남용하여 '이익조정'에 사용할 소지 가 있다.
- (6) 사후적으로 손상차손을 환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워가가 많이 든다.

BCZ184 IASC가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Framework⁴¹)에 부합하고, 전에는 자산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 되지 않았던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나중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다시 평가된 것이라는 관점과도 일치한다.
- (2) 손상차손환입은 재평가가 아니며, 환입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감가상각(상각)하였을 경우의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역사적원가 회계시스템에 부합한다. 따라서 손상차손환입은 손익계산서에 인식하여야 하고 감가상각후 역사적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재평가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다.
- (3) 손상차손은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측정한다. 손상차손의 측정치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면 이는 추정의 변경과 비슷하다. 국제회계기준 제8호(IAS 8) '당기순손익, 중대한 오류와 회계 정책의 변경(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42)

⁴¹⁾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 및 전면개정 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을 (개) 변경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간, (내) 변경된 기간과 미래 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간과 미래 기간의 순손익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 (4) 손상차손을 환입하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자산 또는 자산집단 의 미래 효익의 잠재력에 대해 더 유용한 지표를 제공하게 된 다.
- (5) 더는 관련이 없는 과거 손상차손이 감가상각액이나 상각액에 더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당기와 미래 기간의 영업결과를 더 적정하게(fairly) 표시하게 될 것이다. 손상차손환입을 금지하면, 유의적 손상을 한 회계연도에 인식함으로써 후속 기간의 감가상각액(상각액)을 낮추어 이익을 높이려는 회계 남용을 초 대할 수 있다.
- BCZ185 E55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과반수가 손상차손환입에 관한 IASC 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 BCZ186 IAS 36에서는 단순한 할인액의 상각만으로는 손상차손환입 인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IASC는 단지 실무적 이유 때문에 이 요구사항을 지지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에 나중에는 매년할인액 상각 때문에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산의 감가상각 형태가 사용가치 형태와 다르기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IASC는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정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손상차손의 인식 후 매년 할인액 상각을 인식함으로써 얻는 효익이 소요 원가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가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할인액 상각의 영향이 인식되는 환입액에 포

⁴²⁾ 국제회계기준 제8호(IAS 8) '당기순손익, 중대한 오류 및 회계정책의 변경'을 2003년에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로 대체하였다.

함된다.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문단 124)

BC187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내용과 일관되게, 이 기준서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환입 인식을 금지한다. 개정 전 IAS 36에서는 다시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예외적인 외부 사건에 의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이후 그러한 사건의 영향을 반전하는 외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 손상차손을 환입하도록 요구하였다.

BC188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 대부분이 영업권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금지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업의 통제 밖에 있는 특정 사건으로 손상차손이 생기는 상황에 한정하여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을 다른 자산의 손상차손환입과 같은 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C189 IASB는 IAS 36을 개정하면서, IAS 38에서 내부창출영업권의 인식을 금지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영업권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이 허용된다면, 영업권 회수가능액의 후속 증가액 중에서 얼마만큼이 현금창출단위 내의 내부창출영업권의 증가가 아니라 취득한 영업권의 회복에 귀속되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ASB는 이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취득한 영업권과 내부창출영업권이 함께 같은 현금흐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취득한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이 나중에 증가하더라도 내부창출영업권의 증가액과 구분할 수 없다. 설사 손상차손의 원인이 되었던특정 외부 사건이 반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반전의 효과만큼 취득한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190 내부창출영업권이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권에 대해 손상 차손환입의 인식을 금지할 경우에 일부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IASB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손상검사의 경우에 내부창출영업권 때문에 영업권 장부금액이 손상에서 보호받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내부창출영업권의 '은밀한' 자본화라고 설명한다.

BC191 그러나 IASB가 영업권이 내부창출영업권 때문에 손상차손의 인식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영업권 손상차손환입을 허용할경우에 내부창출영업권이 직접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비하면적었다. 문단 BC135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ASB는, 사업결합 후내부창출영업권 때문에 손상차손이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여유를제거하는 영업권 손상검사를 설계하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관점을견지하고 있다.

영업권이나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시(문단 134와 135)

공개초안 제안의 배경

- BC192 공개초안에서는 장부금액에 영업권이나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 산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정보를 공시하 도록 제안하였다. 그 정보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 (1) 영업권의 장부금액과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 (2)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한 근거(사용가치나 순매각 가격)
 - (3)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4)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측정에 사용한 주요 가정과 추정 치, 그리고 이 가정과 추정치의 변동에 대한 회수가능액의 민

감도

- BC193 기업이 IAS 14에 따라 부문정보를 보고하는 경우에 공개초안에서는 이 정보를 기업의 일차적 보고형식에 기초한 각 부문별로 합산하여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에서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그 정보를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것도 제안하였다.
 - (1)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 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
 - (2)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산정 근거가, 장부금액에 영업권이 나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이 포함된 부문의 또 다른 현금 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근거와 다른 경우
 - (3) 경영진이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근거로 한 주요 가정의 특성 또는 가정치, 성장률이 장부금액에 영업권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이 포함된 부문의 또 다른 현 금창출단위에 사용한 것과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
- BC194 IASB는 공개초안에서 위와 같은 공시 요구사항을 제안하기로 결정하면서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을 상각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장부금액이 회수가능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에 더 의존해야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손상검사의 성격상 그러한 자산의 장부금액 자체와 그 장부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보통 경영진의 추정으로만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영업권 및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손상검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 첫 단계로서 FRS 11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손상(Impairment of Fixed Assets and Goodwill)'에 있는 것과 비슷한 후속 현금흐름 검증을 개정 기준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후속 현금흐름 검증

BC195 FRS 11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를 할 때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현금흐름 추정을 나중에 확인해 보기위하여 후속 현금흐름 검증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FRS 11에따르면 회수가능액이 사용가치에 기초하는 영업권에 손상검사를한 후에는 5년 동안 실제로 달성된 현금흐름을 당초 예측과 비교하여야 한다. 만약 실제 현금흐름이 당초 예상에 훨씬 못 미쳐서당초 사용가치 계산에 실제 현금흐름을 사용하였더라면 과거 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초의 손상계산은 실제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다시 수행해야 한다. 다만 그밖의 다른 현금흐름과 가정(실제 현금흐름 발생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달라지는 것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주요 현금유입이 1년 뒤로 미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은 바꾸지 않는다. 손상이 회복되지 않았거나 FRS 11에서 규정한 영업권 손상차손환입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확인된 손상은 당기에 인식하여야 한다.

BC196 IASB는 개정 기준서에 위와 비슷한 검증을 포함하는 것을 지지하는 다음의 주장에 주목하였다.

- (1) 그러한 검증절차가 있으면 기업이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지나 치게 낙관적으로 현금흐름 추정을 함으로써 손상차손 인식을 회피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여 영업권 손상검사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 (2) 그러한 검증절차가 있으면 실제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예측 현금흐름보다 적을 경우에 현행 추정치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 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BC197 그러나 후속 현금흐름 검증은 기업이 영업권 감액을 회피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만 설계된 것이다. IASB는 구조조정 부담 전가에 관한 '대청소 현상(big bath)'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대차대조표를 의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 근거도 없이 영업권을 감액하려는 기업 때문에 재무보고의 질과 관련된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 IASB는 다음 사실도 알게 되었다.

- (1) 검증의 초점을 현금흐름에 맞추면 사용가치 측정에 관여하는 다른 요소를 무시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가치 측정시스템에서 표현의 충실성이 있는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 IASB는 검증할때 수행하는 재계산에 사용가치 측정에 관련된 다른 요소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더욱이 그러한 다른 요소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도 검증에 추가하면, 검증이 사실상 손상검사후 각 5 회계연도마다 사용가치를 전반적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변질될 것이다.
- (2) 현금흐름 검증에 따르면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나머지 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과 할인율·성장률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인식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그 금액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가상의 금액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현행 금액에 대한 추정치도 아니고 최종적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치도 아니다.
- (3) 손상검사 후 각 5 회계연도마다 현금흐름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면 기업은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각각에 대해 5년치 계산 결과를 관리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흐름 검 증이 이해할 수 있거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산출해 내 지도 못하면서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고, 특히 기업 이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BC198 따라서 IASB는 공개초안에서 후속 현금흐름 검증을 제안하지 않

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여전히 영업권 및 비한정 내용 연수 무형자산 손상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 기 때문에 공시 요구사항으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로 결 정하였다.

개정 기준서에 포함된 공시 요구사항

BC199 공개초안을 개발하면서 IASB는, Framework에서 신뢰성을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 정보가 갖춰야 할 주요 질적특성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았다. 정보가 신뢰성이 있으려면 중요한 오류와 편의가 없어야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Framework에서는 목적 적합성을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하기 위하여 정보가 갖춰야 할 또 다른 주요 질적특성으로 인식한다. 정보가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을 판단하는 데나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BC200 IASB는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는 그 자체로서 목적 적합하며, 다른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질수록 그 정보의 목적 적합성은 높아진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충당부채로 인식된 금액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과거 사건(현재의무를 생기게하는 과거 사건의 경제적 결과)과 미래 사건(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효익의 미래 예상 유출금액) 모두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목적 적합하다. 따라서 IAS 37에서는 충당부채의 분류별로 경제적 효익 예상 유출금액의 시기 및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관한 정보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이미 충당부채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미래 사건에 관한 주요 가정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BC201 IASB는 다른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는 그 자체로서 목적 적합하기 때문에, 경영진이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의 신뢰성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BC202 또 IASB는 그러한 공시는 영업권 및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손상검사의 신뢰성 평가에 후속 현금흐름 검증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BC203 다음으로, IASB는 영업권 및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장부금 액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진이 사용한 추정치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목적과 주석으로 공시되는 관련 정보의 분량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 BC204 IASB는 다음과 같이 요구함으로써 주석공시의 목적과 그 분량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 (1) 기업의 일차적 보고형식에 기초한 것으로서 장부금액에 영업 권이나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부문별로 합산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 (2) 그 부문 안에 있는 특정 현금창출단위에 관한 정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합산된 정보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주석 으로 공시한다.
 - (가)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근거(순매각가격이나 사용가치), 방법, 주요 가정이 부문 안에 있는 다른 현금창출 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것과 다르다.
 - (나) 영업권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비교할 때 현금창출단위 안에 있는 영업권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유의적이다.

IASB의 재심의

BC205 의견제출자와 현장 방문 참여자의 의견을 고려한 후에 IASB는,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도움이 되는 정보는 그 자체로서 목적 적합하며, 그 다른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질수록 그 정보의 목적 적합성은 높아진다는 기존의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영진이 영업권 및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진이 사용한추정치의 신뢰성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IASB는 현장 방문 참여자거의 모두와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을 상각하지 않을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에 더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가 손상검사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는 IASB의 결론을 분명히 지지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06 그러나 현장 방문 참여자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제안된 공시사항이 부문 수준에서 당초 IASB가 적절하다고 예상했던 정도로 의미있게 합산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 결과 각 부문별로 합산하여 공시하되 문단 BC193에서 정하는 상황에서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별도로 공시하도록 한 제안이 공시의 목적과 그분량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이루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BC207 IASB는 제안된 공시사항이 당초에 의도했던 목적, 즉 재무제표이 용자가 영업권 및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손상검사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넘어서고 있다고 현장 방문 참여자와 의견제출자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 공

감하였다. 예를 들면 현장 방문 참여자와 의견제출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1) 회수가능액 계산 과정을 압축하여 의미 있는 공시로 만들어내 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전형적인 회수가능액 계산은 일반적 으로 복잡하며 보통 회수가능액에 대해 하나의 추정치만을 산 출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수가능액이 하나로 산정되는 경 우는 일반적으로 회수가능액의 범위 하한치가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정보, 특히 민감도 분석에 관한 정보가 적시에 산출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 (2) 제안된 정보, 특히 회수가능액이 근거하는 주요 가정치와 그 민감도를 공시하면 상업적으로 기업에 유의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가정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 그 이사회나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서 양적 공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소송위험이 커지면 경영자가극도로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자산을 부적절하게 감액하게 되거나, 경영진이 모든 주요 가정의 개발과 회수가능액 계산을 독립된 전문가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더욱이많은 현장 방문 참여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공시할 경우에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자신들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BC208 따라서 IASB는 다음 두 가지의 상호 연관된 문제를 고려하였다.

- (1) 제안된 공시사항이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넘어서고 있다면, 재무제표이용자가 영업권 및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손상검사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 (2)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손상검사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과 그 공시의 분량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가?

BC209 IASB는 재심의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1) 영업권 및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손상검사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각 부문별로 합산하여 공시하되 특정 상황에는 부문 내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별도로 공시하도록 한제안을 더는 고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이 기준서에서는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기업 전체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에 해당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해서만그러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2)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시하도록 한 제안을 더는 고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이 기준서에서는 경영진이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근거로 한 주요 가정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이 있으면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만 이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3) 경영진이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근거로 한 주요 가정치와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 집단)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주요 가정치의 변동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변수를 고려한 것임)을 공시하도록 요구한 제안을 더는 고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이 기준서에서는 경영진이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주요 가정에 대한설명과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만약 차이가 나면 그 차이의 내용 및 이유를 공시하도록 요구

한다. 그러나 주요 가정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이 있으면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이 회수가 능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요 가정치와 현금창출단위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주요 가정치의 변동으로 영향을 받는 회수가능액 측정에 사용된 다른 변수를 고려한 것임)을 공시하여야 한다.

(4) 또 장부금액에 포함된 영업권이나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의 금액이 개별적으로는 유의적이지 않지만 서로 합산하면 유의적이 되는 다수의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 능액을 산정할 때 목적 적합한 주요 가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년도 *IFRS 연차 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른 변경 사항⁴³⁾

BC209A IASB는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가치를 사용할 때 IAS 36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이 순공정가치를 사용할 때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비슷한 평가방법(할인된 현금흐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요구사항의 차이는 불일치로 보인다. 따라서 IASB는 2008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의 일부로서, 할인된 현금흐름을 회수가능액 추정에 사용할 때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에 같은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FRS 13에 따른 변경 사항

BC209B IASB는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을 개발하면서 손상된 자산 에 대한 IFRS와 US GAAP(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

⁴³⁾ BC209A는 2008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 따라 이 제목과 문단을 추가하였다.

여 손상검사하도록 요구함)의 공시사항의 차이를 최소화 해달라는 재무제표이용자의 요청을 받았다. IASB는 IAS 36의 공시 요구사항은 회수가능액이 사용가치나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는지에 상관없이 같은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손상된 자산에 대한 정보의 공시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회수가능액을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에 기초하여 (IFRS 13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정보가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정보와 유의적으로 다를때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BC209C 비록 IFRS와 US GAAP이 서로 손상모형은 다르지만, IASB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손상된 자산에 대해 (IAS 36에서 현재 요구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다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IFRS와 US GAAP의 합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IFRS를 적용하는 기업과 US GAAP을 적용하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1)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 (2)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되는 수준(수준 1, 2, 3)
- (3) 가치평가기법의 변경과 그 변경의 이유(해당되는 경우)
- (4)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유의적인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사용가치에 대한 공시에 상응하는 조정도 포함)

BC209D 또 그 공시는 IFRS 13과 US GAAP에서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요구하는 공시와 일치한다.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BC209E IFRS 13을 공표하면서, IASB는 손상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IAS 36의 공시 요구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문단 BC209B~BC209D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손상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공시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경우에 손상자산의 회수가능액 측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자는 IASB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또 IASB는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와 사용가치에 대한 공시사이의 균형 유지를 의도하였다.

BC209F IFRS 13을 공표한 후에, IASB는 IFRS 13에 따라 개정된 IAS 36의 개정 사항 중 하나가 IASB가 의도하였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손상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를 요구하는 대신에 해당 개정에서는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에 각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BC209G 결과적으로 IASB는 2013년 1월에 공시 요구사항의 범위에 대한 IASB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36의 문단 130과 134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 공개초안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Recoverable Amount Disclosures for Non-Financial Assets, 이하 'ED/2013/1'라 한다)'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이유로, US GAAP의 손상자산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IASB는 손상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기초하는 경우에 그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문단 130(6)도 개정하기로 제안하였다. 문단 BC209C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 IFRS와 US GAAP의 손상모형이 다르지만, IASB는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손상자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공시와 US GAAP을 적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공시의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209H IFRS 13에 따라 결과적으로 개정된 사항 중 하나는 IAS 36 문단 134(5)(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 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에 각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관련)의 개정이었다. 그 개정은 공정 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공정가치 측정치가 분류되는 수준에 대한 공시와, 그러한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가치평가기법을 바꾸었다면 그 변경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였다. ED/2013/1를 개발하면서, IASB는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것은 IFRS 13의 공정가치 공시와 IAS 36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공시를 맞추기 위한 의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IASB는 문단 134(5)의 공시 요구사항을 유지하고, 문단 BC209G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단 130(6)에 비슷한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BC209I ED/2013/1를 개발하면서, IASB는 IAS 36의 공시 요구사항의 표현(이 기준서에서는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과 IFRS 13의 측정 요구사항의 표현(해당 기준서에서는 '투입변수'라는 용어를 사용)이 일치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IFRS 13에서 '투입변수'를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하게될 가정…"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의 뜻이 다른 것같지는 않다고 결론지었다. 또 IASB는 제안된 개정이 IAS 36에서 공시를 요구하는 정보의 의미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를 원했다. 이 분석에 기초하고 ED/2013/1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이 '가정'이라는 용어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IASB는 최종 개정에서 이 용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BC209] ED/2013/1를 개발하면서, IASB는 이 제안된 개정 사항이 2012년 5월에 발표한 공개초안 'IFRS 2010-2012 연차 개선 (Annual Improvements to IFRSs 2010 - 2012 Cycle, 이하 'ED/2012/1'라 한다)'에서 제안한 IAS 36 문단 130(6)의 개정과 중복되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ED/2012/1의 제안 배경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손상자산의 회수가능액을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당기와 전기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문단 130(6)에 추가함으로써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총 64명의 의견제출자가 이 제안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들 거의 모두가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IASB는 ED/2013/1에 이 제안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BC209K 총 74명의 의견제출자가 ED/2013/1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제안된 개정 사항을 지지한 반면에, 소수의 의견제출자들은 이 개정 내용으로 손상차손을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회수가능액으로 산출하는 경우에 요구하는 공시보다, 같은 손상차손을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회수가능액으로 산출하는 경우에 더 폭넓은 공시를 요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IASB는 이와 같이 추가공시를 요구하기로 한 결정이, 이미 IFRS 13의 공표에 따라 IAS 36을 처음 개정하였을 때 이루어졌음에 주목하였다. BC209G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결정은 이 개정 사항이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표시되는 공시와 US GAAP을 적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표시되는 공시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개선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BC209L 또 IASB는 IFRS 13을 개발하는 동안에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

치에 기초하여 산정한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 전부를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한 회수가능액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손상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치가 분류되는 수준을 공시하는 요구사항은 사용가치에 기초한 측정치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또 IASB는 문단 130(6)의 개정은 손상자산에 대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문단 134(5)의 공시 요건(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에 각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에 맞추는 데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BC209M 또 ED/2013/1는 문단 130에서 '중요한(material)'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개발하면서, IASB는 문단 130의 공시 요구사항이 회계기간 중 '중요한'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자산(영업권 포함)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모든 국제회계기준에는 IAS 1(문단 31 참조)과 IAS 8에 기술된 중요성의 개념이적용되기 때문이다. ED/2013/1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이 용어의 삭제에 반대하였다. 이 용어를 삭제하면, 문단 130의 공시요구사항을 회계기간 중 중요한 손상차손이 인식되거나 환입되는 때에만 적용하는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문단 130의 '중요한'이라는 용어가 삭제되면 중요하지 않은 항목을 총계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문단 131의 요구사항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BC209N IASB는 문단 130의 공시 요구사항의 범위를 변경할 의도가 없었다. 또 IASB는 문단 130의 용어 '중요한'의 삭제가 문단 131의 공시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ED/2013/1에서 표시된 것처럼, 용어 '중요한'을 삭제하는 이유가 여전히 타당하므로 그 결과로 최종 개정에서 이 용어를 삭제하기로 확정하였다.

BC209O IASB는 최종 개정에서, 문단 130(6)의 마지막 문장에 대한 ED/2013/1의 제안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문장은 "… 기업은 IFRS 13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IASB는 IAS 36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인 자산은, IFRS 13에서 이미 공시 요구사항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로 IASB는 문단 130(6)의 문장은 불필요하며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최종 개정에서 삭제하기로 결론지었다.

BC209P ED/2013/1에서는 문단 130(2)의 요구사항의 사례와 130(6)(나)에서 제안된 요구사항의 사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이 사례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기초한 손상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대해 요구되는 공시 사항을 모두 보여주지않았으므로 이 사례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그들의 견해는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만이 오직 요구하는 공시 사항이라고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해의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IASB는 이 의견에 기초하고, 공개초안에포함한 사례와 IFRS 13의 사례 15가 비슷하다는 점을 주목하였기때문에, 최종 개정에서는 공개초안의 사례를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209Q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IASB는 사소한 수정을 전제로 최종 개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과 규정(문단 138~140)

BC210 기업이 IFRS 3에서 정하는 시행일 전에 IFRS 3을 적용하면 IAS

36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IFRS 3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81~184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IASB의 심의 내용을 요약한 다.44)

- BC211 위 경우를 제외하면 IAS 36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사업결합 합의일이 2004년 3월 31일 이후인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 및 무형자산에 적용한다.
 - (2) 그 밖의 모든 자산에는 2004년 3월 3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 BC212 IASB는 문단 BC211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다음 내용을 요구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 (1) 개정된 영업권 손상검사를 소급 적용하는 것
 - (2) 영업권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소급 적용 하여 개정 기준서가 공표되기 전에 인식하였던 환입액을 제거 하는 것
- BC213 IASB는 개정된 영업권 손상검사를 소급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1) 많은 경우에 필요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더는 구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 (2) 과거에 손상검사를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추정치를 산정해 야 하고, 그 결과 사후 판단의 영향을 과거 손상검사일에 존재 하였던 요소에서 어떻게 분리해 내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 BC214 IASB는 영업권에 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영업권 손상검 사를 일 년에 한 번은 하도록 요구하면, 시행일 전에 취득하여 인 식한 모든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기준서가 시행되는 첫 회계

⁴⁴⁾ IASB는 2008년에 전부 개정된 IFRS 3을 공표하였다. 이 문단은 2004년에 공표한 IFRS 3에 관련된 것이다.

연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BC215 IASB는 특히 영업권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을 금지한 이유(문단 BC187~191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개정 기준서 시행일 전에 인식한 환입액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종전에 영업권이 상각되었고, 영업권 손상검사를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준서가 시행되는 보고기간 말에 영업권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기준서를 전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영업권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BC216 사업결합 과제의 첫 단계 목적 중 하나는 영업권 회계처리에 국 제적 합치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에 IASB는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하여 SFAS 142와 비슷한 경과 규정을 IAS 36에도 포함해야 하 는지를 고려하였다. SFAS 142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를 일 년에 한 번은 하되, 보고단위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보다 낮추지 않을 가능성보다 낮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이 변화 되면, 연차 검사일 사이에서도 영업권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한 다. SFAS 142에 있는 경과 규정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를 전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SFAS 142 전체를 적용하는 회계연 도의 기초를 기준으로 경과적 영업권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 다. 경과적 검사 결과로 인식되는 손상차손이 있으면 이는 손상차 손이 아니라 회계정책 변경 효과로 인식한다. SFAS 142에서는 경 과적 검사에 더하여 SFAS 142 전체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는 영업권에 대해 연차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달리 말 하면 영업권에 대한 경과적 연차 손상검사는, 기업이 매 회계연도 초를 영업권 연차 손상검사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최초 회계연

도의 연차 검사로 볼 수 없다.

- BC217 FASB는 SFAS 142가 공표되기 전의 US GAAP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보지 않았던 영업권이 SFAS 142 전체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날, SFAS 142의 손상검사를 적용할 경우에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개정 전 US GAAP에 따르면 기업은 일반적으로 할인되지 않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사용하여 영업권 손상검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FASB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1) 방법의 변경으로 경과적 손상차손이 생기는 경우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손상차손을 회계정책 변경에서 생기는 것으로 처리하면 표현의 충실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 (2) 경과적 손상차손을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고해야 한다면 영업 권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는 SFAS 142가 처음 적용되는 날 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BC218 IASB는 개정 전 IAS 36에 따르면 20년을 넘는 기간에 걸쳐 상각되는 영업권은 적어도 회계연도 말마다 손상검사를 해야 하였음을 보았다. 20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영업권은 손상 징후가 있으면 대차대조표일에 손상검사를 해야 하였다. 개정기준서에서는 영업권에 대해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되손상 징후가 있다면 그보다 더 자주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또 개정 기준서에서는 IAS 36에 있던 다음 항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 (1) 손상 징후들
 - (2) 회수가능액의 측정치(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
 - (3)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그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 에 먼저 배분하여 영업권 장부금액을 감액하라는 요구사항
- BC219 따라서 개정 기준서가 시행되는 보고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개

정 전 기준서에 따라 (영업권이 20년을 넘는 기간에 걸쳐 상각되기 때문에, 또는 손상 징후가 있기 때문에 실시함) 손상검사를 받은 영업권은 IAS 36에 따라 개정 기준서가 시행되는 기간의 시작일에 손상된 것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개정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에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에만 영업권 손상차손이확인되는 데, 개정 전 IAS 36에 따른 손상검사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 BC220 IASB는 영업권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로 손상차손이 인식되는 상황은 단 한 가지만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20 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걸쳐 상각되어 온 영업권이, 기업이 합리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손상 징후가 없었음에도, 개정 기준서가시행되는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손상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IASB는 이러한 상황은 거의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BC221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영업권 손상검사를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는 IAS 3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위와 같은 손상 차손이 인식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경과적 손상차손을 적용하는 효익은 개정 기준서가 시행되는 기간 전에 생긴 손상차손을 그 기간이 시작된 후 생기는 손상차손과 구별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며, 그나마도 그러한 경우는 드물 것이다.
- BC222 IASB는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권에 대해 경과적 손상검사를 적용하는 효익보다 검사에 드는 추가 원가가 더 많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개정 기준서에서 영업권에 대해 경과적 손상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 BC223 SFAS 142에서는 시행일 전에 인식한 것으로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다시 판명된 무형자산에 대해, 해당 기준서가 최초로적용되는 회계연도의 기초를 기준으로 경과적 손상검사를 적용할것도 요구한다. 경과적 손상검사에서 생기는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이 아니라 회계정책 변경 효과로 인식한다.
 - (1)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SFAS 142를 처음 적용하는 시점에 상각이 중단된 무형자산에는 이전에 적용되었던 것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SFAS 142에 따라 손상검사를 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던 무형자산이 SFAS 142에 따르면 손상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 (2)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FASB는 손상검사방법의 변경으로 경과 적 손상차손이 생기는 경우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손 상차손을 회계정책 변경에서 생기는 것으로 처리하면 표현의 충실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BC224 IASB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해 SFAS 142와 비슷한 경 과적 손상검사를 IAS 36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 BC225 IASB는 개정 전 IAS 38에서 20년을 넘는 기간에 걸쳐 상각되는 무형자산은 개정 전 IAS 36에 따라 적어도 회계연도 말마다 손상 검사를 하도록 요구하였음을 보았다. 20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무형자산은 개정 전 IAS 36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손상 징후가 있을 때에만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개정 기준서에서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해 적어도 일 년에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계속해서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 BC226 IASB는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개정 기준서에서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해 경과적 손상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로 손상차 손이 인식되는 상황은, 20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걸쳐 상각되 어 온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이, 기업이 합리적으로 고려해 야만 하는 손상 징후가 없었음에도, 개정 기준서가 시행되는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손상된 경우가 유일하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는 개정 기준서의 요구사항 을 적용하면 위와 같은 손상차손이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경 과적 손상차손을 적용하는 효익은 개정 기준서가 시행되는 기 간 전에 생긴 손상차손을 그 기간이 시작된 후 생기는 손상차 손과 구별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 (3)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 극히 드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해 경과적 손상검사를 적용하는 효익보다 검사에 드는 추가 원가가 더 많다.

조기 적용(문단 140)

- BC227 IASB는 어떤 기준서든 이를 공표하면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으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현금흐름에 대하여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IASB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임에 주목하였다. 이 의미에서 시행일 전이라도 기업이 IAS 36을 적용하도록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IASB는 개정 기준서를 시행일 전에 적용하도록 허용한다면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기업간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 BC228 IASB는 IAS 36의 조기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현금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효익이 잠재적 비교 가능성 저하라는 불이익을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기업이 시행일 전이라도 IAS 36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IAS 36이 통합 과제의 일부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IAS 36에서는 IFRS 3과 IAS 38(2004년 개정)도 동시에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IFRS 연차 개선(2009)에 대한 경과 규정

BC228A IASB는 문단 80(2)의 개정에 대한 경과 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IASB는 영업권 손상을 평가하는 과정에 과거 보고기간 말에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후 판단을 사용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IASB는 비록 IFRS 8의 시행일이 2009년 1월 1일이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09년 4월에 공표된 'IFRS 연차 개선'에 따라문단 80(2)의 개정 내용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에 대한 경과 규정

BC228B ED/2013/1에서, IASB는 소급 적용을 제안하였고 개정 내용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였다.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BC228C IASB는 ED/2013/1에서 제안한, IFRS 13을 적용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경과 규정을 최종 개정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경과 규정의 목적은 마치 IFRS 13이 공표되었을 때 이 개정도 공표되었던 것처럼 하기 위한 것이다.

BC229 다음은 공개초안과 달라진 주요 내용이다.

- (1) 공개초안에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 회계 연도 말마다 그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함으로써 손상 검사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기준서에서는 그러한 무형자산 에 대해 매년 그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함으로써 손상 검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그 손상검사는 매년 같기만 하다면 회계연도 중 어느 때에라도 수행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무형 자산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그러한 무형자산을 해당 회계연도 중에 최초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 (2) 공개초안에서는 사용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과거에 실제로 생긴 현금흐름과 경영진이 과거에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한 과거의 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에 근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이 기준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이 기준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 (개) 경영진은 과거 현금흐름 추정과 실제 현금흐름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여 현행 현금흐름 추정에 기초가되는 가정이 합리적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내) 경영진은 실제 현금흐름이 창출되었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 았던 후속 사건이나 상황의 영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면, 현행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과거의 실제 결과와 일관성이 있도록 한다.
- (3) 공개초안에서는 자산 또는 자산집단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거 래하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물의 일부나 전부가 기업 내부에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이나 자산 집단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 한 상황에서 해당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

용되는 미래현금호름을 추정할 때, 산출물의 미래 시장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개초안에서는 산출물을 사용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하기위해 미래현금호름을 추정할 때에도 산출물의 미래 시장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이 기준서에서는 자산 또는 자산집단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거래하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물의 일부나 전부가 기업 내부에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자산이나 자산집단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가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내부 이전가격 결정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될 미래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다음 항목을 추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가) 해당 산출물을 생산하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 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미래현금유입
- (내) 내부 이전가격 결정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자산 또는 현금창 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미래현금유출
- (4) 공개초안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하나 이상의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때 영업권이 배분 되는 현금창출단위 각각은 영업권 장부금액의 일부가 합리적 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 이어야 한다. 공개초안에서는 다음 내용도 제안하였다.
 - (카) 현금창출단위가 경영진이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을 관리하는 최저 수준인 경우에만, 영업권 장부금액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 (내) 각 현금창출단위가 IAS 14에 따라 결정되는 기업의 일차적 보고형식에 근거한 부문보다 커서는 안 된다. 이 기준서에 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배분 대상 현금창출단

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배분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사업결합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 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또 이 기준서에서는 영업권이 배분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이, (1)기업 내에서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이 관찰되는 최저 수준이 되게 하고, (2) IAS 14에 따라 결정되는 기업의 일차적 또는 이차적 보고형식에 근거한 부문보다 크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한다.

- (5) 공개초안에서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다음과 같 이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 (개) 처분손익을 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 (나) 처분되는 영업과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문의 상대 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위 제안은 하나만 수정한 채 그대로 이 기준서에 포함되었다. 이 기준서에서는, 다른 방법이 처분되는 영업에 관련된 영업권을 더잘 반영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다면, 처분되는 영업에 관련된 영업권을 처분되는 영업과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문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6) 공개초안에서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구성을 바꾸는 방식으로 보고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는 영업을 처분할 때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상대가치 접근법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받는 모든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을 다시 배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이 기준서에서도 영업권이 배분된 하나 이상의 현금창출단위의 구성을 바꾸는 방식으로 보고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모든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영업권을 다시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다른 방법이 재구성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와 관련된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다면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는 영업을 처분할 때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상대가치 접근법을 사용하여 다시 배분할 것을 요구한다.

- (7) 공개초안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에 2단계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잠재적 영업권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선별장치를 사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은 그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에만 잠재적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에 잠재적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다음의 단계로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회수가능액 (영업권의 내재가치로 측정됨)을 그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실제손상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권의 내재가치는 나머지 금액, 즉다음 (水)가 (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 (개)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 (나) 현금창출단위를 손상검사일 현재 사업결합으로 취득한다고 가정할 때 기업이 인식할 식별할 수 있는 자산·부채·우발 부채의 공정가치 순액
- 이 기준서에서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 단)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영업권 손 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초과액 중 영업권 장부금액을 영(0)이 될 때까지 감액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창출단위 내 다른 자산에 각각의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한다.
- (8) 공개초안에서는 해당 장부금액에 영업권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정보에는 영업권 장부금액과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장부금액,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산정 근거(사용가치나 순매각가격),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측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과 추정치, 이러한 주요 가정과 추정치의 변동에 대한 회수가능액의 민감도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공

개초안에서는 기업이 IAS 14에 따라 부문정보를 보고하는 경우에 이러한 정보를 기업의 일차적 보고형식에 근거한 각 부문별로 합산하여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에서는 특정 기준이 충족되면 그러한 정보를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것도 제안하였다. 이 기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개) 영업권 및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손상검사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특정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 부문 내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별도로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 다. 그 대신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 권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기업 전체 장부금액 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에 해당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 단위집단)에 대해서만 그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경영진이 현금창 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근거 로 한 주요 가정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이 있을 때만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이 회수가 능액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만 그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한다.
- (I) 경영진이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근거로 한 주요 가정치와 현금창출단위(현금창 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주요 가정치의 변동이 회수가능액의 측정 에 사용된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후속적 결과를 고려한 것 임)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경영진이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근거한 주요 가정 에 대한 설명,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산정하는 방식, 주 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는지 또는 외부정보

원천과 일치하는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의 정도와 이유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주요 가정에 가능성이어느 정도 있는 변동으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요 가정치와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주요가정치의 변동이 회수가능액의 측정에 사용된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후속적 결과를 고려한 것임)도 공시하여야 한다.

(라) 장부금액에 포함된 영업권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금액이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지만 서로 합산하면 유의적이 되는 다수의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관련된 주요 가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자산손상 기준서의 변천사

- BCZ230 1996년 6월에 IASC는 자산손상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산손상에 관한 기준서를 개발하려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1) 하나의 기준서에 손상차손의 확인, 측정, 인식, 환입 요구사항을 통합함으로써 요구사항 간 일치성을 보장한다.
 - (2) 국제회계기준의 개정 전 요구사항과 지침은 기업들이 손상차 손을 비슷한 방식으로 확인·인식·측정할 수 있게 할 만큼 충분히 상세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종전의 선택권과 같이 손상차손 측정에 관한 일부 대안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다.
 - (3) IASC는 1996년 3월에 무형자산과 영업권이 매년 상세하고 신뢰성 있는 손상검사를 받는다면, 매우 드문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상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기로 결정하였다.

- BCZ231 1997년 4월에 IASC는 E55를 의결하였다. IASC는 20여 개 국가에서 외부검토의견서를 90건 넘게 받았다. IASB는 E55의 제안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도 수행하였다. 10개 국가의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20개가 넘는 기업들이 현장조사에 참여하였다. 현장조사 참여자의반 정도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나머지 반정도는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보고하고 있었다. 현장 조사 참여자는 자세한 설문서에 답하였고 그 대부분이 IASC 스태프의 방문을 받아 자사의 자산 일부에 E55를 적용해 본 결과를 놓고 토의하였다. E55에 대해 받은 외부검토의견서의 요약과 현장조사 결과는 1997년 12월에 출간된 'IASC Insight'에 실려 있다.
- 1997년 10월에 IASC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회계 BCZ232 기준위원회와 공동으로 '장기성자산의 회수가능액검사를 규정하는 회계기준에 관한 국제적 고찰(International Review of Accounting Standards Specifying a Recoverable Test Amount Long-Lived Assets)'[주저자는 호주회계연구재단(Australian Accounting Research Foundation)의 스태프 Jim Paul임]이라는 이 름의 토론서를 발표하였다. 이 토론서는 위에서 열거한 회계기준 제정기구 및 IASC에서 나온 위원 및 선임스태프로 구성된 '작업 단'의 토론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이 토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1) 작업단 구성원이 속하는 국가의 손상검사에 관한 현행(또는 공 개초안으로 제안된) 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그 기 준들을 비교하였다.
 - (2) 주요 회계논제에 대한 작업단의 견해를 제안하였다.
- BCZ233 IASC는 E55에 대해 받은 외부검토의견과 현장조사 결과를 고려한 다음에 1998년 4월에 IAS 36을 의결하였다.

IAS 36에 대한 소수의견

Anthony T Cope 위원, James J Leisenring 위원과 Geoffrey Whittington 위원의 반대의견

- DO1 Cope 위원, Leisenring 위원, Whittington 위원은 IAS 36 공표에 반대한다.
- DO2 Cope 위원, Leisenring 위원, Whittington 위원은 기준서에서 영업 권에 대해 요구하는 손상검사에 반대하기 때문에 기준서 공표에 반대한다.
- DO3 Cope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IFRS 3의 문단 54에서 영업권 상 각을 금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45) 연구 결과와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영업권을 상각하면 무의미한 자료가 생성되고 심지어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으면 그독특한 성격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IAS 36의 결론도출근거(문단 BC131)에서는 '엄격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손상검사법을 개발할 수 있다면, 영업권을 상각하지는 않는대신에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여야 하고 손상을 암시하는 사건이나 상황 변화가 있다면 그보다 더 자주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는 접근법에 따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가제공될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Cope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이언급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은 IASB의 과반수가 동의한 손상검사에 그 요건을 충족할 만한 엄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 DO4 Cope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IAS 36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30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자산, 특히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⁴⁵⁾ IASB는 2008년에 전부 개정된 IFRS 3을 공표하였다. 영업권 상각은 금지되지만 IFRS 3(2008년 전부 개정)에는 이에 관한 문단 참조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산과 같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에 기초하는 손상검사에 대해 일부 위원과 함께 유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Cope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측정원칙에 관한 심층 연구와 논쟁이 미결된 상태에서, 이러한 일반적 측정 목적에 관한 고찰을 뒤로 미루는 데에는 동의한다(이들은 공정가치를 사용하면 US GAAP과 유의적인 합치를 이룰 수 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측정하든 간에 IASB가 개정한손상검사보다 한층 더 엄격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업권의 '내재가치'를 산정하는 데에는 원래 IASB가 IAS 36과 IAS 38 개정 공개초안에서 제안했던 '2단계' 방법('two-step' method)이 더 유용한접근법이 된다. 이 손상검사가 개정 기준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DO5 Cope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일부 관계자가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해 복잡성과 잠재적 원가를 들어 반대하였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당초 IASB가의도했던 손상검사의 수준을 잘못 이해하였다고 본다. 이 사실은 공개초안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IAS 36의문단 99에서는 손상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빈번한 계산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 이들은 영업권손상검사를 SFAS 142에서 정하는 수준에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그러한 반대의견에 대처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DO6 Whittington 위원은 제안된 손상검사에서 특히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 취득시점에 취득자의 내부창출영업권 때문에 손상에서 보호받는 것을 막는 데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단 DO7에서 논의하고 있다. 둘째로 후속 현금흐름 검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단 DO8~D10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업결합일 후에 생기는 내부

창출영업권 때문에 기업이 손상에서 보호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관행적인 손상검사의 틀 내에서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명확한 실무적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DO7 취득되는 사업이 취득자의 기존 영업에 합쳐지는 경우에 IAS 36에서 규정한 손상검사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취득자의 내부창출 영업권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취득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부창출영업권은 나중에 생기는 내부창출영업권과 합하여 기업을 손상에서 보호하게 된다. Whittington 위원은 FRS 11의 규정 (이에 따르면 취득일 현재 존재하는 취득자의 영업권 내재가치를 손상검사 목적으로 인식한다)과 비슷한 요구사항을 둔다면 손상검사가 더 엄격해 질 것이라고 본다.

DO8 후속 현금흐름 검증은 IAS 36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95~BC198에서 논의하고 있다. 후속 현금흐름 검증에 따르면 과거 손상검사일에 추정했던 현금흐름은 나중에 실제로 생기는 현금흐름으로 대체되며, 추정 변경으로 영업권에 손상차손이 생기면 영업권을 그만큼 감액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당초 추정을 바로 잡는 것이된다. 이러한 검증은 FRS 11에 반영되어 있다.

DO9 IASB가 후속 현금흐름 검증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문단 BC197 (1)~(3)에 제시되어 있다. 문단 BC197의 서두에서는 과도한 영업권 감액이 막아야 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현금흐름 검증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속 현금흐름 검증에서는 현실적인 감액(실제 결과에 근거한 것)만을 요구하지 과도한 감액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문단 BC197에 있는 언급이 정확하다면, 이는 손상검사 절차에 다른 치유책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또다른 결점이 있음을 뜻한다.

DO10 문단 BC197(1)에서는 사용가치 측정에 관여하는 다른 요소를 무시

하게 되기 때문에 '표현의 충실성이 있는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 고 단언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후속 현금흐름 검증에서는 단순히 현금흐름 결과로 추정치를 대신할 뿐인데 이는 명확한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이 맥락에서 이자율 변동과같은 다른 요소의 추정치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면이것도 후속 현금흐름 검증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197(2)에서는 후속 현금흐름 검증에서 손상차손이 갖는 의미에 대해 문단 197(1)과 같은 논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단 197(3)에서는 후속 현금흐름 검증이 주는 과도한 부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Whittington 위원은 부담의 정도가 검증이 적용되는 빈도에 좌우된다고 본다. 또 Whittington 위원은 후속 현금흐름 검증이 시행된다면 현재 손상검사에 관해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공시사항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와 국제회계기준 제36호(IAS 36)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36호(IAS 36) '자산손상(Impairment of Asset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을 제한적으로 수정하였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밝히기 위하여 문단 한2.1, 한140A.1, 한140A.2을 추가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이본래의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본래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 그리고 기준서 등의 대체와 관련된 문단 138~140A, 140C~140D와 141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수정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접두어 '한'을 붙여 구분하였다. 그리고 해당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 제36호(IAS 36)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 호는 IAS 36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 호를 따르면 IAS 36도 따르는 것이 된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는 자산손상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재고자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등을 제외한모든 자산의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2. 개별 자산 손상검토와 손상차손 인식

- (1)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 (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를 매년 같은 시기에 수행한다면 연차 회계기간 중 어느 때에라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무형자산은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러한 무형자산을 처음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한다.
 - (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일 년에 한번은 손상검사를 한다.
- (3)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외부정보원천와 내부정보원천을 고려한다.

- (4) 자산의 사용가치 계산에는 다음을 반영한다.
 - (개)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 (내)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
 - (다) 현행 시장 무위험 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 (라) 자산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보상하는 가격
 - (m)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그 밖의 요소들
- (5) 미래현금흐름은 자산의 현재 상태를 기초로 추정한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의 사유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입이나 현금유 출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개)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 (내)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
- (6)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 (7) 손상차손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다른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그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3. 현금창출단위 손상검토

(1) 자산손상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 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한다. (2)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영업권 손상검사

- (1)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취득한 날부터 사업 결합의 시너지 효과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현금창 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다. 이는 그 현금창출단위나 현 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 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영업권이 배분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 출단위집단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 수준이어야 한다.
 -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문단 5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통합 전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 (2) 영업권이 관련되어 있지만 영업권을 배분하지는 않은 현금창출단위는, 손상 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 (3)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일 년에 한 번 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창출단위와 배분된 영업권은 손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5. 현금창출단위 손상차손 배분

현금창출단위(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 (1) 우선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액하다
- (2) 그 다음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 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6. 손상차손환입

- (1) 보고일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 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 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 (2)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 가 달라진 경우에만 환입한다.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액한다.
- (3)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액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4)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그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증가액으로 처리한다.

- (5)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 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 장부금액의 증가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 (6) 영업권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아니한다.

제ㆍ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 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5. 9. 11. 개정	번역 개선	-
2013. 8. 30. 개정	'자산손상'	IAS 36 Impairment of Assets
2009. 6. 26.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mprovements to IFRSs
	연차 개선	
2008. 11. 28.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mprovements to IFRSs
	연차 개선	-
2007. 11. 23. 제정	'자산손상'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이 기준서는 다른 기준서의 제 ·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ㆍ개정 일자	다른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 018.11.14. 개정		Amendments to References to
	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the Conceptual Framework in
	대한 개정'	IFRS Standards
2015.11.6.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	with Customers
	는 수익'	
2015.9.25.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호 '금융상품'	
2014.12.12.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	IAS 16 <i>Property, Plant and</i>
	호 '유형자산', 제1014호	Equipment, IAS 41 Agriculture
	'농림어업'	
2 011.11.18.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	IFRS 11 Joint Arrangements
	호 '공동약정'	, and the second
2 011.11.18.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호 '연결재무제표'	Statements
2011.11.18.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호 '공정가치 측정'	
2 011.11.11.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	IAS 19 Employment Benefits
	호 '종업원급여'	